

www.seoul.go.kr

제3725호 2021 10 14 (목)





목 차

◈ 괴 시	
제2021-561호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N0001 F005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1-562호 제2021-5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2021=304 <u>\$</u>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1-565호	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6
제2021-566호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색9구역) (경미한)변경
No.004 -0-7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1-567호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고시 70
제2021-568호	도시관리계획(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1-570호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101
^ - -	
◈ 광 교	
제2021-2552호 제2021-2564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제2021-2504오 제2021-2573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대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12 관악산근린공원(28지구)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 2021 2373 <u>\$</u>	열람공고 ····································
제2021-2575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131
제2021-2576호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공시송달공고(안)
제2021-2582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34
제2021-2584호	2021년도 제13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157
제2021-2591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 구 고 시	
—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종로구)164

제2021-219호 - 3 제2021-140호 목 제2021-242호 서	도시계획시설사업(와룡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종로구) ······ 165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
♦ 구 공 고	트립과학계정/후교교 기교단이계정》 권자(비권) (시) (서리고학(조고고) 100
제2021-1131호 제2021-1069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종로구) … 18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사완료 공고(광진구)
제2021 1009호	용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동대문구) 189
제2021-125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열람공고(중랑구) 200
제2021-1358호	성북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성북구)
제2021-1250호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강북구)
제2021-1741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 열람공고(동작구) 206
제2021-1874호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서초구) … 207
◈ 사업소 고시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9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9
제2021-251호 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10
◈ 사업소공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11
제2021-248호 경	강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17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1호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1998. 7. 2.)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호(2018. 2. 19.)로 결정(변경)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금천구 독산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대
- 면 적 : 2.942.2m²
-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1년 10월 7일
-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성원산업
- 대표자의 성명 : 정성훈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 법인등록번호 : 284911-0091478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1) 토지세목조서

				면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금천구 독산동	292-6	대	336.7	336.7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2	금천구 독산동	292-7	대	876.3	876.3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3	금천구 독산동	292-12	대	37.2	37.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4	금천구 독산동	292-13	대	23.1	23.1		71-11-1-1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5	금천구 독산동	292-16	대	11.2	11.2	주식회사 성원산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5-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6	금천구 독산동	292-28	대	47.6	47.6		33 2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7	금천구 독산동	292-29	주	124.9	124.9			124.9 48.1 611.5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8	금천구 독산동	292-31	대	48.1	48.1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9	금천구 독산동	292-32	대	611.5	611.5							100.0	중소기업은행
						정성훈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0	금천구 독산동	292-37	대	499.3	499.3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정성훈	서울시 서초구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1	금천구 독산동	292-38	대	61.3	61.3	나미선	서초중앙로 15, 비동 1905호 (서초동,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현대슈퍼빌)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정성훈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2	금천구 독산동	292-39	주	265	265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합계	-	-	-	2,942.2	2,942.2	_	_		_	-			



2) 물건조서

	소자	H지					규 모			소유권	이외의 권리	4	
일련 번호	행정동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사용승인 일자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소유자	성 또 명 또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92-6						1 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1		292-7	자동차	철근	1978. 5. 1.	363.22	1			8고기비트8		- 시어전	
'		292-12	관련시설	콘크리트	1370. 3. 1.	1970. J. 1. 300.22	000.22	'			주식회사		근저당권
		292-13							정성훈	우리은행		LAGE	
		292-16	00-10-11		근 리트 1995. 5. 9.				00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2	금천구 독산동	292-28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철근 콘크리트		423.5	1	2		0-11-0		LHOE	
-	녹산농	292-29	제2종근린 생활시설	콘크리트 		10001 01 01	12010				주식회사		근저당권
		292-31								우리은행		LIOL	
		292-32							주식회사 성원산업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3		292-37	자동차	_ 철근 _	1977. 4. 20.	748.32	1	2		0=-1020		LIOL	
		292-38	관련시설	콘크리트	1077. 1. 20.	7 10.0L	,	2		주식회사		근저당권	
		292-39								우리은행		2.102	
	합 계				1,535.04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원	198,388	1998.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m²)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Тап(%)	비포
	Й	2,942.2	-	2,942.2	100.0	
상업	일반상업지역	_	증)2,942.2	2,942.2	100.0	
지역	근린상업지역	2,942.2	감)2,942.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01 =1	용도	지역	면 적	H-34 II O
번호	위치	기 정	변 경	(m²)	변경사유
-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원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942.2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및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 도지역을 변경 함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02-2133-6297)와 금천구청 11층 주택과 (02-2627-16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금천구 독산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원

• 면 적 : 2.942.2m²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 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공공지워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 성원산업

• 대표자 성명 : 정성훈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 법인등록번호 : 284911-0091478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및 은행차입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주택건설용지	2,942.2	100.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합 계	2,942.2	100.0	-

[※] 행정절차 이행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수용계획

1) 수용인구 : 약 906명

2) 주택건설계획: 589세대(공공임대: 151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438세대)

7	분	세대수	주택공급계층	가구당 인구수(인)	수용인구(인)	
	25 TYPE	85				
	26 TYPE	7	1인 가구	1	104.0	
	36 TYPE	12				
공공 임대주택	52 TYPE	35				
임대주택	54 TYPE	3	2인 가구	2.65	124.6	
	64 TYPE	6	2 C / I I	2.00	124.0	
	85 TYPE	3				
	소 계	151	-	-	228.6	
	25 TYPE	243		1	293.0	
	26 TYPE	21	1인 가구			
	36 TYPE	29				
공공지원	52 TYPE	102				
민간임대주택	54 TYPE	11	2인 가구	2.65	204.0	
	64 TYPE	22	' 건간 기丁	2.00	384.3	
	85 TYPE	10				
	소 계	438	-	-	677.3	
핝	'Л	589	-	-	905.9	

 [※] 공공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의거 「공공주택 특별법」제2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입주대상 자는 대학생, 신혼부부(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 포함), 사회초년생 등으로 하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의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말하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함. 입주대상자 및 선정방법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 1)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내공해성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대기질 정화효과를 통해 도시 열섬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2)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 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 3)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 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함
-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 1. 도시·군관리계획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원	198,388	1998.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	

-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Точ(%)	H T
	계	2,942.2	-	2,942.2	100.0	
상업지	일반상업지역	-	증)2942.2	2,942.2	100.0	
역	근린상업지역	2,942.2	감)2942.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 기 정	지역 변 경	면 적 (m²)	변경사유
-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원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942.2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 도지역을 변경 함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2) 획지 결정(변경)조서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변경 없음)
 - 대지의 분할(변경 없음)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71.7	가구	가구 위치	면적	계획	내 용	비고
가 구	면적 기시		(m²)	기 정	변경	ni Tr
		292-1대, 292-36대	771.2	공동개발 권장	변경 없음	-
		292-3대, 292-33대, 292-34대	1,432.7	공동개발 지정	변경 없음	-
		292-4대, 292-5대, 292-17대, 292-27대	1,996.0	공동개발 지정	변경 없음	-
C1	14,152.5	292-6대, 292-7대, 292-12대, 292-13대, 292-16대, 292-28대, 292-29대, 292-31대, 292-32대, 292-37대, 292-38대, 292-39대	2,942.2	① 292-6, 7, 12, 13, 16, 28, 31, 32 공동개발 지정 ② 292-37, 38, 39 공동개발 지정 ①, ② 공동개발 권장	① 292-6, 7, 12, 13, 16, 28, 31, 32 공동개발 지정 ② 292-37, 38, 39 공동개발 지정 ①, ② 공동개발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292-8대, 292-30대, 292-10대	1,321.4	공동개발 권장	변경 없음	-
		292-11대, 292-30대	1,520.0	공동개발 지정		
		292-2대, 292-14대, 292-21대	4,169.0	공동개발 해제 ※ 292-2,26 → 292-2로 합필	변경 없음	-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C1가구 내 공동개발 지정된 ① (292-6, 7, 12, 13, 16, 28, 31, 32)와 ②(292-37, 38, 39)를 공동개발 권장에서 공동 개발 지정으로 변경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고
통O QO 직O 저기		-	-
D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략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란생활시설 중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에 한함)	-

주1)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2) 관계법령(용도지역, 미관지구)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 변경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고
모 요 요 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안마시 술소,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수리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0호의 의료시설 중	-	-



구 분	전층 불허용도	저층부 불허용도	비고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전층 불하		비고
H 독산동 292-6번지 일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도매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망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양영장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및 관람장	독산동 292-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주1) H(독산동 292-6번지 일원) 지역은 기정 상 'D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지역임 2)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준용
-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불허용도 변경
-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¹⁾ 권장용도	비고
4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주1)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 변경

구 분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¹⁾ 권장용도	비고
4 근린상업지역 시흥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게임제공업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독산동 292-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적용 예외

주1) 저층부 : 건축물 1층 바닥을 기준으로 1~3층 구간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권 장용도 변경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전층 지정용도	저층부 지정용도	비고
가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화가로변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육류 도·소매업 ²)에 한함), 휴게음식점(육류 음식점 ³ 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주1) 지정용도가 1층부 바닥면적의 50%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봄
- 2) 육류 도 소매업이란 육류 및 부산물 등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 및 판매시설을 말함
- 3) 육류 음식점이란 육류 및 부산물 등을 주재료로 조리하는 음식점을 말함
- 4) 세부용도는 건축법상 용도분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허용)할 수 있음

• 변경

구 분	전층 지정용도	저층부 지정용도	비고
가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화가로변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육류 도·소매업 ²)에 한함). 휴게음식점(육류 음식점 ³ 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등 지정용도	비고
나 독산동 292-6번지 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⁵⁾		독산동 292-6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주1) 지정용도가 1층부 바닥면적의 50%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봄
- 2) 육류 도·소매업이란 육류 및 부산물 등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 및 판매시설을 말함
- 3) 육류 음식점이란 육류 및 부산물 등을 주재료로 조리하는 음식점을 말함
- 4) 세부용도는 건축법상 용도분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허용) 할 수 있음 5)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지정용도 계획 수립
- (4) 건축물의 허용용도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 (5)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내 용		비고
기정	В	·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허용용적률 : 530% 이하 · 상한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F	· 기본용적률 : 700% 이하 · 상한용적률 : 1,0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독산동 292-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F	· 기본용적률 : 700% 이하 · 상한용적률 : 1,000%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결정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 분	내 용	계획사항	비고
공공기여율		· 10% 이상 (부지면적기준) (294.22㎡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0.01%(294.51㎡)	ㆍ 독산동 292-6 일
		· 완화용적률 연면적의 50%이상 (149.67%이상)	· 공공기여용적률 150.69%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433.71㎡	원 역세권 청년주 택에 한함 · 기본용적률 700% 이하 부여
용도별 비율 ^{주1)}	주 거	ㆍ 80% 이상 90% 이하	ㆍ 주거 : 90.42%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계획사항	비고
	비주거	· 10%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 : 9.5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 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 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주 ³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주3)	
:	커뮤니티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 364세대 이상 기준 : - 세대수(589-299=290)×2.5㎡×1.25 =906.25㎡이상	· 주민공동시설(953.20㎡) : 체력단련실, 공용세탁실, 공유라운지, 공용세탁실, 공용주방,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공용)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9.33㎡ - 전용 41.79㎡ - 전용 19.78㎡ - 전용 43.46㎡ - 전용 21.21㎡ - 전용 59.02㎡ - 전용 41.21㎡	-
	주택규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9.33m' - 전용 59.02m' - 전용 19.78m' - 전용 21.21m' - 전용 41.21m' - 전용 41.21m' - 전용 43.46m'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2-1 비주거 용도는 지하2층에서 지상 2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형태 및 고저차 등의 사유와 상업지역에서 지상 2층까지 비주거 비율 10%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위치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주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 86점 이상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 주3)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우수(그린2등급) 이상

5)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분			정	변	경	н ¬	
				최고	기 준	최고	비고	
시흥대로서측	간선부	근린상업지역	-	100m	-	106m	독산동 292-6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 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변경
- •높이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없음)



-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I 비꼬
C1	· 건축한계선 3m(시흥대로변, 범안로변) · 건축한계선 2m(북측 8m 도로면) · 건축한계선 1m(서측 8m 도로면) · 건축한계선 1~6m(보차혼용통로면) · 저층부 벽면지정선 2m(서측 8m 도로변)	 건축한계선 3m(시흥대로변, 범안로변) 건축한계선 2m(북축 8m 도로변) 건축한계선 1m(서축 8m 도로변) 건축한계선 1~7m(보차혼용통로면) 저층부 벽면지정선 2m(서축 8m 도로변) 	독산동 292-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변경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대한 계획
- (1) 공개공지(위치지정) (변경없음)
- (2) 공공보행통로(변경없음)
- (3) 보차혼용통로(변경)

가구번호	계획	계획내용					
	기정	변경	- 비고				
C1	폭6m(1개소)	폭6~10m(1개소)	독산동 292-6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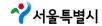
- 보차혼용통로 결정(변경) 사유서
- ∘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변경
-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3. 방재계획
- 1) 하천 및 내수재해

대상지는 안양천과 약 1.5k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서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 하천 및 내수재해위험지에 해당되지 않아 하천범람 및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특별시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한 우수관망 설계 필요

2) 토사재해 : 임시침사지 1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3)	지진재해	:	구조물	계획시	내진설계	필요
4)	바람재해	:	구조물	계획시	내풍설계	필요

(이 하 여 백)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 의 수용 및 사용계획
- 1) 토지세목 조서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 또 명 명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주 소	지분	명 는 칭 또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금천구 독산동	292-6	대	336.7	336.7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2	금천구 독산동	292-7	대	876.3	876.3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3	금천구 독산동	292-12	대	37.2	37.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4	금천구 독산동	292-13	대	23.1	23.1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5	금천구 독산동	292-16	대	11.2	11.2	주식회사 성원산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5-2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6	금천구 독산동	292-28	대	47.6	47.6					00 2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7	금천구 독산동	292-29	주	124.9	124.9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8	금천구 독산동	292-31	대	48.1	48.1			1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9	금천구 독산동	292-32	대	611.5	611.5			100.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정성훈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0	금천구 독산동	292-37	대	499.3	499.3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정성훈	서울시 서초구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1	금천구 독산동	292-38	대	61.3	61.3	나미선	서초중앙로 15, 비동 1905호 (서초동,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현대슈퍼빌)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정성훈		10분의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2	금천구 독산동	292-39	주	265	265	나미선		10분의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정원호	1	10분의3	서초세무서장		근저당			
합계	_	_	-	2942.2	2942.2	-	_		_	_				



2) 물건조서

	소자	소재지					규 모			<u></u> 소유	권 이외의 급	권리
일련 번호	일련 번호 행정동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사용승인 일자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소유자	명이 난 칭이 또 명이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92-6								중소기업은		근저당권
1		292-7	자동차	_철근	1978. 5. 1.	363.22	1	1		하		
'	292-12	관련시설	콘크리트	1970. J. 1.	000.22	'	,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292-13							정성훈	우리은행		L-10E
		292-16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제2종근린 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1995. 5. 9.	423.5		2	005	중소기업은		근저당권
2	금천구 독산동	292-28					1			행 		LIOL
	녹산농	292-29								주식회사		근저당권
		292-31								우리은행		LIOL
		292-32								중소기업은		근저당권
3		292-37	자동차	철근 콘크리트	1977. 4. 20.	748.32	1	2	주식회사	행		LIOL
		292-38	관련시설	콘크리트 	1011. 1. 20.	7 10.0L	,	_	성원산업	주식회사		근저당권
	292-39									우리은행		L-10E
	합 계					-	-			-		

-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주택법」및「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금천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위치	면 적(m²)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합계	-	2,942.2	-	-	-
주택건설용지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원	2,942.2	자체사용	승인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슝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제1항 및「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주택법」제15조 제6항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 2. 사업의 명칭 :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칭	대표자	주 소
주식회사 성원산업	정 성 훈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외 11필지

다. 대지면적 : 2,942.2㎡ 다. 건 폐 율 : 58.67% 라. 용 적 률 : 999.34%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151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438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규 모: 1개동, 지하6층 / 지상 32층, 연면적 42,373.3791㎡

사. 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 6. 기타사항
 -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서울시보 제3725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4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 (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 (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 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394호(2017.1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2018.6.7.)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6호(2019.3.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5호(2019.6.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9-211호(2019.7.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0호(2020.5.1.)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419호(2020.10.15.)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110호(2021.3.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개요 (변경없음)

지 구 명 (지구유형)	위 치		면 적 (m²)		7 HL7 7
	TI 4	기 정	변 경	변경후	개발기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2006.10~2023.12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

-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②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④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⑤ 교통계획(변경없음)
- ⑥ 경관계획(변경없음)
- ⑦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변경없음)
- ⑧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7	정	Ħ	경	ul 7
구역명	면적(m²)	구역명	면적(m²)	비고
6-4-21구역	2,128.9	6-4-21구역	2,153.3	이면부 측량결과 반영 증)24.4㎡

- ※ 측령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구역선형의 변경은 없음
- 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없음)
-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현황		계획		부담률		부담률 보정	조정후	부담률	
=	구 역	구역 면적(m²)	대지 (m²)	공공용지 (m²)	대지 (m²)	공공용지 (m²)	면적 (m²)	비율 (%)	추가면적 (m²)	면적 (m²)	비율 (%)	비고
6-4 구역 (기정)	6-4-21	2,128.9	1,539.4	589.5	1,363.1	765.8	176.3	11.45	-	176.3	11.45	-
6-4 구역 (변경)	6-4-21	2,153.3	1,563.8	589.5	1,383.9	769.4	179.9	11.50	-	179.9	11.50	측량결과 반영

- ※ 기반시설부담률은 기존 공공용지 무상양여를 전제로 하되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①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변경없음)
- ②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③ 촉진구역별 사업계획(변경)
- [4]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 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②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6-4-21구역) 정비계획 변경
- 1. 정비구역
- 가. 촉진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m²)	사업의 종류	비고		
	TE T98		Π Λ	기정	변경	변경후	사람의 호표	nl Tr		
	변경	세운 6-4구역	6-4-21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	2,128.9	증) 24.4	2,153.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측량결과 반영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m²)		비 율(%)	비고	
下正	9 9	기 정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끝(70)	비포	
Ġ.	합계	2,128.9	증) 24.4	2,153.3	100.0	-	
도시계획	소 계	765.8	증) 3.6	769.4	35.7		
시설등	도 로	765.8	증) 3.6	769.4	35.7	측량결과 반영	
택지	소 계	1,363.1	증) 20.8	1,383.9	64.3	반영	
(획 지)	획 지	1,363.1	증) 20.8	1,383.9	64.3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다.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당사항 없음)
- 마.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바.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
 -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지구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7		ш¬		
구분	명칭	면적(m²)	명칭	면적(m²)	위 치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비고
기정	6-4-21 구역	2,128.9	대지	1,363.1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	10	-	-	-	10	-
변경	6-4-21 구역	2,153.3 증)24.4	대지	1,383.9 증)20.8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	10	-	-	-	10	측량결과 반영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	드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TE	명칭	면적(m²)	명칭	면적(m²)					5⊤(5)	
기정	6-4-21 구역	2,128.9	대지	1,363.1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	공동주택, 업무,판매, 문화집회 등	60%이하 (저층부 80%이하)	•기준 : 600%이하 •허용 : 700%이하 •상한 :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이면부 : 50m (기반시설제공 완화)	-
변경	6-4-21 구역	2,153.3 증)24.4	대지	1,383.9 증)20.8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	공동주택, 업무,판매, 문화집회 등	60%이하 (저층부 80%이하)	•기준 : 600%이하 •허용 : 700%이하 •상한 :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이면부 : 50m (기반시설제공 완화)	측량 결과 반영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정비사업 시행 계획(변경없음)

차.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보호수 없음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면적(m²)	획 지		비고
	TE	71T	한국(배)	위치	면적(m²)	비포
기정	6-4-21 구역	1	2,128.9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	1,363.1	-
변경	6-4-21 구역	1	2,153.3 증)24.4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	1,383.9 증)20.8	소규모 측량결과 반영

타.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③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6-4-21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변경)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서류(지형도면 포함)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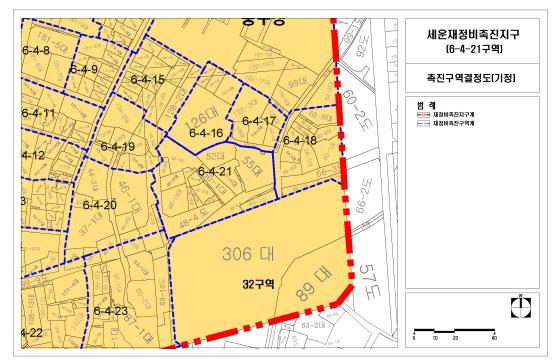
⑤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권사업과(02-2133-8500) 및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5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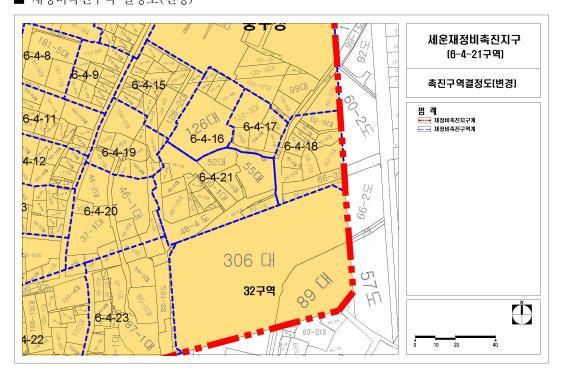
(이하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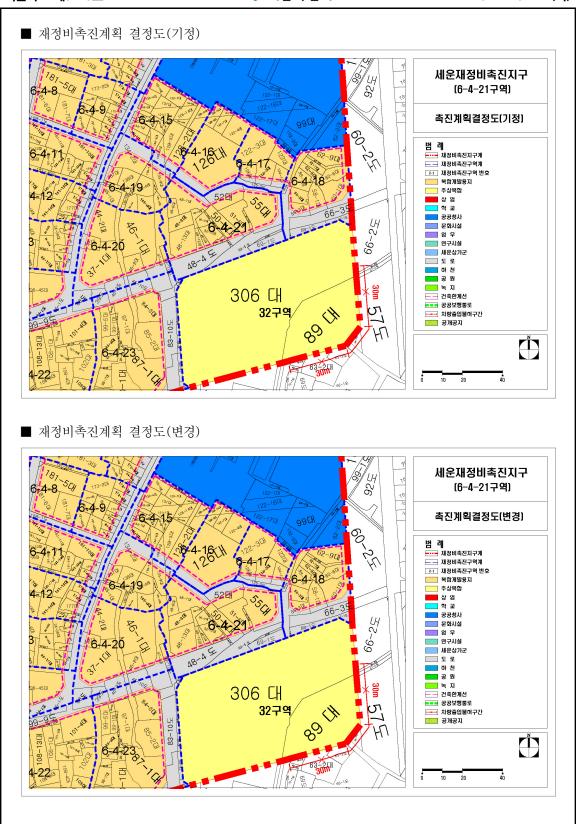


-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6-4-21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5호

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 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진구 중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
- 면 적 : 2,330.6m²
-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10월 14일
- 3. 사업의 종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식회사더블유앤홀딩스	우창훈	134511-040323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10, 309호(풍덕천동)

- 담보신탁 : 위탁자(주식회사더블유앤홀딩스), 수탁자(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1) 토지세목조서

	소재	지		면적	(m²)		소유자			관계인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편0 전0	주소	지분 (%)	성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1	광진구	93-15	도	104.5	104.5	주식회사 더블유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1.0	코리아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수탁자	
2	중곡동	93-54	도	30.0	30.0	니글ㅠ엔 홀딩스	410, 309호 (풍덕천동, 수지샤르망	1.0	주식회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_



	소재	지		면적	(m²)		소유자	관계인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3		93-55	대	28.1	28.1			1.0				
4		93-13	대	1,717.1	1,717.1			1.0				
5		93-38	대	118.7	118.7		오피스텔)	1.0				
6		93-39	대	117.0	117.0			1.0				
7		93-51	대	215.2	215.2			1.0				
	합격			2,330.6	2,330.6	_	-	-	-	-	-	

2) 물건조서

	소재	지		무거이		사용승인일		모				관계인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자자	연면적 (m²)	지하 (층)	지상 (층)	소유자	성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1	광진구 중곡동	93-13 93-38 93-39 93-55	대	건물 (1동)	철코트 , 량골 조 철 구 리 , 경찰 구	1997. 10.15	6,187.45	1	7	주식회사 더블유앤 홀딩스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수탁자	
	합계						3,046.33	-	-	-	-	_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十七	Tid	TI ^I	기 정	변경	변경후	최 조 등 요등
기정	아차산역지구지구단 위계획	광진구 중곡동 115-8번지 일원	127,072	-	127,072	서고시제384호 (04.11.25)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02-2133-6293) 및 광진 구청 본관2층 건축과(☎02-450-77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광진구 중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93-13일원

○ 면 적 : 2,330.6m²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아차산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 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식회사더블유앤홀딩스	우창훈	134511-040323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10, 309호(풍덕천동)

○ 담보신탁 : 위탁자(주식회사더블유앤홀딩스), 수탁자(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3년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주택건설용지	2,330.6	100.0	임대주택
합 계	2,330.6	100.0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약 304인

2) 주택건설계획 : 261세대

7	분	세대수 주택공급계층		가구당 인구수(인)	수용인구(인)
	18A TYPE	26	1인가구	1	26
	18B TYPE	6	1인가구	1	6
공공임대주택	19 TYPE	2	1인가구	1	2
	23A TYPE	6	1인가구	1	6
	23B TYPE	4	1인가구	1	4

7	분	세대수	주택공급계층	가구당 인구수(인)	수용인구(인)
	33A TYPE	2	1인가구	1	2
	44 TYPE	5	신혼부부	2.65	13.25
	소 계	51	-	-	59.25
	18A TYPE	117	1인가구	1	117
	18B TYPE	7	1인가구	1	7
	19 TYPE	2	1인가구	1	2
	23A TYPE	39	1인가구	1	3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3B TYPE	20	1인가구	1	20
	33A TYPE	3	1인가구	1	3
	33B TYPE	1	1인가구	1	1
	44 TYPE	21	신혼부부	2.65	55.65
	소 계	210	-	-	244.65
합 계		261	-	-	303.9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1) 녹지계획
 -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하여 대기 질 정화효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
- 2) 녹색교통 활성화유도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유도
- 3)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 실 방지를 위해 연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 도면게재 생략



[붙임]

- 1. 도시·군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д а а	구 역 명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Τäö			변경	변경후	최고 일이될
	기정	아차산역지구지구단 위계획	광진구 중곡동 115-8번지 일원	127,072	-	127,072	서고시제384호 (04.11.25)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T E	기 정	변 경	변경 후	T3H(%)	미끄
합계		127,072.0	_	127,072.0	100.0	
	전용주거지역	49.0	-	49.0	0.1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881.0	_	6,881.0	5.4	
±기시틱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524.6	감)2,330.6	116,194.0	91.4	
	준주거지역	1,617.4	증)2,330.6	3,948.0	3.1	

■결정(변경)사유서

Сип		용도	용도지역			
도면표 위치 시번호 위치	위치	기정	변경	면적 (m²)	변경사유	
-	광진구 중곡동 93-13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2,330.6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 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 함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도로, 철도, 광장, 공원, 공공공지, 문화시설,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725호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대상필지	비고
	SR1	중곡동 116-7호 일대	-
	SR2	중곡동 93-2호 일대	준주거지역 : 중곡동 93-13일원(총 7필지) (2,330.6㎡)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지정 변경)
	SR3	중곡동 115-8호 일대	-
제3종일반	SR4	구의동 53-6호 일대	-
주거지역	SR5	구의동 54-6호 일대	-
(SR)	SR6	능동 255-18호 일대	-
	SR7	능동 256-3호 일대	-
	SR8	구의동 74-1호 일대	-
	SR9	구의동 73-1호 일대	-
	SR10	구의동 57-62호 일대	-

나) 획지 결정 조서 : 변경

■ 공동개발 : 변경

구분	가구번호		필지		비고													
TE	기구인오	기구인오	동	위치	면적(m²)	비北												
			93-13	1,717.1														
			93-38	118.7														
기정	SR2	중곡동	93-39	117.0														
														93-51	215.2			
			93-55	28.1														
			93-13	1,717.1														
			93-15	104.5														
																93-38	118.7	
변경	SR2	중곡동	93-39	117.0	공동개발(지정) (총 면적 2,330.6㎡)													
			93-51	215.2														
			93-54	30.0														
			93-55	28.1														

■결정(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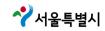
도면표 시번호		공동개발		면적		
	위치	기정	변경	(m²)	변경사유	
	ı	광진구 중곡동 93-13일원	93-13 93-38 93-39 93-51 93-55 (총5필지)	93-13 93-15 93-38 93-39 93-51 93-54 93-55 (총7필지)	2,330.6	•원활한 청년주택건립을 위해 기 사용되고 있는 사업시행자 소유2필 지를 공동개발지정 추가 지정함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 변경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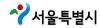
=	구분	전층 불허용도	비고
제3종 일반	간선 도로변 (A)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할 수 없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 종교시설 •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광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허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 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주거지역 구거지역	이면 도로변 (B)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할 수 없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 종교시설 •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차리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은 허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 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준주거 지역	구의동 76-1번지일대 특별계획 구역 (D)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할 수 없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자연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변경

-	구분	전층 불허용도	비고
제3종 이비	간선 도로변 (A)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할 수 없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광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 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일반 주거지역	이면 도로변 (B)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할 수 없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면습장,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광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은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 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구의동 76-1번지일대 특별계획 구역 (D)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할 수 없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가동차 관련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자명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준주거 지역	중곡동 93-13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E)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 다음 시설은 건축 할 수 없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략시설 • 위략시설 • 가장사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자명한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 이영장 시설	신설

서울시보 제3725호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불허용도	불허용도 신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불허용도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조서 : 변경

■기정

구분			지정용도	비고
	의동 76-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가)	 건축법상 문화예술관련시설 지상 연면적의 10%이상 조성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비슷한 것을 말한다.), 회랑, 화실, 스튜디오, 예술재료판매점, 예술계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문화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 변경

구분		지정용도	비고
구의동 76-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가)	•건축법상 문화예술관련시설 지상 연면적의 10%이상 조성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제2종근란생활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비슷한 것을 말한다.), 화랑, 화실, 스튜디오, 예술재료판매점, 예술계학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문화시설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중곡동 93-13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나)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신설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거 제외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정용도	지정용도 신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 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지정용도 계획 수립

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 변경없음(2) 용적률 :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에 따른 용적률 체계 추가(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청년주택 적용 용적률] : 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신설 (중곡동 93-13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용적률 적용기준 :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구분		적용기준	계획사항	비고
공공기여율		•10% 이상 (부지면적 기준)		
		•완화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		
용도별 주거		· 85% 이상		
비율	비주거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u></u> 주택규모		•전용면적 18m'~ 60m' 이하	기본용적률	중곡동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40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93-13 일원에 한함
- 주민공동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외 아래의 기준에 따라 커뮤니티시설을 별도로 설치 - 100세대 ~300세대 미만 : 150㎡ 이상		

-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 건축물형태의 경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열린유아방(광진구), 작은도서관], 에너지 효율 건축물 적용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 적률 결정



마)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기정

	7	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고
		교차로 가각부	10m 01=1	15m 01=1	
	간선도로변	간선변 기타지역	40m 이하	45m 이하	
제3종 일반 주거		어린이대공원 연접부	_	30m 이하	
주거		이면블럭	_	20111 0101	
지역	특별계획구역	간선변	40m 이하	45m 이하	
	해제지역	이면부	_	30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20m 이하	
		공원경계 30m 이내	13m 이하	20m 이하	

■ 변경

	7	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고
		교차로 가각부	40m 이하	45m 이하	
	간선도로변	간선변 기타지역	40111 9191	40111 0101	
제3종 일반 주거		어린이대공원 연접부	_	30m 이하	
주거		이면블럭		30111 4141	
지역	특별계획구역	간선변	40m 이하	45m 이하	
	해제지역	이면부	_	30m 이하	
TH1	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16m 이하	20m 이하	
٨١١	ㅇㄹ잔T기시ㅋ	공원경계 30m 이내	13m 이하	20m 이하	
준주거지역		중곡동 93-13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	55m 이하	신설 (중곡동 93-13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건축물 높이계획 신설	•최고높이 : 55m 이하 (중곡동 93-13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 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



바)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기정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용도	•불허용도 : A	•권장용도 : 1	
4		건폐율	·50% 이하		
	1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 230%	
	 가구번호	높이	·기준높이/최고높이 : 40 / 45m 이하		
	SR2	용도	•불허용도 : B	•권장용도 : 2	
2		건폐율	·50% 이하		
2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 230%	
	•	높이	・기준높이/최고높이 : — / 30m 이하		

■ 변경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용도	•불허용도 : A	•권장용도 : 1	
4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 230%	
	가구번호	높이	•기준높이/최고높이 : 40 / 45m 이하		
	SR2	용도	•불허용도 : B	•권장용도 : 2	
2		건폐율	·50% 이하		
2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 230%	
		높이	•기준높이/최고높이 : - / 30m 이하		
		용도	•불허용도 : D	•지정용도 : (나)	
3	중곡동 93-13일대	건폐율	·60% 이하		
(신설)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기준용적률 : 400%	•상한용적률 : 법정 이하	
	3617	높이	・기준높이/최고높이 : — / 55m 이하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결정사유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관한 결정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반영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건축선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건축선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간선도로변	3m	-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1m ~ 2m	중곡동 93-13일원(대상지) 1m 적용 (차도형 공지)
벽면한계선	지하철 출입구 주변	6m	구의동 53-1, 53-16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공공기여계획 : 신설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율	비고
77	기본용적률 4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부지 면적의 10% 이상 (233.06㎡ 이상)	중곡동
공공 임대주택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를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	93-13일원 에 한함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함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방재계획

- 1) 하천 및 내수재해 :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한 우수관망 설계
- 2) 토사 및 사면재해 : 개발중 30년 빈도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임시침사지 2개소 설치
- 3) 지반 및 지진재해 : 지반조사를 통한 기초안정성 및 흙막이 안정성 검토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 개발시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적용
- 4) 바람재해 : 개발시 구조물 내풍설계기준 적용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 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소재	지		면적	(m²)		소유자 관계인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정	주소	지분 (%)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1		93-15	Н	104.5	104.5			1.0					
2		93-54	도	30.0	30.0			1.0					
3		93-55	급	28.1	28.1	조사리미	경기도 용인시	1.0		1101171117			
4	광진구 중곡동	93-13	대	1,717.1	1,717.1	주식회사 더블유앤 홀딩스	수지구 포은대로 410, 309호 (풍덕천동, 수지샤르망- 오피스텔)	410, 309호 (풍덕천동, 수지샤르망_	1.0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수탁자 -	-
5		93-38	대	118.7	118.7	20-			1.0		(-11.10; -110220)		
6		93-39	대	117.0	117.0								
7		93-51	대	215.2	215.2			1.0					
	합격			2,330.6	2,330.6	_	_	_	_	-	_		

2) 물건조서

	소재	지		물건의		사용승인	П	모			관계인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종류	구조	일자	연면적 (m²)	지하 (층)	지상 (층)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1	광진구 중곡동	93-13 93-38 93-39 93-55	ᄑ	건물 (1동)	철코트 , 량골조 리 경철구	1997. 10.15	6,187.45	1	7	주식회사 더불유앤 홀딩스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수탁자	
	합계				3,046.33	_	-	-	-	-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의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 리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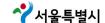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공급토	٦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TE	면적(m²)	구성비(%)	궁ㅂ네경사	중비시기	ηΨ	
주택건설용지	2,330.6	100.0	자체사용	건축허가 이후	-	
합계	2,330.6	100.0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6호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색9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 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 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 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 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 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 (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 호 (2014.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 한 변경), 제2014-55호(2014.0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97호(2014. 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경미 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 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증 산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34호(2016.05.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65호(2016.06.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7-28호(2017.0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변 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 제2018-58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8-59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 제2019-26호(2019.01.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143호(2019.05.0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 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216호(2019.07.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변경), 제2019-282호(2019.08.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365호(2019.11.07)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51호(2020.02.06)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177호(2020.05.01)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528호(2020.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변경), 제2021-54호(2021.02.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101호(2021.02.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163호(2021.04.01)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434호(2021.08.12)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된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 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do opi	위치	면적(㎡)			지정목적
70 70	πδ	귀 시	기 정	변경	변경후	ମ ଓ କି କ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수색동 증산동	791,413.7	감) 110.5	791,303.2	대상지의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난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함.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m²)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함	' Л	791,413.7	감) 110.5	791,303.2	100.0	
	소계	545,161.7	감) 105.4	545,056.3	68.9	
	공동주택	476,067.7	감) 37.2	476,030.5	60.2	측량 결과
주거 용지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34,196.0	감) 24.4	34,171.6	4.3	측량 결과
	주택용지	_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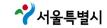


			면적(m²)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유 치 원	2,273.8	-	2,273.8	0.3	
	종교용지	6,917.4	감) 43.8	6,873.6	0.9	측량 결과
	존치	12,021.8	-	12,021.8	1.5	
	소계	246,252.0	감) 5.1	246,246.9	31.1	
	도로	110,037.0	감) 4.8	110,032.2	13.9	측량결과,선형변경
	보행자도로	5,596.4	감) 13.1	5,583.3	0.7	측량결과
	공원	35,039.1	감) 13.0	35,026.1	4.4	측량결과
	녹지	23,790.3	-	23,790.3	3.0	
	광장	1,001.0	-	1,001.0	0.1	
공공 시설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	
용지	변 전 소	542.0	-	542.0	0.1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교	56,616.3	-	56,616.3	7.2	
	사회복지시설	4,220.9	-	4,220.9	0.5	
	도 서 관	3,776.0	증) 25.8	3,801.8	0.5	측량결과
	문화시설	1,666.0	-	1,666.0	0.2	
	체육시설	(4,023.0)	-	(4,023.0)	(0.5)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 【】 는 중복결정 또는 지중시설임
- ※ () 는 복합용지 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 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3)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① 교육시설(변경없음)
 - ②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③ 도서관(변경)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2:	축물의 범위		최 초	비고		
TE	표시번호	시洹강	세분	ΠΛΙ	기정	변경	변경 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일	ην
변경	1	도서관	-	수색동 21-1일원	3,776.0 (1,198.0)	증)25.8	3,801.8 (1,223.8)	60% 이하	200% 이하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안의 사항은 수색9구역내 사항임.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78	시설	시설	OI ÷I		면적(m²)		μП
구분	세분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봉산도시	자연 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510,558 (지구내2,704)	감) 2.5	1,510,555.5 (지구내2,701.5)	측량결과
	77, 70		1 개소	18,194.0		18,194.0	
	근린 공원	3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18,194.0	
			4 개소	9,633.6		9,633.6	
		1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1,502.0	
	어린이	2	증산동 211-11대 일대	4,595.5		4,595.5	
생활권	공원	3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1,503.0	
경월전 공원 		4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3.1		2,033.1	
			2 개소	4,516.0		4,507.5	
	소공원	1	수색동 25-15대 일대	936.0	감) 10.5	925.5	측량결과
		2	수색동 361-10 일대	3,571.5		3,571.5	
	이츠 누귀		1 개소	3,015.1		3,015.1	
	완충 녹지	4	증산동 160-1대 일대	3,015.1		3,015.1	
			4 개소	17,416.2		17,416.2	
		6	증산동 188-9대 일대	1,503.0		1,503.0	
	연결 녹지	7	증산동 205-33대 일대	4,501.0		4,501.0	
	선설 숙시	8	증산동 193-23대 일대	6,137.2		6,137.2	
녹지 -		9	증산동 131-95대 일대	5,275.0		5,275.0	
			3 개소	3,352.0		3,359.0	
		2	수색동 354-4대 일대	515.0		515.0	
	경관 녹지	3	수색동 129-3학 일대	243.0		243.0	
		5	수색동 321임 일대	2,601.0		2,601.0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5) 교통계획(변경없음)
- 6) 경관계획(변경없음)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 가) 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없음)
- 나)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²)		· 비고
	ŤŒ	742	취시	기정			1 1111
		· 총계	-	791,413.7	감) 110.5	791,303.2	
		합계(15개 구역)	-	683,536.9	감) 110.5	683,426.4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1-10일대	61,519.3		61,519.3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15-5일대	65,977.0		65,977.0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412일대	31,796.6		31,796.6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7-28일대	29,884.0		29,884.0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0-2일대	36,458.6	감) 110.5	36,348.1	측량결과
	주택 재개발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41-6일대	69,681.0		69,681.0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16-10일대	78,755.2		78,755.2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05-33일대	172,932.0		172,932.0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157-34일대	112,804.2		112,804.2	
재정비 촉진 구역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6-11일대	4,422.0		4,422.0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7-6일대	5,026.0		5,026.0	시장정비사업
	도시환경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6-1일대	3,704.0		3,704.0	
	조시완경 정비사업 및 시장정비 사업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2-20일대	2,961.0		2,961.0	
	N994 VE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2-13일대	3,163.0		3,163.0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9-3일대	4,453.0		4,453.0	
		합계	-	107,876.8	-	107,876.8	
존치 관리 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색1존치관리구역	수색동 160일대	52,343.0	-	52,343.0	
	존치	존치	-	55,533.8	-	55,533.8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가) 수색1~8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나)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구분		면적(㎡)						
		ТЕ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Й	36,458.6	감) 110.5	36,348.1	100.0				
		소 계	31,240.3	감) 130.6	31,109.7	85.6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5	증) 0.5	113.0	0.3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57.9	증) 17.1	1,275.0	3.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0.9	-	330.9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29,539.0	감) 148.2	29,390.8	80.9				
준주거지역		5,218.3	증) 20.1	5,238.4	14.4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다) 수색11~증산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라) 수색1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חמת		X0F	고레ㅇ/ハ/\	용건	덕률(%)	높이계	획	шп
十七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기준	최대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비고
기정	수색1 재정비촉진	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53	400.0이하	−/240 ō 	104이하	
기정	수색2 재정비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_	-	-	-	
기정	수색3 재정비촉진	구역	복합용도	60이하	600	780.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57.63이하	18.5이하/25이하	80이하	
기정	수색5 재정비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49	75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6 재정비촉진	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60이하	228.1	268.1이하	19.9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수색7 재정비촉진	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9.55이하	17.5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8 재정비촉진	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9이하	18.7이하/22이하	66이하	
	A.IIO 제집합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1.3	274.0이하	25.4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수색9 재정비 기정 촉진구역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81.8	439.9이하	-/22이하	85이하	

구분	구역	벼대	 주용도	건폐율(%)		덕률(%)	높이계	획	비고
⊤⋷	Τ-	iö		신쀠끝(%)	기준	최대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비포
	소세이 제저나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1.3	275.0이하	25.4이하/30이하	92이하	
변경	수색9 재정비 변경 촉진구역	9-2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81.8	442.9이하	-/22이하	85이하	
기정	수 <u>4</u> 재정비를		복합용도	60이하	360.0	400이하	-/22이하	104이하	
기정	수 ⁴ 재정비를	백12 특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53.0	760이하	-/28이하	110이하	
기정	수 ⁴ 재정비	백13 특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2.5이하	15.1이하/20이하	65이하	
		2-1,2-2 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247.7이하	22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	2-4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61.09	290.9이하	-/25이하	90이하	
기정	· 증산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7이하	18.1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7이하	19.7이하/30이하	92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촉진지구 기반시설(변경)

7 H		면적(m²)		ut =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u></u>	245,710.0	감) 5.1	245,704.9	
도로	110,037.0	감) 4.8	110,032.2	
보행자도로	5,596.4	감) 13.1	5,583.3	
공원	35,039.1	감) 13.0	35,026.1	봉산도시자연공원 포함
녹지	23,790.3	-	23,790.3	8개소
광장	1,001.0	-	1,001.0	2개소
전기공급설비	【1.4km중0.73km】	-	【1.4km중0.73km】	수색~향동
공공청사	3,967.0	-	3,967.0	5개소
학교	56,616.3	-	56,616.3	4개소
사회복지시설	4,220.9	-	4,220.9	6개소
도서관	3,776.0	증) 25.8	3,801.8	1개소
문화시설	1,666.0	-	1,666.0	1개소
체육시설	(4,023.0)	-	(4,023.0)	1개소(복합용지내 복합)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 는 중복결정 또는 지중시설임
 ※ () 는 복합용지 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 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변경)

					면적(m²)			
구분	역명	구역면적 (m²) A	계획 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계획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면적 B=①-②-③- ④	순부담율(%) B/A
기정	ᅰ	683,536.9	184,625.1	42,089.4	61,768.1	-	89,044.0	13.0
변경	계	683,426.4	184,620.0	42,089.4	61,768.1	-	89,038.9	13.0
기정	수색1	4,422.0	1,162.0	354.0	371.0	-	437.0	9.9
기정	수색2	5,026.0	931.0	38.0	128.0	-	765.0	15.2
기정	수색3	3,704.0	1,342.0	768.0	18.0	-	556.0	15
기정	수색4	61,519.3	13,477.5	2,099.5	7,051.0	-	7,666.0	12.4
기정	수색5	2,961.0	1,366.0	444.0	468.0	-	454.0	15.3
기정	수색6	65,977.0	18,203.0	5,222.0	6,099.0	-	6,882.0	10.4
기정	수색7	31,796.6	6,434.6	1,963.0	_	_	4,471.6	14.1
기정	수색8	29,884.0	9,072.0	2,638.0	2,727.0	-	3,707.0	12.4
기정	수색9	36,458.6	9,119.9	1,023.6	1,729.0	-	6,367.3	17.46
변경	TÄΫ	36,348.1	9,114.8	1,023.6	1,729.0	_	6,362.2	17.50
기정	수색11	3,163.0	315.0	-	-	-	315.0	9.95
기정	수색12	4,453.0	2,079.0	874.0	495.0	-	710.0	15.9
기정	수색13	69,681.0	14,280.0	2,375.0	7,698.0	-	9,144.4	13.1
기정	증산2	78,755.2	23,154.1	7,057.8	7,699.6	-	8,396.7	10.7
기정	증산4	172,932.0	51,957.0	10,812.0	16,710.0	-	24,435.0	14.1
기정	증산5	112,804.2	31,732.0	6,420.5	10,574.5	-	14,737.0	13

 [※] 공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에 의한 환산부지면적은 순부담면적에 포함
 ※ 수색9구역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전용면적 40㎡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50~60㎡	전용면적 85㎡	Й
기정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	-	-	_	
기정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	-	-	-	
기정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	-	-	-	
기정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85	83	35		203
기정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	-	-	-	
기정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88	97	23		208
기정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49	49	18		116
기정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40	40	19		99
기정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57	54	20	4	135
기정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	-	-	-	
기정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	-	-	-	
기정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140	112	48	-	300
기정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114	99	24	-	237
기정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228	228	139	-	595
기정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120	121	51	-	292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여성친화적계획) (변경없음)
- 15) 광고물 관리 계획(변경없음)
-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 가) 수색1~8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나)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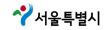
구분	촉진사업명칭	OI T I	면적(m²)			비고
干面	국선사립경경	T A	기 정	변경	변경 후	н <u>т</u>
변경	수색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색동 30-2번지 일원	36,458.6	감) 110.5	36,348.1	측량결과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2) 정비계획(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²)		7.44I/0/\	비고
	↑ 군	기정	변경	변경 후	구성비(%)	山 木
	합 계	36,458.6	감) 110.5	36,348.1	100.0	택지예정 좌표측량 반영
	소계	9,119.9	감) 5.1	9,114.8	25.1	
	도로	5,774.0	5,774.0 감) 4.8 5,769.2		15.9	선형변경, 측량결과 반영
기반 시설	보행자도로	1,178.9	감) 13.1	1,165.8	3.2	측량결과 반영
	공원	969.0	감) 13.0	956.0	2.6	측량결과 반영
	도서관	1,198.0	증) 25.8	1,223.8	3.4	측량결과 반영
	소 계	27,338.7	감) 105.4	27,233.3	74.9	
택지	9-1	23,343.0	감) 37.2	23,305.8	64.1	측량결과 반영
(획지)	9-2	3,277.7	감) 24.4	3,253.3	8.9	측량결과 반영
	9-3	718.0	감) 43.8	674.2	1.9	측량결과 반영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나)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²)		구성비(%)		
	TE	기정	기정 변경 변경후				
	Й	36,458.6	감) 110.5	36,348.1	100.0		
주거 지역	소 계	31,240.3	감) 130.6	31,109.7	85.6		



	구분		면적(m²)		□ MHI(0/)
	TE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5	증) 0.5	113.0	0.3
일반 주거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57.9	증) 17.1	1,275.0	3.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0.9	-	330.9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29,539.0	감) 148.2	29,390.8	80.9
	준주거지역	5,218.3	증) 20.1	5,238.4	14.4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 기능	연장	Ŷ	ĪĀ	사용	최초	비고
TE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하	5.9	기점	종점	형태	결정일	ηΨ
기정	중로	2	466	15 (7.5)	국지도 로	481 (191)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173호 (08.05.22)	
기정	중로	2	467	15	국지도 로	619 (171)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173호 (08.05.22)	
기정	중로	2	468	15 (7.5)	국지 도로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173호 (08.05.22)	
기정	중로	2	475	15	특수 도로	41	수색동 32-34도 일원	증산동 217-32대 일원	보행자 도로	서고 제2008-173호 (08.05.22)	
기정	중로	2	476	15	특수 도로	44	수색동 76-1대 일원	수색동 32-6대 일원	보행자 도로	서고 제2008-173호 (08.05.22)	
기정	소로	1	1	10~15 (15)	국지 도로	154 (81)	수색동 24-3대 일원	증산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173호 (08.05.22)	선형 변경
변경	소로	1	1	10~15 (15)	국지 도로	154 (81)	수색동 24-3대 일원	증산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서고 제2008-173호 (08.05.22)	변경
기정	소로	1	3	6~10	특수 도로	150 (16)	증산동 217-28대 일원	수색동 217-4대 일원	보행자 도로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안의 사항은 수색9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	소로 1-1	• 도로 선형 변경	• 시설 선형변경(일부구간 직선화)

②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01-1		면적(m²)		·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변경	_	공원	봉산도시 자연공원	수색동 산17-1 일대	1,510,558.0 [33]	감) 2.5	1,510,555.5 [30.5]	서고 제513호 (83.09.2)	주석1 참조
변경	1	공원	소공원	수색동 25-15 일대	936.0	감) 10.5	925.5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 1) []는 구역내 면적임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봉산도시 자연공원	• 면적 변경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1	소공원	• 면적 변경 - 936.0㎡→ 925.5㎡ , 감)10.5㎡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③ 도서관(변경)

-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ᆲ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건	!축물의 범위		최초	비고
⊤世	표시번호	시크리	세분	TI^I	기정	변경	변경 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일	비포
변경	1	도서관	-	수색동 21-1일원	3,776.0 (1,198.0)	증)25.8	3,801.8 (1,223.8)	60% 이하	200% 이하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안의 사항은 수색9구역내 사항임.

- 도서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서관	• 면적 변경 - 1,198.0㎡→ 1,223.8㎡, 증)25.8㎡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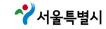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	또는 획지구분	OI ÷I		Z.	병비계량계획	(동)		шп
구분	명칭	면적(m²)	명칭	면적(m²)	위치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비고
			계	27,338.7							
기정	수색9 재정비	36,458.6	9-1	23,343.0	수색동	162	_	_	162	_	
710	촉진구역	30,430.0	9-2	3,277.7	30-2	102			102		
			9-3	718.0							
			계	27,233.3							
변경 변경	수색9 재정비	36,348.1	9-1	23,305.8	수색동	162	_	_	162	_	측량결과에 따른 구역 및 획지 면적
20	촉진구역	30,340.1	9-2	3,253.3	30-2	102			102		변경 변경
			9-3	674.2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7.11	구역	벽구분	가구 또	는 획지 구분	01-1	용적률산정용	X CI O C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
구분	명칭	면적(m²)	명칭	면적)m²)	위치	연면적(m²)	주된용도	(%)	(%)	최고층수
			계	27,338.7				-		
	수색9		9-1	23,343.0	-	63,906.53	공동주택	50%이하	274.0% 이하	25.4/30 (92m이하)
기정		36,458.6	9-2	3,277.7	-	14,399.18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439.9% 이하	-/22 (85m이하)
			9-3	718.0	-	-	종교용지		관련 법규에 의	함
			계	27,233.3				_		
	수색9		9-1	23,305.8	_	63,906.53	공동주택	50%이하	275.0% 이하	25.4/30 (92m이하)
변경		36,348.1	9-2	3,253.3	-	14,399.18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442.9% 이하	-/22 (85m이하)
			9-3	674.2	-	-	종교용지		관련 법규에 의	하



78	구9	격구분		가구 또	는 획지 구	분	01-1	용적률신	정용	XEIO.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	
구분	명	면적	(m²)	명칭	면적)) m²)	위치	연면적	(m²)	주된용도	(%)	(%)	최고층수	
			Ī	1 분			기정			증감		변경		
			건립	예정 세대수 계	1		644			-		64	4	
			전용	R면적 40㎡이히	ŀ		57			_		57	1	
		0_1	전용면적 40~50㎡ 9-1				54			_		54	ļ	
		3 1	전용	H면적 50∼60m	2		222			-		22	2	
			전용	H면적 60∼85m	2		261			_		26	1	
	주택의 규모 및		전용	85㎡초고	ł	50			-			50		
1			건립예정 세대수 계			109				_		10	9	
2	규모별 1설비율	별 0-2	전용면적 50~60㎡				4 -				4			
			전용면적 60~85m²				105	-				10	5	
			합 계				753			-		75	3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적용기준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2호 기준준수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1항1호 기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건설하여야 함. ※ 9-2의 주된용도 중 업무시설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용.									전용면	적 60m*이하로				
건	건축물의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6m • 연도형 상가 구성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관한계획 • 9-1 주택용지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적용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구역 및 획지 면적 변경
 -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거리이쉬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	세대수		
건립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세네ㅠエ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62		감) 61.6	26,559.1	9,206.16	-	9,206.16	Й	135	-	135
A 1110								소계	127	-	127
수색9 재정비								전용면적 40㎡이하	57	-	57
촉진구역	9-1	23,343.0	감) 37.2	23,305.8	8,394.15	-	8,394.15	전용면적 40~50㎡	54	-	54
								전용면적 50~60m²	16	-	16



거리이귀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		세대수			
건립위치	38 HOLE 1 F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게내ㅠエ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8	-	8		
	9-2	3,277.7 감) 2	감) 24.4	3,253.3	812.01	-	812.01	전용면적 50~60m²	4	-	4		
								전용면적 60~85㎡	4	-	4		
적용 기준	• 주: • 9-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40%이상을 건설할 것 • 9-2 복합용지의 장기전세주택의 건립면적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이상을 건설할 것 (재정비 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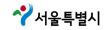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 변경
- 다) 수색11~증산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라) 수색1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世	THO	T/시	기정	변경	변경후	최조필정필
주거지형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은평구 수색동·증산동 일대	791,413.7	감) 110.5	791,303.2	서고제2008-173호 (2008.05.22)

-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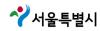
		구 분		면적(m²)		구성비(%)
		Т с	기정	변경	변경후	〒3円(%)
		계	791,413.7	감) 110.5	791,303.2	100.0
		소 계	776,712.7 감) 110.5		776,602.2	98.1
		제1종일반주거지역	83,964.5	증) 0.5	83,965.0	10.6
후 거	일반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9,923.3	증) 17.1	149,940.4	18.9
지역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14,625.7	-	414,625.7	52.4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39.2	감) 148.2	74,591.0	9.4
	준주거지역		53,460.0	증) 20.1	53,480.1	6.8
		일반상업지역	14,701.0	-	14,701.0	1.9

※ 변경사유 : 수색9구역 택지예정좌표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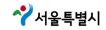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1) 교통시설(변경)
 -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_	T = 0 (0 0) 1 1											
78		π	모		71-	연장	위	치	사용	주요	최초	ul ¬
구분	디미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4	34~40	주간선 도로	1,700	남가좌동 (사천교)	신도읍 강매리	일반 도로	-	건고738호 (63.12.24)	
기정	중로	2	61	15	보조간선 도로	5,615	갈현동 (신:388-1)	수색동 (신:109-1)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기정	중로	1	442	21	집분산 도로	72	수색동 411-9도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3	18~21	집분산 도로	82	증산동 198-6구 일원	증산동 198-7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4	10~21	집분산 도로	1,480	증산동 222-4대 일원	증산동 158-26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5	21	집분산 도로	91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5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6	9~21	국지 도로	48	증산동 168-4대 일원	증산동 168-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7	10.5~21	집분산 도로	102	증산동 196-1도 일원	증산동 196-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1	15~19	국지 도로	733	수색동 325-21대 일원	수색동 11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358-3대 일원	수색동 136-5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3	15	국지 도로	202	수색동 115-11대 일원	수색동 136-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4	15	국지 도로	212	수색동 160대 일원	수색동 165-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21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6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8	15	국지 도로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9	15	국지 도로	132	수색동 219-28대 일원	수색동 219-15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78			} 모		716	연장	위	치	사용	주요	최초	- ایر
구분	디디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470	15	국지 도로	80	증산동 산21-3임 일원	증산동 206-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1	11~15	국지 도로	91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74-1주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3	15	국지 도로	115	증산동 198-1구 일원	증산동 198-1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5	15	특수 도로	41	수색동 32-34도 일원	증산동 217-32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6	15	특수 도로	44	수색동 76-1대 일원	수색동 32-6대 일원	보행자 도로	_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8	12	국지 도로	27	증산동 217-4대 일원	증산동 27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9	12	국지 도로	104	증산동 233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1	6~12	국지 도로	146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3	12	국지 도로	17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5	12	국지 도로	215	증산동 200-1도 일원	증산동 197-2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6	6~12	국지 도로	283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1	10~15	국지 도로	154	수색동 24-3대 일원	증산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선형
변경	소로	1	1	10~15	국지 도로	154	수색동 24-3대 일원	증산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115	증산동 254-1도 일원	증산동 201-7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3	6~10	특수 도로	150	증산동 217-28대 일원	증산동 217-4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185	증산동 236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_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2	9	특수 도로	49	수색동 102-20대 일원	수색동 104-1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7.1		π	모		-11	연장	위	λ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3	수색동 129-4학 일원	수색동 129-4학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2	7	특수 도로	63	수색동 368-4대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4	4.5	특수 도로	65	수색동 366-5대 일원	수색동 365-8대 일원	보행자 도로	_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3	증산동 131-95대 일원	증산동 254-1도 일원	일반 도로	_	서고 제2012-195호	
기정	소로	3	6	6~8	국지 도로	185	수색동 153-1 일원	수색동 76-27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 도로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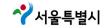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	소로 1-1	• 도로 선형 변경	• 시설 선형변경(일부구간 직선화)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	비고
TE	표시번호	세분	TIA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꼬
변경	-	봉산도시 자연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510,558.0 (지구내2,704)	감) 2.5	1,510,555.5 (지구내2,701.5)	서고제513호 (83.09.29)	측량결과
기정	3	근린공원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	18,194.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1	어린이공원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2	어린이공원	증산동 211-11대 일대	4,595.5	-	4,595.5	서고 제2008-173호	



구분	도면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	비고
TE	표시번호	세분	TI^I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포
기정	3	어린이공원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4	어린이공원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3.1	-	2,033.1	서고 제2008-173호	
변경	1	소공원	수색동 25-15대 일대	936.0	감) 10.5	925.5	서고 제2008-173호	측량결과
기정	2	소공원	수색동 361-10	3,571.5	-	3,571.5	서고 제2016-134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봉산도시 자연공원	• 면적 변경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1	소공원	• 면적 변경 - 936.0㎡→ 925.5㎡, 감)10.5㎡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나) 녹지(변경없음)

- (3)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 (나) 학교(변경없음)
 - (다) 도서관(변경)
 -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이귀		면적(m²)		건	축물의 범위		최초	비고	
干正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일	비포	
변경	1	도서관	-	수색동 21-1일원	3,776.0 (1,198.0)	증)25.8	3,801.8 (1,223.8)	60% 이하	200% 이하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안의 사항은 수색9구역내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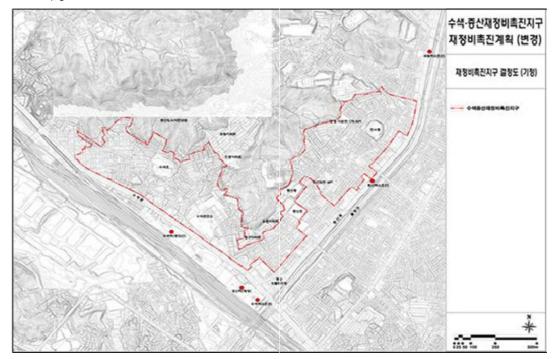
- 도서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서관	• 면적 변경 - 1,198.0㎡→ 1,223.8㎡ , 증)25.8㎡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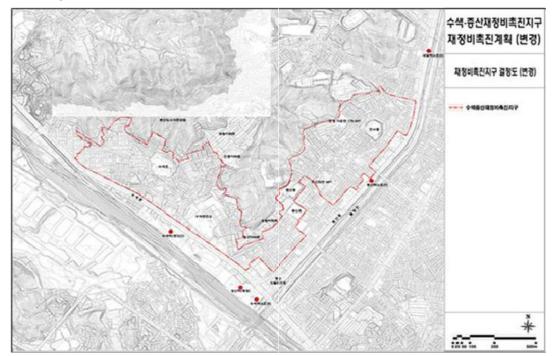
- (라)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5) 기타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마)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도서」에 명시
-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3)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2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아. 정비계획 결정도
- 1)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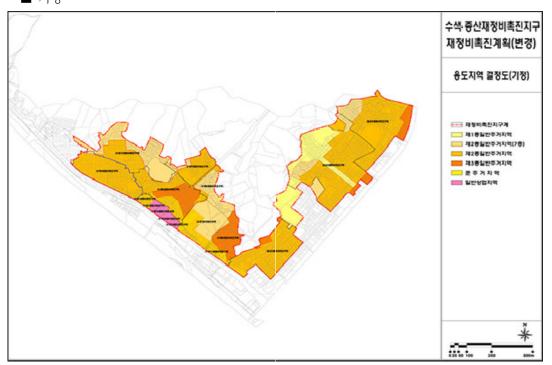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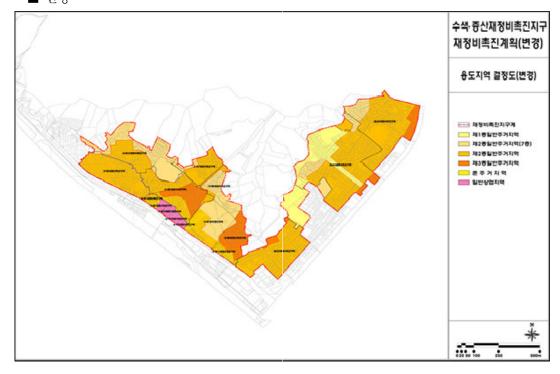


서울시보 제3725호 2021. 10. 14.(목) 2)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기정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도시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기정) 재정미축진지구계 재정미축진구역계 무역대개발사업 도시한경정비사업 0 25 50 100 ■ 변경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변경)

3)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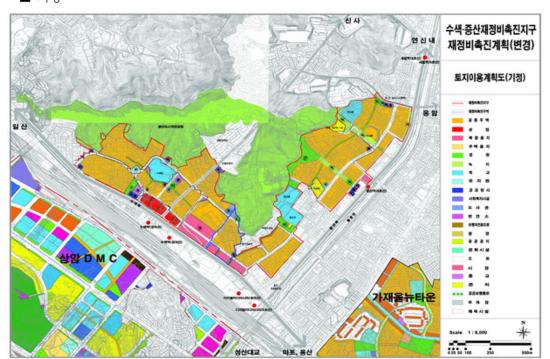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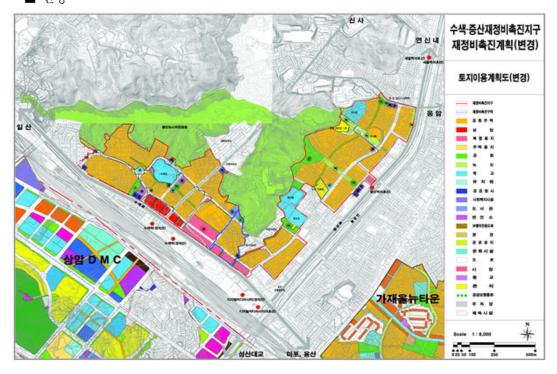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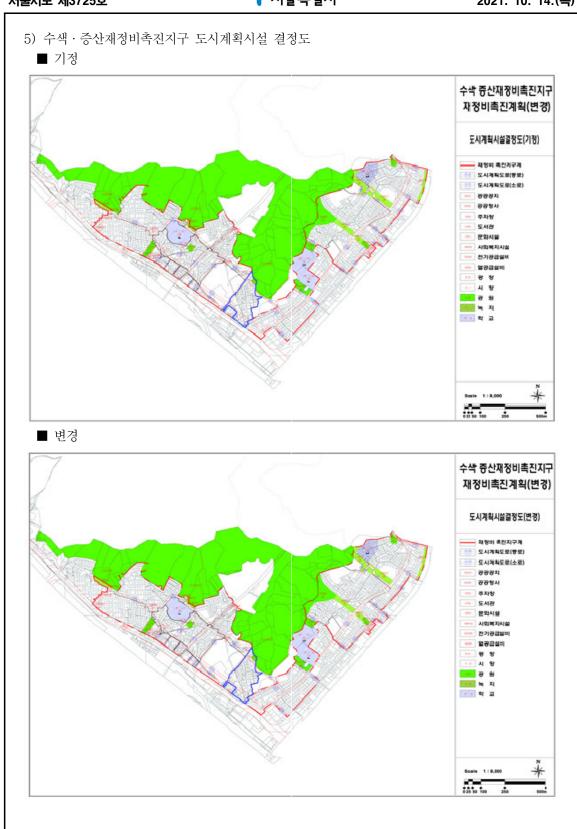
4)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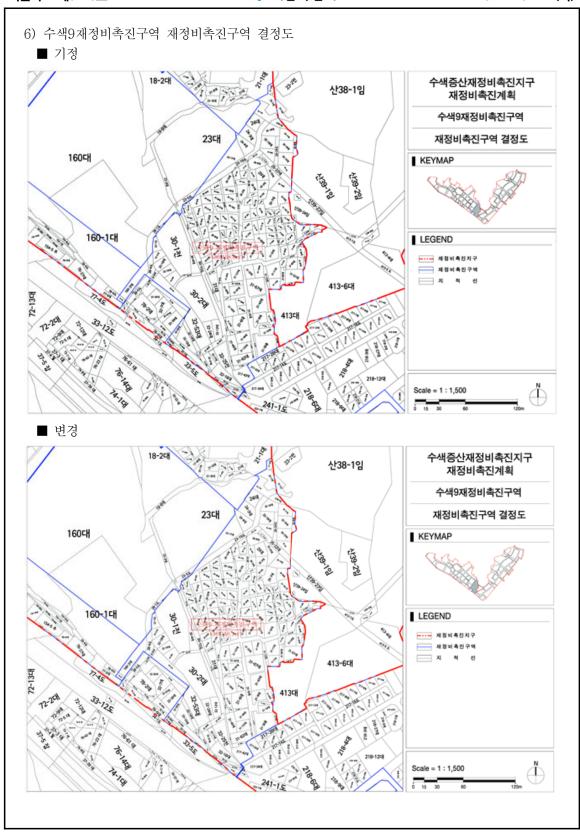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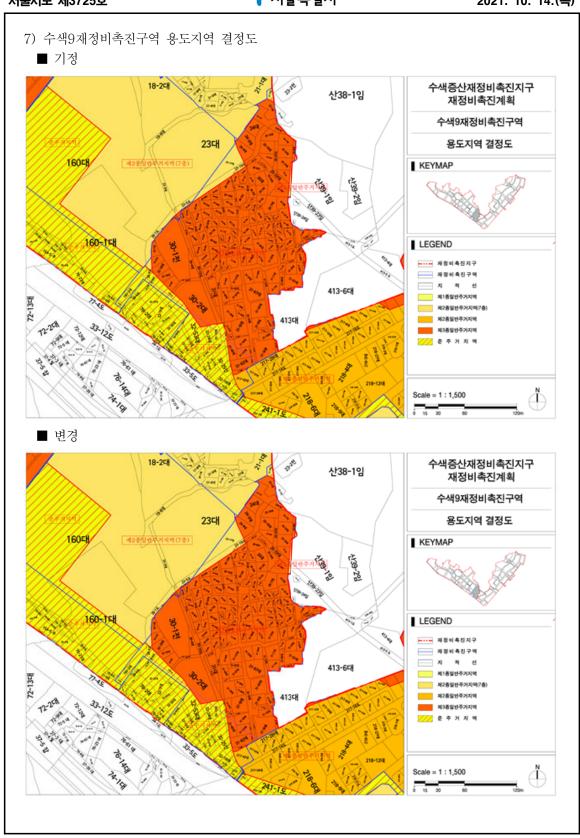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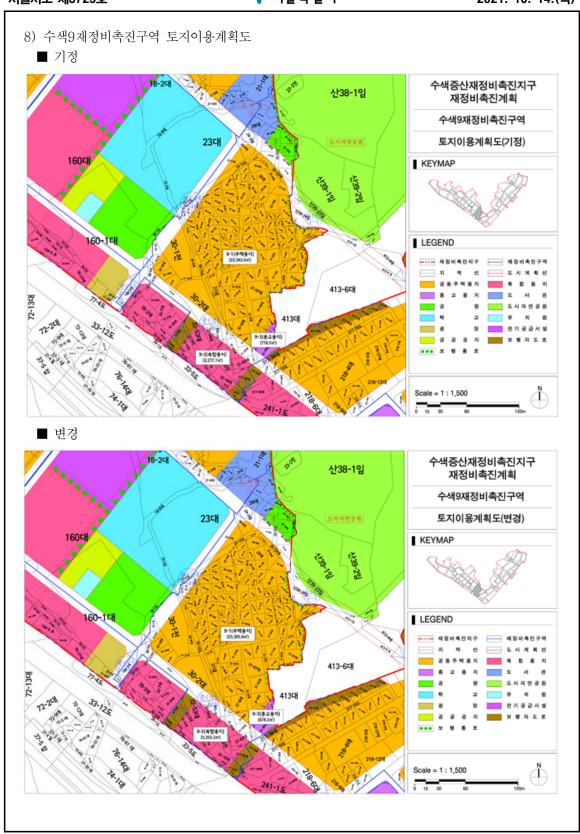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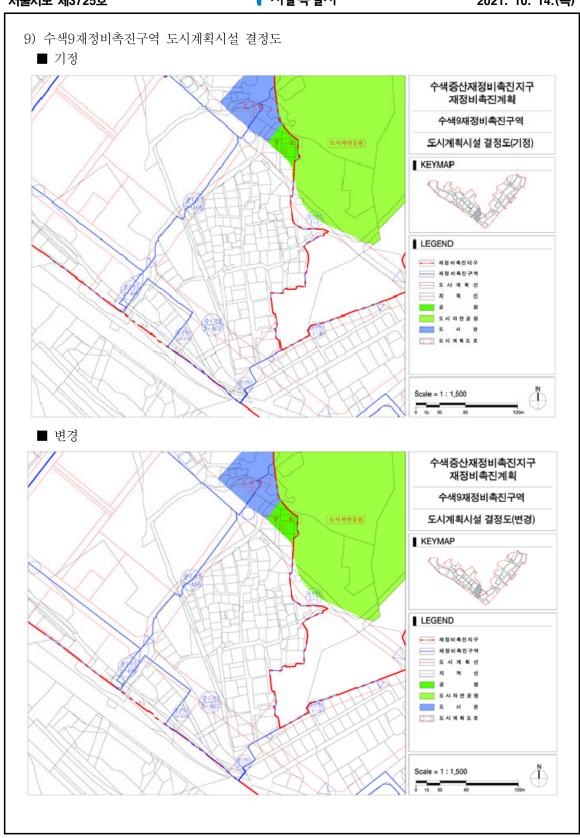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7호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 제2011-309호(2011.10.20.)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3호(2017.12.28.),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0-132호(2020.11.2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송파구 오 금동 166번지 일대 가락상아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 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지정	정비사업 명칭	위치		비고		
구분	3 NATE 98	TI ^I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포
기정	가락상이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13,580	-	13,580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비율	비고		
⊤世	Ö Ö	기 정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포
	합 계	13,580	-	13,580	100.0	
정비 기반	소 계	130	감) 0.6	129.4	1.0	
기년 시설	도 로	130	감) 0.6	129.4	1.0	
획지	소 계	13,450	증) 0.6	13,450.6	99.0	
색시 	공동주택	13,450	증) 0.6	13,450.6	99.0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13,580	-	13,58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80	-	13,580	100.0	

서울시보 제3725호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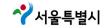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千正	디디	류별	번호	폭원(m)	기급	(m)	\land	ōп	형태	경과지	결정일	
-	기정	소로	1	-	10~11.5	국지 도로	- (86m)	-	-	일반 도로	-	-	일부 확폭

- ※ ()은 구역 내 결정사항임.
-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면적 기준 (m²)		비고
17	시설의 중ㅠ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끄
		2,689.14	감) 484.73	2,024.41	
	관리사무소	118.90	감) 1.32	117.58	
경비실		24.80	감) 7.37	17.43	
	경로당	173.50	감) 2.84	170.66	
	어린이놀이터	712.94	감) 102.50	610.44	
주민 공동 시설	어린이집	239.18	증) 27.87	267.05	
ㅇㅇ 시설	작은도서관	134.32	증) 70.25	204.57	
	커뮤니티	863.93	감) 47.25	816.68	
	주민운동시설	421.57	감) 421.57	_	
	근린생활시설	-	-	-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부합여부 : 세대 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 (405 × 2.5m²) × 1.25 = 1,637.5m² 이상 < 2,024.41m² : 적합
- 6.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구 또는 지 구분	OI T I	정비개량계획(동)					нга
干正	명칭	면적 명칭 면적 (m²) 위치		1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비고	
기정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3,580	획지1	13,450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3	-	-	3	-	
변경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3,580	획지1	13,450.6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3	-	-	3	-	



7.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 획지 구	분	위치	주된	건폐율	용적	률(%)	높이(m)	ul
↑で	명칭	면적 (m²)	명칭		면적 (m²)	1 취시	주된 용도	(%)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최고층4	F H
기정	가락상아 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3,580	획지1		13,450	오금동 166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30% 이하	232.63% 이하	299.75% 이하	최고 30층((87m이히	
변경	가락상아 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3,580	획지1	획지1 13,450.6		오금동 166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30% 이하	232.63% 이하	299.75% 이하	최고 30층((91m이히	
			○ 주택 등	공급계획 :	: 405세대(현	년황 226세대)		1	I		.1	
					구분			세대:	^		비율(%)	비고
					TE		기 정	증감	¥	변 경	미끌(%)	비포
	ᄌᆐᇬᄀ	¬ П			Л		405	-		405	100.0	
	주택의 규 <u>년</u> 규모별 건설	도 및 비율		임대		60m²이하	63	-		63	15.6	
			공동 주택			60m²이하	116	-		116	28.6	
			분양)~85㎡이하	201	-		201	49.6		
			85㎡초과	25	-		25	6.2				
	- 85m*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						지하는 비율 :	93.8%				
	심의완화	사항 	• 예정	법적상한용	· 전률 : 299	.75%						
					-11-11-11-0			-11.4	H.D			
	건축물의 건 관한 계	축선에 획	41-	구분	. O.T.	계획내용		-11111	•	박목표 	174 711 11	
	건간 <u>계</u> 역			기 및 도로	: 연섭	경계선에서 3	m	개방1	감 확보 및 도	.도 · 모행혼 	!경 개선 	



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비고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계획 정비기반시설	기존 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3,580 m²	13,450 m²	130 m²	-	-					
	공공시설부지 토지 130㎡ 제공면적 순부담 면적 : 130㎡(1.0%)										
기정	기준용적률	210% 이하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20%) = 210% + 20% = 230% 인센티브 = 20%[지속가능형 건축구조(7%) +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8%) + 지능형 건축물(6%)]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3 x α = 230% + (210% x 1.3 x 0.00966) = 232.63%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130㎡ ÷ 13,450㎡ = 0.00966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299.75% 이하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계획 정비기반시설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3,580 m²	13,450.6m²	129.4m²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2	토지 129.4㎡ 순부담 면적 : 129.4㎡(1.(0%)						
변경	기준용적률			210% 이하							
Ľ0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20%) = 210% + 20% = 230% 인센티브 = 20%[지속가능형 건축구조(7%) +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8%) + 지능형 건축물(6%)]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3 x α = 230% + (210% x 1.3 x 0.00962) = 232.63%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129.4㎡ ÷ 13,450.6㎡ = 0.00962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299.75% 이하							

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 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계획	기준	●소형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뺸 용적률의 50% 이상 ●소형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협	 한용적률	299.75% 이하								
상한용	용적률			232.63%						
	용적률 증가분		299	9.75% - 232.63% = 67.	12%					
소형주택 의무면적	증가된 용적률의 50%	67.12% x 0.5 = 33.56% 13,450.6m² x 33.56% = 4,514.02m²								
	의무 연면적	4,514.02㎡ 이상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기저	44.97 m²	62.74m²	36세대	2,258.64	획지1				
	기정	59.95 m²	83.98 m²	27세대	2,267.46	획지1				
사원자대		합	계	63세대	4,526.10m²	> 4,514.02 m²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コエバリコ		44.99 m²	62.63 m²	36세대	2,254.68	획지1				
	변경	59.99 m²	83.61 m²	13세대	1,086.93	획지1				
		59.99 m²	83.78 m²	14세대	1,172.92	획지1				
		하	·계	63세대	4,514.53m²	> 4,514.02 m²				

[※]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계획 및 건립되어 서울특별시에 인수되는 모든 공공기여 임대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건립되는 소형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시행령 제48조(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합원 분양주택과 동일,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에 매각(처분)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조합원 분양이 없는 경우 주택규모는 일반분양주택에 우선하여 공급한다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78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11어 비해에 저지	정비사업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丁世	시생정답	시행에경시기	사업시행예정자	기존	계획	ĸ.o	비고		
기정	재건축 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	226	405	179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2.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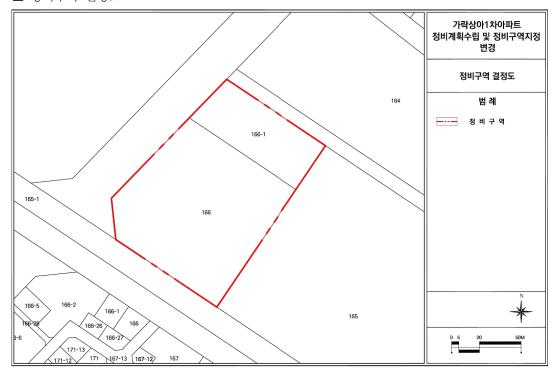
-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1.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2.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3. 토지이용 계획도 (변경없음)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5-1.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5-2.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도서 참조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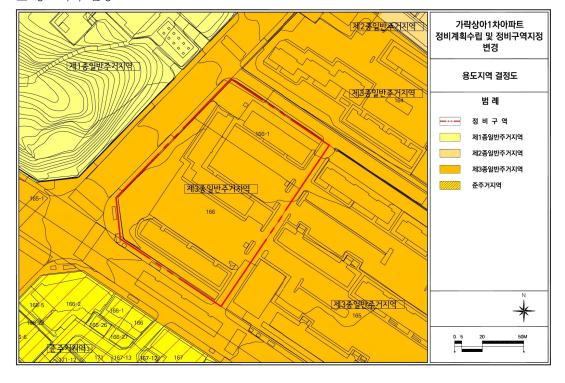
- 관계도서는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146) 및 송 파구청 주거사업과(☎ 02-2147-2896)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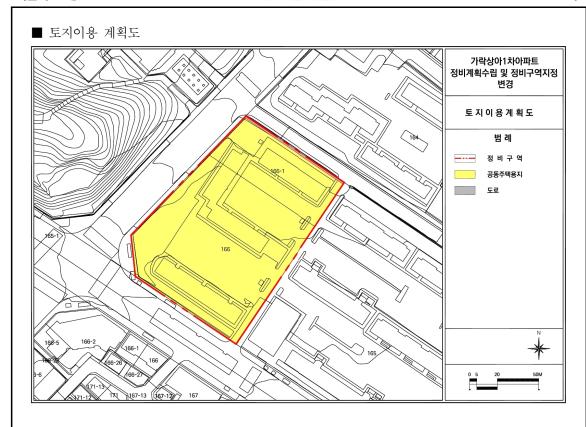
VI.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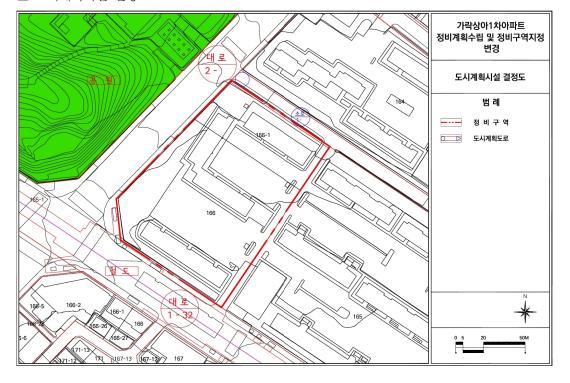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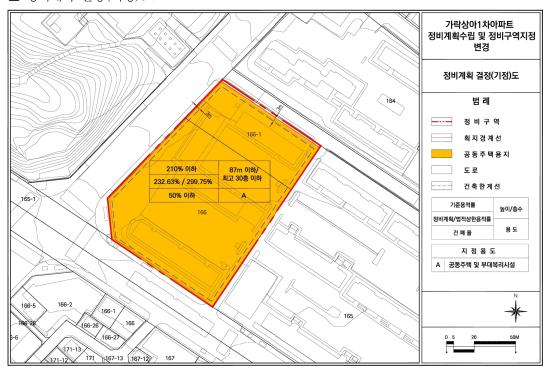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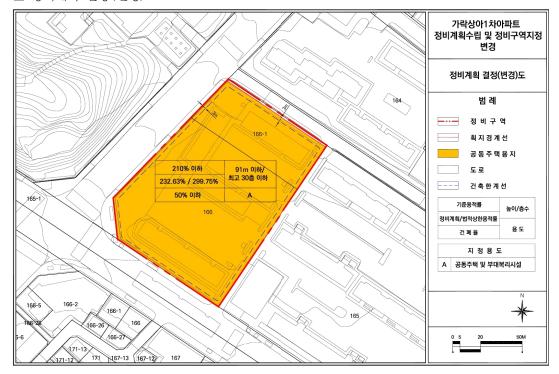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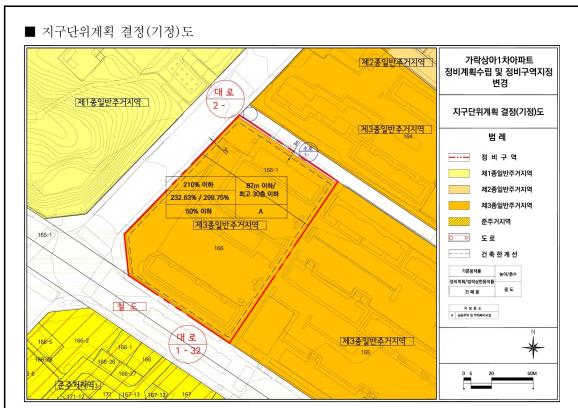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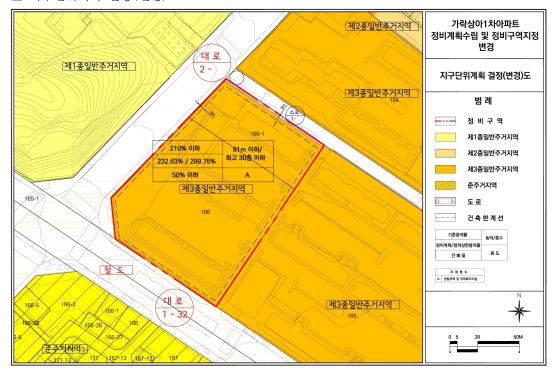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8호

도시관리계획(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 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28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1년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 원회(21.03.1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2010년 1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고, 2013년 1월 '산업개발진흥계획'이 승인 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권장업종(첨단산업) 활성화, 노후 산업시설의 재생. 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성수 준공업지역 중심지 위상 정립 및 첨단산업 거점 육성을 위 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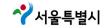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7.8	7 0 8	01 -1		최초	w. n		
구분	구 역 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성수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2가 277-28 일대	-	증)578,619	578,61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1	성동구 성수동2가 277-28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578,619㎡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권장업종(첨단산업) 활성화, 노후 산업시설의 재생, 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성수 준공업지역 중심지 위상 정립 및 첨단산업거점 육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서울시보 제3725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고
	ТЕ	기정	변경	변경후	Точ(%)	nl 77
	합 계	578,619	-	578,619	100.0	-
	소 계	24,780	_	24,780	4.3	_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4,780	-	24,780	4.3	-
공업지역	소 계	553,839	_	553,839	95.7	_
6년시점	준공업지역	553,839	-	553,839	95.7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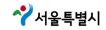
1)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개발 진흥지구	산업 · 유통 개발진흥지구	성동구 성수동2가 277-28번지 일대	539,406	서고제2010-21호 (10.1.28)	_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도로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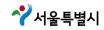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ή <u>2</u>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u></u> 합계	29	10,888	133,513	4	2,064	36,376	17	6,508	80,066	8	2,316	18,436
대로	3	2,419	61,773	1	626	22,074	2	1,793	39,699	-	-	-
중로	2	598	8,714	-	-	-	1	256	3,895	1	342	15,044
소로	24	7,871	63,026	3	1,438	14,302	14	4,459	36,472	7	1,974	3,392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ਜ	모			연 장			사 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경유지	의소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626)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	건고제738호 (63.12.24)	아차산로
기정	대로	2	23	30 ~39 (15)	주간선 도로	6,500 (999)	중랑구 면목동 (대1-15)	성동구 성수동 (중1-183)	일반 도로	-	건고제738호 (63.12.24)	동일로
기정	대로	2	25	20 ~40 (30)	주간선 도로	10,000 (794)	성동교 남단	대로2-26 교점	일반 도로	-	내고제23호 (52.03.25)	광나루로
기정	-	-	_	-	-	- (8,469)	-	-	-	-	서공제140호 (69.06.19)	뚝도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 도로구역
변경	중로	2	A	16	집산 도로	256	성수동2가 278-25	성수동2가 278	일반 도로	_	-	_
변경	중로	3	A	14	집산 도로	342	성수동2가 279-50	성수동2가 279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A	10	국지 도로	677	성수동2가 19-1	성수동2가 277-20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В	10	국지 도로	542	성수동2가 277-138	성수동2가 280-17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С	10	국지 도로	219	성수동2가 273-1	성수동2가 272-4	일반 도로	-	-	_
변경 	소로	2	Α	8	국지 도로 	323	성수동2가 280	성수동2가 281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В	8	국지 도로	274	성수동2가 280-3	성수동2가 281-14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C	8	국지 도로	349	성수동2가 279-35	성수동2가 281-3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D	8	국지 도로	220	성수동2가 277-32	성수동2가 277-67	일반 도로	_	-	_
변경 	소로	2	E	8	국지 도로 	597	성수동2가 277-117	성수동2가 19-12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F	8	국지 도로 	252	성수동2가 278-52	성수동2가 277-1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G	8	국지 도로 	220	성수동2가 277-24	성수동2가 277-141	일반 도로	-	<u> </u>	_
변경	소로 	2	Н	8	국지 도로 	386	성수동2가 277-156	성수동2가 278-1	일반 도로	-	<u>-</u>	_
변경	소로 	2		8	국지 도로 	220	성수동2가 273-17	성수동2가 273-26	일반 도로	-	-	_
변경 	소로 	2	J	8	국지 도로 	219	성수동2가 273-16	성수동2가 271-24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K	8	국지 도로 	575	성수동2가 275-52	성수동2가 317-5	일반 도로	-	-	_
변경	소로	2	L	8	국지 도로	220	성수동2가 276-4	성수동2가 275-20	일반 도로	-	-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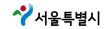
		ਜ	모			od TI			11.0	T.O.	=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소로	2	М	8	국지 도로	220	성수동2가 275-48	성수동2가 19-14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N	8	국지 도로	384	성수동2가 19-24	성수동2가 279-50	일반 도로	_	_	_
변경	소로	3	А	6	국지 도로	81	성수동2가 281-8	성수동2가 281-37	일반 도로	_	_	_
변경	소로	3	В	6	국지 도로	287	성수동2가 280-9	성수동2가 280-25	일반 도로		_	_
변경	소로	3	С	6	국지 도로	400	성수동2가 278-32	성수동2가 279-29	일반 도로	_	-	-
변경	소로	3	D	6	국지 도로	505	성수동2가 277-33	성수동2가 277-102	일반 도로	_	_	_
변경	소로	3	E	6	국지 도로	118	성수동2가 277-12	성수동2가 277-14	일반 도로	_	_	_
변경	소로	3	F	6	국지 도로	473	성수동2가 273-50	성수동2가 275-15	일반 도로	_	_	_
변경	소로	3	G	6	국지 도로	110	성수동2가 278-51	성수동2가 278-5	일반 도로	_	_	_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	중로2-A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16m - L = 8,469m 중 256m	
변경	-	중로3-A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14m - L = 8,469m 중 342m	
변경	-	소로1-A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10m - L = 8,469m 중 677m	•1969년 조성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경과조치 ¹⁾ 된 뚝도 토지구획정리지 구 내 도로구역을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변경	-	소로1-B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10m - L = 8,469m 중 542m	
변경	-	소로1-C	•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10m - L = 8,469m 중 219m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소로2-A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323m	
변경	-	소로2-B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274m	
변경	-	소로2-C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349m	
변경	-	소로2-D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220m	
변경	-	소로2-E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597m	
변경	-	소로2-F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252m	
변경	-	소로2-G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220m	
변경	-	소로2-H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386m	
변경	-	소로2-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220m	
변경	_	소로2-J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219m	
변경	-	소로2-K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575m	
변경	-	소로2-L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220m	
변경	-	소로2-M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220m	
변경	-	소로2-N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8m - L = 8,469m 중 384m	
변경	-	소로3-A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6m - L = 8,469m 중 81m	



	변경전	변경후		
구 분	도로명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소로3-B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6m - L = 8,469m 중 287m	
변경	-	소로3-C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6m - L = 8,469m 중 400m	
변경 	-	소로3-D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6m - L = 8,469m 중 505m	
변경	-	소로3-E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6m - L = 8,469m 중 118m	
변경	-	소로3-F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6m - L = 8,469m 중 473m	
변경 	-	소로3-G	•노선분할 및 노선번호 부여 - B = 6m - L = 8,469m 중 110m	

1) 舊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1971. 1. 19.) 부칙 제2항

2) 철도 : 변경없음■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주요 경과지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도시고속철도 (지하철순환선)	서소문동	-	시청	48.8km (430m)	-	건고203호 (75.12.20)	지하철2호선 정차장은 제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없음■ 공원 결정조서

7.11	도면	UUR	시설의	O =1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성수동2가 273-11	1,812.2	-	1,812.2	서공제140호 (69.06.19)	성삼공원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성수동2가 280-12	984.1	_	984.1	서공제140호 (69.06.19)	아남공원
기정	3	공원	소공원	성수동2가 277-23	798.7	_	798.7	서공제140호 (69.06.19)	청송공원



다. 공공·문화체육시설1) 학교: 변경없음■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최초	비고
1 E	번호	시크이	세 분	TI A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n r
기정	16	학교	초등학교	성수동2가 277-32	11,054.9	-	11,054.9	서공제140호 (69.06.19)	성수 초등학교

■ 학교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학교16	초등학교	4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서고제2007-442호 (07.12.06)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 공동개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자율적 공동개발	•가구범위 내 연접한 필지 간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계획 수립 •다음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 - 부정형(요철형, 과소형) - 세장형(단변:장변 1:3 이상) - 인접필지가 맹지, 부정형, 세장형이 되는 경우	-

나. 가구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적(m²)	필지 (성수동2가)	계획내용	비고
01	14,374.9	277-1, 277-4, 277-5, 277-7, 277-8, 277-9, 277-10, 277-11, 277-96, 277-118, 277-159	자율적 공동개발	-
02	14,949.7	278, 836, 278-1, 278-2, 278-3, 278-5, 278-6, 278-7, 278-8, 278-9, 278-10, 278-11, 278-12, 278-14, 278-15, 278-16	자율적 공동개발	-
03	18,411.9	846, 280-26, 280-27, 280-28, 280-29, 280-30, 280-32, 280-33, 280-34, 280-35, 280-36, 280-37, 280-38, 280-40, 280-41, 280-44, 280-45, 280-46, 280-47, 280-55	자율적 공동개발	-

가구번호	면적(m²)	필지 (성수동2가)	계획내용	비고
04	2,083.4	281, 281-1, 281-2, 281-3	자율적 공동개발	-
05	5,791.9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1-10, 281-37	자율적 공동개발	-
06	7,942.2	281-11, 281-12, 281-13, 281-14, 281-15, 281-16, 281-17	자율적 공동개발	-
07	6,431.4	281-18, 281-19, 281-20, 281-21, 281-22, 281-23, 281-24, 281-25, 281-26, 281-27, 281-28, 281-29, 281-30	자율적 공동개발	-
08	6,825.4	280-14, 280-15, 280-16, 280-17, 280-18, 280-19, 280-20, 280-54	자율적 공동개발	-
09	5,595.6	280-11, 280-12, 280-13	자율적 공동개발	-
10	9,168.2	280-21, 280-22, 280-23, 280-24, 280-25	자율적 공동개발	-
11	15,057.1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자율적 공동개발	-
12	6,667.4	280, 280-1, 280-2	자율적 공동개발	-
13	12,535.4	277-12, 277-13, 277-14, 277-15	자율적 공동개발	-
14	9,647.9	278-17, 278-18, 278-19, 278-20, 278-22, 278-23, 278-24, 278-25, 278-26, 278-27, 278-28, 278-29, 278-30	자율적 공동개발	-
15	9,698.5	279, 279-1	자율적 공동개발	-
16	11,546.1	279-12, 279-13, 279-14, 279-15, 279-16, 279-17, 279-18, 279-19, 279-20, 279-21, 279-22, 279-23, 279-51, 279-55	자율적 공동개발	-
17	7,642.5	279-38, 279-39, 279-40, 279-41, 279-42, 279-43, 279-44, 279-46, 279-47, 279-50, 279-54	자율적 공동개발	-
18	5,909.1	278-51, 278-52, 278-53, 278-56	자율적 공동개발	-
19	10,036.9	278-31, 278-32, 278-33, 278-34, 278-35, 278-36, 278-37, 278-38, 278-39, 278-40, 278-41, 278-42, 278-43, 278-44, 278-45, 278-46, 278-47, 278-48, 278-49, 278-55	자율적 공동개발	-
20	10,044.8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79-10, 279-11, 279-52, 279-53	자율적 공동개발	-
21	11,481.1	279-25, 279-26, 279-27, 279-28, 279-29, 279-30, 279-31, 279-32, 279-33, 279-34, 279-35, 279-36	자율적 공동개발	-
22	10,477.9	277-17, 277-19, 277-20, 277-75, 277-76, 277-77, 277-98, 277-154, 277-173, 277-175	자율적 공동개발	-
23	9,461.2	277-22, 277-23, 277-24	자율적 공동개발	-

가구번호	면적(m²)	필지 (성수동2가)	계획내용	비고
24	10,156.0	277-25, 277-26, 277-27, 277-95, 277-122, 277-123, 277-125, 277-160	자율적 공동개발	-
25	10,068.1	277-3, 277-28, 277-29, 277-30, 277-101, 277-174	자율적 공동개발	-
26	11,054.9	277-32	-	성수 초교
27	9,157.9	277-50, 277-52, 277-53, 277-74, 277-102, 277-135, 277-162	자율적 공동개발	-
28	10,171.8	277-47, 277-48, 277-49, 277-99, 277-129, 277-131, 277-161, 277-168, 277-169, 277-170	자율적 공동개발	-
29	10,043.0	277-40, 277-41, 277-42, 277-43, 277-44, 277-45, 277-46, 277-145, 277-146	자율적 공동개발	-
30	10,711.6	277-33, 277-34, 277-35, 277-36, 277-37, 277-38, 277-97, 277-103, 277-105, 277-108, 277-109, 277-112, 277-114, 277-128, 277-140, 277-151, 277-152	자율적 공동개발	_
31	7,785.8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9, 19-10, 19-11, 19-16, 19-18, 19-20, 19-21, 19-22, 19-23, 19-25, 19-26, 19-27, 19-28, 19-29, 19-31, 19-34	자율적 공동개발	_
32	2,291.2	277-54, 277-81, 277-117	자율적 공동개발	-
33	5,141.1	277-55, 277-56, 277-141, 277-153	자율적 공동개발	-
34	5,738.2	277-57, 277-58, 277-59, 277-156	자율적 공동개발	-
35	5,753.0	277-60, 277-61, 277-62, 277-64, 277-65, 277-66, 277-121, 277-137, 277-138, 277-157	자율적 공동개발	-
36	5,939.0	277-67, 277-68, 277-69, 277-70, 277-124, 277-147, 277-148, 277-149, 277-155	자율적 공동개발	-
37	2,109.5	19-24	자율적 공동개발	-
38	2,054.9	317-1, 317-2, 317-3, 317-23	자율적 공동개발	-
39	4,989.4	273-17, 273-37, 273-51, 273-52, 273-55, 273-56	자율적 공동개발	-
40	5,730.6	273–14, 273–15, 273–16, 273–39	자율적 공동개발	-
41	5,740.7	273-1, 273-2, 273-6, 273-30	자율적 공동개발	-

가구번호	면적(m²)	필지 (성수동2가)	계획내용	비고
42	5,720.4	276-2, 276-3, 276-4, 276-8, 276-9	자율적 공동개발	-
43	2,119.6	19-14, 19-15	자율적 공동개발	-
44	7,610.1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7-10, 317-11, 317-12, 317-15, 317-16, 317-17, 317-18, 317-19, 317-20	자율적 공동개발	-
45	8,373.9	273-18, 273-19, 273-20, 273-24, 273-32, 273-35, 273-36, 273-60, 273-61	자율적 공동개발	-
46	10,059.2	273-13	자율적 공동개발	-
47	10,077.2	273-8, 273-9, 273-10, 273-11, 273-12, 273-28, 273-31, 273-40, 273-41, 273-53, 273-64	자율적 공동개발	-
48	9,600.1	275-26, 275-27, 275-28, 275-29, 275-30, 275-36, 275-41, 275-49, 275-68, 275-72, 275-83, 275-89, 275-98	자율적 공동개발	-
49	7,74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39, 275-40, 275-47, 275-48, 275-50, 275-51, 275-52, 275-53, 275-54, 275-55, 275-56, 275-58, 275-59, 275-64, 275-65, 275-67, 275-71, 275-93, 275-94, 275-96, 275-97	자율적 공동개발	-
50	8,090.5	273–26, 273–27, 273–34, 273–38, 273–45, 273–46, 273–47, 273–48, 273–49, 273–50, 273–67	자율적 공동개발	-
51	10,050.3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22, 271–23, 271–24, 271–26, 271–27, 271–28	자율적 공동개발	-
52	10,067.6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22, 272-23, 272-24, 272-25, 272-27, 272-31, 272-32, 272-33, 272-34, 272-35, 272-36, 272-37, 272-38, 272-39	자율적 공동개발	-
53	9,174.3	275-15, 275-16, 275-17, 275-19, 275-20, 275-21, 275-22, 275-23, 275-70, 275-74, 275-75, 275-76, 275-79, 275-80, 275-81, 275-82, 275-84, 275-88, 275-91	자율적 공동개발	-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1)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계획내용	비고
불허 용도	-	• 단독주택(기존 단독주택의 증축·개축·재축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구역 전체

※ 상기용도 외 불허용도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름

2)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계획내용	비고
권 장 용도	권장용도1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입주시설 ※ 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 설치 시 인정 • 저층부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탁구장, 체육도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당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당해 대지면적 이상 지하2층~지상4층에 설치 시 인정	성수이로변, 주요 보행가로변
	권장용도2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입주시설 ※ 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 설치 시 인정	결정도에 따름

- ※ 권장용도1 적용필지와 권장용도2 적용필지 간 공동개발 시 용도계획은 권장용도1을 적용함
 - 3)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호) 및 「성수IT 산업개발 진흥지구 진흥계획」(성동구고시 제2013-3호)으로 고시된 권장업종을 말하며, 도시관리계획 및 진흥계획의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 •기존 고시된 권장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된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구·신연계표에 따름 •권장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입주한 시설의 관리는 구청장이 고시하는 진흥계획 및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기준에 따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도면표시	건폐율	비고
-	60%이하	구역 전체



■ 용적률 결정조서

도면표시		용적률		비고
<u> </u> 도면표시	기준	허용	상한	nlπ
-	400% 이하	400% 이하	허용용적률2배 이하	구역 전체

[※] 공동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포함)의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 및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준공업지역 관리지침에서 제시한 용적률 체계를 따르되 산업부지 및 산업시설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본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함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 완화하는 용적률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의 2배 이하로 함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공공시설등 제공 시	• 허용용적률×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이내 •세부 기준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
		• 완화 범위는 허용용적률의 최대 1.2배 이내로 함 • 권장업종확보면적의 인정은 구청장이 고시하는 진흥계획 및 권장업증 •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면적 제외		
	권장업종	권장업종확보면적 건물연면적의 20%이상 30%미만	상한용적률 산정 허용용적률 × 1.05	_
	확보 시	건물연면적의 30%이상 40%미만	허용용적률 × 1.10	
		건물연면적의 40%이상 50%미만	허용용적률 × 1.15	
		건물연면적의 50% 이상	허용용적률 × 1.20	
_				
	공개공지등 설치 시	• 허용용적률× [1 + {(공개공지등 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완화 범위는 권장용도 및 공개공지계획내용 준수 시 허용용적률의 1 는 1.1배 이내로 함	.2배 이내로 하고, 공개공지계획내용만 준수하는 경우에	-

[※] 최고높이 및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최고높이	비고
최고높이1	100m 이하	아차산로 가로구역
최고높이2	70m 이하	기타 가로구역

[※] 추후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기준 등에 따라 권장업종 확보 인센티브를 공공시설등 제공 인센티브로 대체할 경우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의 용도는 구역 내 권장업종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우선 검토



■ 최고높이 완화항목

완화조건	계획내용		
공공시설등 제공 시	•최고높이×[1+(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 권장업종확보면적의 인정은 구청장이 고시하는 진흥계획 및 권장업종시설 지정·관리기준에 따름 •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면적 제외 권장업종확보면적 최고높이 완화 산정		
권장업종	건물연면적의 20%이상 30%미만	최고높이 × 1.05	_
확보 시	건물연면적의 30%이상 40%미만	최고높이 × 1.10	
	건물연면적의 40%이상 50%미만	최고높이 × 1.15	
	건물연면적의 50% 이상	최고높이 × 1.20	

라. 건축물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간선가로변	건축한계선 3m		
건축한계선	주요 보행가로변	건축한계선 2m	결정도 선형에 따름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 건축물 형태·외관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투시벽 및 투시형 셔텨	• 2m 이상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건축물 형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 함이 없도록 설치	규제
건숙물 형태	개구부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축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2m 이상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2m 이상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규제

최고높이 및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외벽면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폭 3m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권장
기호마 이기	야간경관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시하는 야간조명 등 설치 • 2m 이상 건축한계선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 설치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 설치	권장
건축물 외관	건축설비의 노출	• 2m 이상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양	권장
	탑상형 건축물	• 2m 이상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을 권장	권장
	간선가로변 건축물 전면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 지양	권장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규정 준수	규제
기타사항	지중화 관련시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물 또는 대지 안에 설치	권장
	담장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 공지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기 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준용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결정도에 따름
공개 공지	•1,000㎡ 이상 대지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조성 ① 지정된 위치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공원형 또는 광장형으로 조성 ② 지정된 위치가 없는 경우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공원형 또는 광장형으로 조성하되 보도형 전면공 지가 계획된 교차지점에 우선 조성 ③ 하나의 도로에 접하는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와 연계한 가로휴게형으로 조성 •1,000㎡ 미만 대지는 전면공지와 연계한 가로휴게형 권장	계획내용1) 준수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1) 대지여건 등에 따라 계획내용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공개공지 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환경친화적 건축물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 보존	•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_
	옥상 녹화	•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치 권장	-
	벽면 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에 의한 설치 권장	_
	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_
	중수도 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환경친화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
	신·재생 에너지 사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_
	에너지 절약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을 권장	_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	_
	친환경건축물인증	•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	_
	생태면적률	•건축물 신축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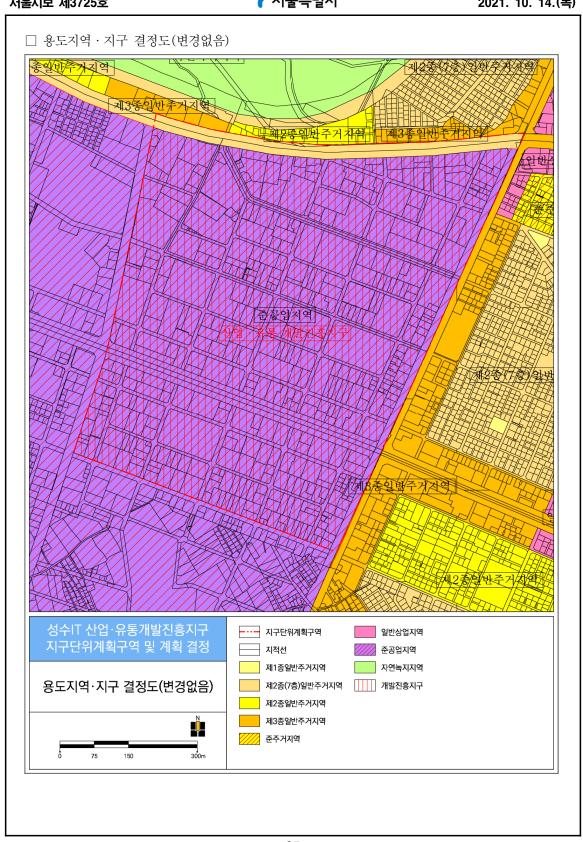
-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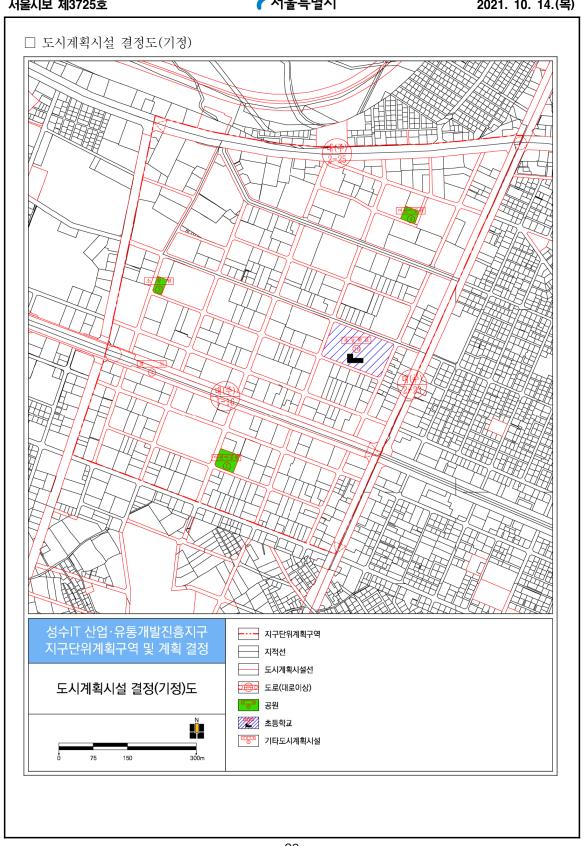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간선도로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구간 내 차량진출입을 불허함 ※ 간선도로변으로 1면만 접한 필지의 경우 차량출입 불허구간 제외	결정도에 따름
부설 주차장	•업무시설 및 공장 중 교통영향평가 수립 미대상 :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확보 •업무시설 및 공장 중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 : 법정주차대수의 150% 이상 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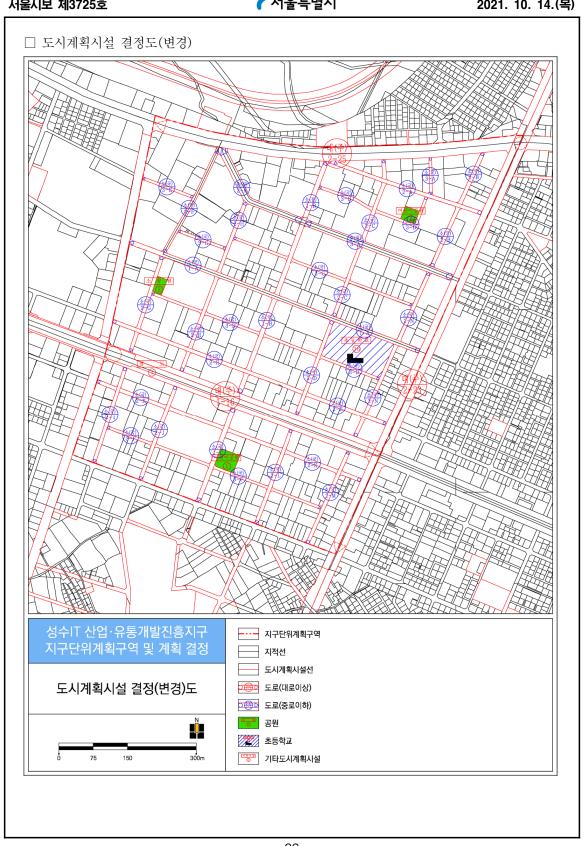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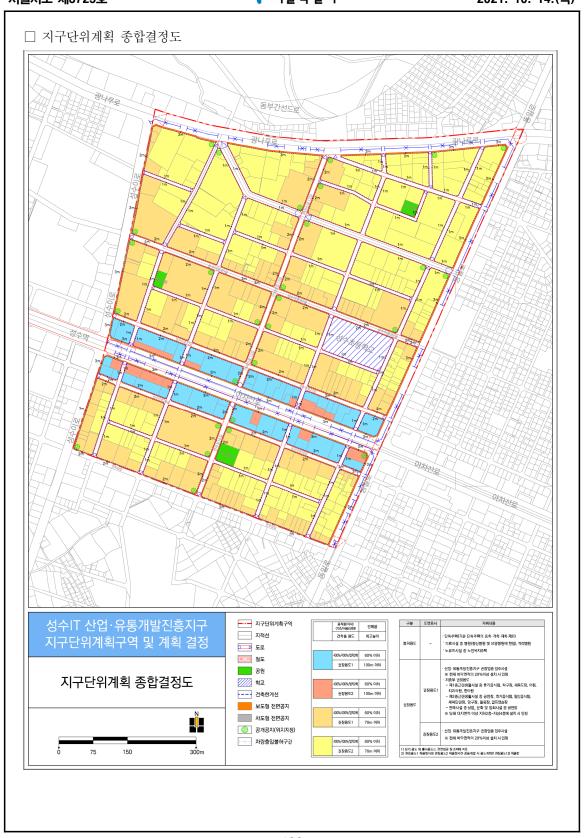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함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1. 대지의 분할·교화에 관한 사항
- 2.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신설(변경, 폐지 포함)
- 3.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신설(변경, 폐지 포함)
- 4. 공개공지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구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음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
- •경미한 사항 변경의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경미한 변경 기준'을 준용
-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2)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 (☎02-2286-5562)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0호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 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시고시 제411호(1982.10.13.)로 재개발사업시행 및 서울시공고 제662호(1985.11.08.) 재개발사업 완료공고 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m²)				
	Täö	Π 시	기 정	증 감	변 경	비고		
기정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남창동, 남대문로3가, 회현동1가, 충무로1가 일부	68,852.5	-	68,852.5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OH TL	위	치	110	주요	÷1 ÷		
구분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구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189	15 ~ 20	집산 도로	200	남창동64-1	남창동25-2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425호 (1978.12.29.)	미집행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2	189	15 ~ 20	집산 도로	200	남창동64-1	남창동25-2	일반도로	-	"	미집행구간 일부개설	

■ 변경사유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 2-189	· 면적 증가: 증) 7.6㎡ - 기정)1,697.1㎡ → 변경)1,704.7㎡	· 중구고시 제2020-81호(^20.7.2)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정비구역 내 도 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금회 7-1지구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소로1-2)를 고려하 여 효과적인 교통흐름을 위해 일부 재지정 · 남대문구역 7-1지구 사업시행자가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자 지정 받아 개설 예정



- 2. 남대문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 조서

구분	정비구역	위치		면 적 (m²)	μл	
	명 칭	T 1	기 정	증 감	변 경	日 工
변경	남대문구역 제7-1지구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1,713.9	증) 480.7	2,194.6	•정비기반시설 : 도로(480.7㎡)

- ※ 1984. 8. 11. 재개발사업 완료시 무상귀속된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외
- 변경사유 : 정비기반시설(도로) 부담에 따른 면적 증가
-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 적 (m²)		비율(%)	비고
	700	기 정	증 감	변 경	비뀰(%)	nl Tr
합 계		1,713.9	증) 480.7	2,194.6	100.0%	
획 지		1,713.9	-	1,713.9	78.1%	
정비기반시설	도 로	-	증) 480.7	480.7	21.9%	

다.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m²)	구성비	비고		
	TE	기 정	증 감	변경	(%)	비兀	
	합계	2,194.6	-	2,194.6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94.6	_	2,194.6	100.0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1) 방화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	방화지구	중구 남창동 283 외	900,266 (2,194.6)	건고시 제727호 ('63.12.13.)	-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1) 교통시설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위	치					
구분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르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4	35 ~ 37	간선 도로	3,500	서울역광장	신당동광장	일반도로	-	총고 제722호 (1936.12.26)	-	
기정	중로	2	189	15 ~ 20	집산 도로	200 (-)	남창동64-1	남창동25-2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425호 (1978.12.29.)		
변경	중로	2	189	15 ~ 20	집산 도로	200 (27)	남창동64-1	남창동25-2	일반도로	-	"	면적 증가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41 (-)	남창동9-1	회현동1가 194-1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425호 (1978.12.29.)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41 (41)	남창동9-1	회현동1가 194-1	일반도로	-	"	면적 증가	

※()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

■ 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89	중로 2-189	· 면적 증가: 증 118.6㎡ - 기정)1,704.7㎡주1) → 변 경)1,815.7㎡	· 중구고시 제2020-81호(`20.7.2)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정비구역 내 도
소로 1-2	소로 1-2	· 면적 증가: 증 362.1㎡ - 기정)78.3㎡ → 변경)440.4㎡	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금회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부분 재지정

- 주1) 중로 2-189호선의 기정 면적 1,704.7㎡는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도로 결정(변경) 사항의 2-189호선 증가 면적 7.6㎡를 포함한 면적임
- (2) 철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 1)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계획(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시행면적 (m²)	대지면적 (m²)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m²)	기존국공유지 (무상양도)(m²)	부담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2,194.6	1,713.9	480.7 m²	-	○평균부담률: 15.57% ○부담률산식 = 480.7/2,194.6 = 21.9%

2)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JAB	위치		시설의	정비	기반시설 부담면적	(m²)	ul =
구역명			시설의 종류	기정	변경	변경 후	비고
		9-45	도로	-	증) 457.2	457.2	중로 2-189, 소로1-2
남대문구역	11414	44-11	도로	-	증) 7.9	7.9	중로 2-189
제7-1지구	남창동	44-24	도로	-	증) 4.0	4.0	중로 2-189
		44-25	도로	-	증) 11.6	11.6	중로 2-189
	합	, 계			증) 480.7	480.7	-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그ㅂ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m²)	칭	면적(m²)	Π Λ	⊤ ō≖	(%)	(%)	± ♥[(III)	미보	
	기정	남대문구역 제7-1지구	1,713.9	획지	1,713.9	남창동 9-1번지	업무, 판매	40	670	-	
	변경		2,194.6	획지	1,713.9	남창동 9-1번지	주거	60이하	996 이하	70 이하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전용면적 시작에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건립 규모 및 비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1					
	구 분	전용면적(m²)	세대수	비율(%)	
Г	일반분양	29㎡ 이상 ~ 50㎡ 이하	244	82.4	
	공공주택	30m² 0 ē∤	52	17.6	
	공공임대주택	30m² 0 ē∤	15	5.1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30m² 0 ō∤	37	12.5	
		한 계	296	100.0	

· 용적률 : 996.17% → 996%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기준용적률 : 130%

심의완화 사항

목 적	인센티브 대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색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		100%
친환경 개발 (의무)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주거 190Wh/㎡·y이하, 비주거 240Wh/㎡·y이하	정량부여	
, ,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주거 7%이상, 비주거 11%이상		
도시경제 활성화	건축연면적의 30%이상을 전용 40㎡이하 주거도입 시	주거복합비율 56.36% 적용 (50%이상~60%미만:30%완화)	주거복합 비율에 비례 최대50%	30%

③ 상한용적률 : 266.17%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산정방식	완화량
공공시설(도로)	허용용적률×1.3×a	730%×1.3×0.2805	266.17%
기부채납	(a=부담면적÷대지면적)	(a=480.7÷1,713.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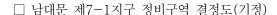
- · 건축한계선 지정 : 퇴계로변 3m
- ·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 퇴계로변 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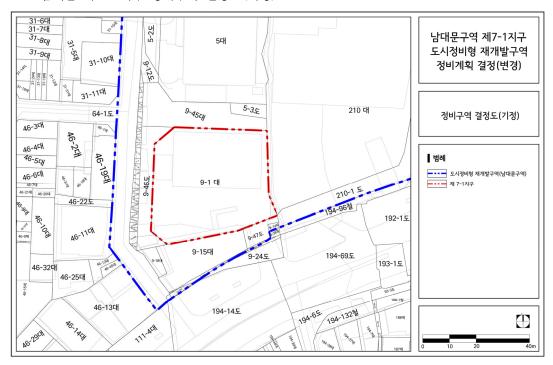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사항(202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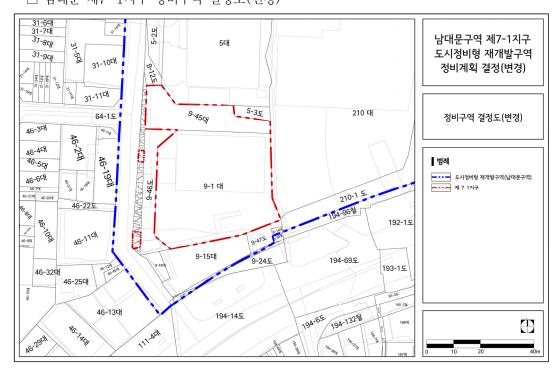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조건사항
- 1) 교통처리계획 관련
 - 가)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북측 도로변으로 통합계획한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하되,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 진입동선계획 관련 동측도로(남대문시장10길) U턴차로 신설계획 및 신호운영체계등은 대상지 일대 통행량 및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 나) 퇴계로변 차량진출입구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회 북측도로(소로 1-2, 소로 1-a)의 통행체계를 변경(일방 → 양방)하는 바, 대상지 동측 AK타워의 퇴계로에서의 현황 출입통로는 폐지하고, 리모델링 등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것
- 2) 향후 건축심의 시 층별 평면계획 관련 통풍, 채광, 비상 시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통로계획 등 적정성을 검토할 것
-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가. 남대문구역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등
 -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 4. 열람장소
 - 가.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 과(☎02-2133-4633) 및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보 제3725호 2021. 10. 14.(목) ■붙임 □ 남대문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31-6대 31-7대 ³⁷-8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5대 31-9cH 재개발구역 54 31-10^{CH} 9-125 정비계획 결정(변경) 31-11^{EH} 9-45cm (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5-3<u>E</u> 64-1도 소 로 1-a 210 대 (기정) 46-3^{CH} 46-2cH 46-4^{CH} 46-19th 46-5cH 철 도 CEST STANDARD 46-6EH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남대문구역) 9-1 대 지적선 46-7대 46-21대 46-20대 도시계획시설(도로) RESERVE ASTOCK 46-22도 96철 📉 192-1도 46-17EH 9-47E 9-15대 9-24도 194-69도 193-1도 46-32H 46-25대 46-13대 194-6年 194-132種 46-2911 □ 남대문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31-6대 31-7대 ^{31-8대} 5-2E 남대문 도시정비형 31-54 5대 재개발구역 31-9сн 31-10^{EH} 9-125 정비계획 결정(변경) 31-11^{CH} 9-45(3) 5-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64-1도 소 로 210 대 (변경) 46-3EH 46-2cH 46-4EH 46-19CH 46-5CH 범례 철 도 39t-6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남대문구역) 46-6EH 9-1 대 지적선 P10+1 5 도시계획시설(도로) 46-21대 46-20대 46-225 8 46-17EH 9-15대 194-695 9-24도 193-1도 46-32FH 46-25대 46-13대 194-14도 194-65 194-132월 45-2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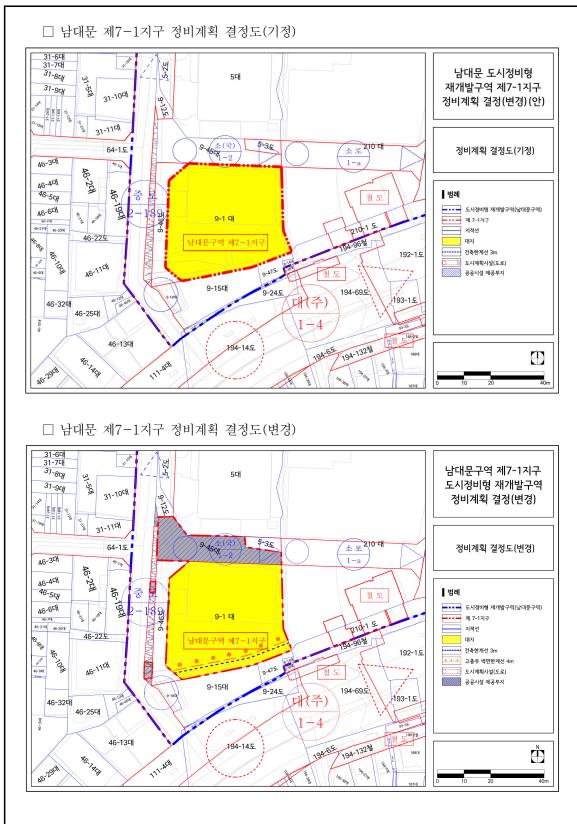




□ 남대문 제7-1지구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 남대문 제7-1지구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31-6대 31-7대 ³¹-8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31-54 5대 31-9сн 재개발구역 제7-1지구 31-10^{CH} 정비계획 결정(변경) 31-11^{EH} 9-45年(司)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64-1도 소로 210 대 (기정) 46-3EH 46-4CH 46-5CH 8 범례 철 도 19ch 46-6CH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남대문구역) 제 7-1지구 2101E 지적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46-225 도시계획시설(도로) AS-TOCH 192-1도 46-17EH 9-475 9-15대 194-695 193-1도 46-32 46-25대 46-13대 194-14도 194-65 194-1323 \oplus 17-AEH 46-2941 □ 남대문 제7-1지구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31-6대 31-7대 ^{31-8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31-9сн 재개발구역 제7-1지구 31-10^{CH} 정비계획 결정(변경) 31-11^{EH}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5-3.E 9-45年(국) 64-15 210 대 (변경) 46-3^{CH} 46-2cH 46-4^{CH} 46-3 범례 46-5CH 철 도 194 46-6EH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남대문구역) 9-1 대 --- 제 7-1지구 지적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46-225 도시계획시설(도로) RE-TOCH 192-1도 46-174 9-475 9-15대 194-695 193-1도 46-32H 46-25대 46-13대 194-6年 194-132種 Ď 46-294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552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한 과학관을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기 존	변 경
1. 명 칭 : 에너지정보관	1. 명 칭 : 에너지정보관
2. 등록번호 : 제 서-3호	2. 등록번호 : 제 서-3호
3.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3.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4. 설 립 자 : (재)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4. 설 립 자 : (재)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5. 대 표 자 : 윤기돈	5. 대 표 자 : 최성광
6. 과학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6. 과학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7. 대표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8길 36, 301호	7. 대표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89, 1010호

2021. 10. 14.(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564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미배달 (폐문부재)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폐문부재) 공시송달

2. 근 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지방세기본 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부과금액	우편반	송
00	1 -	HEMO	1407	일자	사유
김*태	서울 양천구 월정로11길 9	2020.8.18. 에이스타워마곡 (강서구 공항대로 237)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0,000원	`21.9.10.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1.10.14.~2021.11.03. (20일간)
-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1.10.14.~2021.11.03.
 - 나.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제 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우편 또는 팩스 02-213-1022)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	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치	법」 제27조저	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힙		01
		의견제출인		년 월 (서명 또는	일 이)
		귀하		(/10 ±	L:/
		유 의 사 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573호

관악산근린공원(28지구)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28호(2020.6.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최종 고시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 원 명 : 관악산근린공원(28지구)

나. 위 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72 일대

다. 면 적: 관악산근린공원-28지구 (435,578m²)

라. 공원조성계획 주요변경 내용 : 교양시설 변경(영어문화체험관 폐지, 평생학습센터 신설)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5층 평생교육과(☎ 02-2133-3992)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관악산 근린공원 총괄표

				변 경	전						변 :	경 후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둘	1	공작물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둘	5	7.7.17(-1)	비고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7)		(W _s)	(W _s)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공작물(기)	
	계	1,765,534.70	477,162.23	63	30,844.92	86,638.73	784		1,765,534.70	477,162.23	63	31,702.52	86,181.77	784	
	소계	1,765,534.70	477,162.23	63	30,844.92	86,638.73	784		1,765,534.70	477,162.23	63	31,702.52	86,181.77	784	
	1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1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2지구	103,306.80	43,217.89	5	4,339.36	12,862.80	141	2지구	103,306.80	43,217.89	5	4,339.36	12,862.80	141	
	3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3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시설 지구	4지구	6,213.50	1,160.87	-	-	-	11	4지구	6,213.50	1,160.87	_	-	_	11	
	5지구	2,115.00	246.25	_	_	_	13	5지구	2,115.00	246.25	_	-	_	13	
	6지구	37,874.90	9,235.41	-	-	-	49	6지구	37,874.90	9,235.41	-	-	-	49	
	7지구	47,205.30	9,100.28	-	-	-	33	7지구	47,205.30	9,100.28	-	-	-	33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1	공작물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등	5		비.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기)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공작물(기)	
8지구	1,145.00	33.36	_	-	_	-	8지구	1,145.00	33.36	-	_	-	-	
9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9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10 지구	23,409.00	-	-	-	-	-	10 지구	23,409.00	-	-	-	-	-	
11 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11 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12 지구	57,402.50	4,329.67	-	-	_	4	12 지구	57,402.50	4,329.67	-	_	-	4	
13 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13 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14 지구	22,425.20	3,332.91	-	ı	_	16	14 지구	22,425.20	3,332.91	-	_	-	16	
15 지구	7,634.30	295.05	_	ı	_	8	15 지구	7,634.30	295.05	-	_	-	8	
16 지구	10,586.00	-	_	-	_	-	16 지구	10,586.00	-	-	-	-	-	
17 지구	21,039.90	4,393.46	1	27.80	27.80	38	17 지구	21,039.90	4,393.46	1	27.80	27.80	38	
18 지구	409.70	409.70	-	-	-	-	18 지구	409.70	409.70	-	-	-	-	
19 지구	25,838.20	534.71	_	-	_	22	19 지구	25,838.20	534.71	-	_	-	22	

				변 경	전						변	경 후			
구 .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	- 공작물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등	5		 비고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기)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공작물(기)	
	20 지구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20 지구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21 지구	62,302.30	9,833.53	5	211.54	267.88	8	21 지구	62,302.30	9,833.53	5	211.54	267.88	8	
	22 지구	9,401.20	_	_	_	_	_	22 지구	9,401.20	_	_	_	-	-	
	24 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24 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23 지구	31,712.30	11,581.88	-	_	_	5	23 지구	31,712.30	11,581.88	-	_	-	5	
	25 지구	10,119.10	780.23	-	_	_	-	25 지구	10,119.10	780.23	-	-	-	-	
	26 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26 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27 지구	86,287.30	17,769.20	3	1,373.00	2,363.00	34	27 지구	86,287.30	17,769.20	3	1,373.00	2,363.00	34	
	28 지구	487,033.30	187,459.54	26	17,658.20	50,392.20	70	28 지구	487,033.30	187,459.54	26	18,515.80	49,935.24	70	
	29 지구	5,030.00	1,541.91	-	-	_	32	29 지구	5,030.00	1,541.91	-	-	-	32	
	30 지구	14,446.20	-	_	-	-	-	30 지구	14,446.20	-	-	_	-	-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1	- 공작물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달	2		비고
31 지구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기)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공작물(기)	
	24,754.00	2,613.32	1	-	_	-	31 지구	24,754.00	2,613.32	-	-	-	-	
시설지구 외		-	-	-	-	-			-	-	-	-	-	
시설율 (법정40%)	설을 477.169.99 / 1.765.694.70 v 100 - 97.099					•			477,162.23 / 1	,765,534.70	0 x 100 = 27.03	3%		
건폐율 (법정15%)		30,844.92 / 1	,765,534	.70 x 100 = 1.	75%				31,702.52 / 1	,765,534.70	0 x 100 = 1.809	6		증)0.05%

나. 시설별 총괄표

					변 경 전					변 경 후			
	구 1	. I	비서머저		건 축 물			니서머저		건 축 물			비고
	Т 2	_	시설면적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공작물(기)	시설면적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	공작물(기)	비포
	계		477,162.23	63	30,844.92	86,638.73	784	477,162.23	63	31,702.52	86,181.77	784	
		소계	126,397.26	_	_	-	_	126,397.26	_	-	_	-	
기년 시설	반 설	도로	100,873.43	-	-	-	-	100,873.43	-	-	-	-	
		광장	25,523.83	_	-	-	-	25,523.83	_	-	_	-	
-	조경시	설	28,520.75	_	-	-	13	28,520.75	_	-	_	13	
i	휴양시	설	43,941.73	1	125.00	125.00	459	43,941.73	1	125.00	125.00	459	
1	유희시	설	14,830.80	_	-	ı	40	14,830.80	-	-	_	40	
Ģ.	운동시	설	75,635.78	13	8,971.43	21,926.87	218	75,635.78	13	8,971.43	21,926.87	218	
j	교양시	설	164,961.49	24	18,727.20	59,949.95	10	164,961.49	24	19,584.80	59,492.99	10	
Į	편익시	설	19,260.36	15	2,199.91	3,671.53	3	19,260.36	15	2,199.91	3,671.53	3	
į	관리시	설	2,714.06	11	821.38	965.38	41	2,714.06	11	821.38	965.38	41	
	L밖의시	실	900.00	-	-	-	-	900.00	_	-	_	-	
녹	지및기	 타	-	-	-	-	_	-	-	-	-	-	

관악산 근린공원(28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위치 : 관악구 봉천동 228번지 일원)

			변	경		전			변	7.		- Τ		
구	분				건 축 물						건 축 물			비고
	ᆫ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공작물 (기)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공작물 (기)	H T
계		487,033.30	187,459.54	26	17,658.20	50,392.20	70	487,033.30	187,459.54	26	18,515.8	49,935.24	70	
	소계	50,850.06	33,087.90	-	-	-	-	50,850.06	33,087.90	-	-	-	-	
기반시설	도로	40,509.88	22,747.72	-	-	-	-	40,509.88	22,747.72	-	-	-	-	
	광장	10,340.18	10,340.18	-	-	-	-	10,340.18	10,340.18	-	-	-	-	
조경시설	10.7	1,434.42	1,434.42	-	-	-	1	1,434.42	1,434.42	-	-	-	1	
휴양시설	10.7	538.62	538.62	-	-	-	59	538.62	538.62	-	-	-	59	
유희시설		380.66	380.66	-	-	-	1	380.66	380.66	-	-	-	1	
운동시설		32,154.52	32,154.52	3	2,578.00	7,945.00	6	32,154.52	32,154.52	3	2,578.00	7,945.00	6	
교양시설	Ŧ.	110,964.00	110,964.00	18	14,338.90	41,561.90	-	110,964.00	110,964.00	18	15,196.5	41,104.94	-	
편익시설	TII.	7,995.42	7,995.42	3	497.00	497.00	2	7,995.42	7,995.42	3	497.00	497.00	2	
관리시설		904.00	904.00	2	244.30	388.30	1	904.00	904.00	2	244.30	388.30	1	
녹지 및 기	타	281,811.60	-	-	-	-	-	281,811.60	-	-	-	-	-	
시 설 원 (법정 40	≘ %)		(187,459.5	4/487,033.	.30) ×100=38.	49%			(187,459.	54/487,03	3.30) × 100=38	3.49%		
건 폐 원 (법정 10	≘ %)		(17,658.20	0/487,033.	30) × 100=3.6	3%			(18,515.	30/487,03	3.30) × 100=3.	80%		증)0.17%

2. 시설조서(관악산 근린공원 28지구)

				변		경		전					변		경		Ē			
Ī	l 분	H÷.	01-1	부지면적	니시머저 (·)	7.	7.0	건축됨	물(m²)	공작물	не	01-1	부지면적		٦⋆	7.0	건축됨	물(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기)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합계			487,033.30	187,459.54	ı	26	17,658.20	50,392.20	70			487,033.30	187,459.54	-	26	18,515.8	49,935.24	70	
	소계			50,850.06	33,087.90	-	-	-	-	-			50,850.06	33,087.90	-	_	-	-	1	
	도로			40,509.88	22,747.72	-	-	-	-	-			40,509.88	22,747.72	-	-	-	-	-	
		가		10,340.18	10,340.18	-	-	-	-	-	가		10,340.18	10,340.18	-	-	-	-	-	
	7	가-1	봉천동 262-5	1,258.23	1,258.23	-	-	-	-	-	가-1	봉천동 262-5	1,258.23	1,258.23	-	-	-	-	-	
기 반 시 설		가-2	봉천동 738- 329	4,609.33	4,609.33	-	-	-	-	-	가-2	봉천동 738- 329	4,609.33	4,609.33	-	-	-	-	-	
		가-3	봉천동 227	2,055.00	2,055.00	-	-	-	-	-	가-3	봉천동 227	2,055.00	2,055.00	-	-	-	-	-	
		가-4	봉천동 289	301.06	301.06	-	-	-	-	-	가-4	봉천동 289	301.06	301.06	-	-	-	-	-	
		가-5	봉천동 289	80.82	80.82	-	-	-	-	-	가-5	봉천동 289	80.82	80.82	-	-	-	-	-	
		가-6	봉천동 285	1,606.29	1,606.29	-	-	-	-	-	가-6	봉천동 285	1,606.29	1,606.29	-	-	-	-	-	
		가-7	봉천동 281	429.45	429.45	-	-	-	-	-	가-7	봉천동 281	429.45	429.45	-	-	-	-	-	

				변		경		전					변		경		후			ī
구	분		01-1	부지면적	UUDIT (.)	7.	7.5	건축	물(m²)	공작물	н.	01-1	부지면적	UUNT (.)	7.	7.5	건축됨	물(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1)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소 계			1,434.42	1,434.42	-	-	-	-	1			1,434.42	1,434.42	-	-	-	_	1	
조 경 시	연못	나	봉천동 738- 329	639.56	639.56	_	-	-	_	_	나	봉천동 738- 329	639.56	639.56	-	-	-	-	1	
시설	잔디 마당	다	봉천동 285	503.86	503.86	-	-	-	-	_	다	봉천동 285	503.86	503.86	-	-	-	-	_	
	조각	1	봉천동 266	291.00	291.00	-	-	-	_	1	1	봉천동 266	291.00	291.00	-	-	-	_	1	I
	소 계			538.62	538.62	-	-	-	-	59			538.62	538.62	-	-	-	-	59	
	경로당	라	봉천동 281	485.70	485.70	-	-	-	-	-	라	봉천동 281	485.70	485.70	-	-	-	-	-	
		마		52.92	52.92	-	-	-	-	-	마		52.92	52.92	-	-	-	-	_	
휴 양 시	휴게소	마-2	봉천동 274-2	35.28	35.28	-	-	-	-	-	마-2	봉천동 274-2	35.28	35.28	-	-	-		-	
시 설		마-1	봉천동 291-2	17.64	17.64	-	-	-	-	-	마-1	봉천동 291-2	17.64	17.64	-	-	-	-	-	
	파고라	2	전지역	-	-	-	-	-	-	12	2	전지역	-	-	-	-	-	-	12	
	앉음벽	3	봉천동 289	7.50	7.50	-	-	-	-	11	3	봉천동 289	7.50	7.50	-	-	-		11	
	평의자	4	전지역	-	-	-	-	-	-	36	4	전지역	_	-	-	-	-	-	36	
아히	소 계			380.66	380.66	-	-	-	-	1			380.66	380.66	-	-	-	-	1	
시설	어린이놀 이터	바	봉천동 289	380.66	380.66	-	-	-	-	-	바	봉천동 289	380.66	380.66	-	-	-	-	-	

				변		경		전					변		경		亨			
구	분	н.	01-1	부지면적	UUNT (.)	7.	7.5	건축	물(m²)	공작물	H-	01-1	부지면적	JUNE ()	7.7	7.5	건축됨	물(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조합 놀이대	(5)	어린이 놀이터	-	_	-	-	-	_	1	5	어린이 놀이터	-	-	-	-	_	-	1	
	소 계			32,154.52	32,154.52	-	3	2,578.00	7,945.00	6			32,154.52	32,154.52	-	3	2,578.00	7,945.00	6	
		사		415.70	415.70	-	-	-	-	-	사		415.70	415.70	-	-	-	-	-	
	체력 단련장	사-1	봉천동 281	342.36	342.36	_	-	-	-	-	사-1	봉천동 281	342.36	342.36	-	_	-	-	_	
		사-2	봉천동 291-2	73.34	73.34	-	-	-	-	-	사-2	봉천동 291-2	73.34	73.34	-	-	-	-	-	
		아		4,383.00	4,383.00	-	-	-	-	-	아		4,383.00	4,383.00	-	-	-	-	-	
> 아미 내이 그	정구장	아-1	봉천동 산56- 117	3,338.00	3,338.00	-	-	-	-	-	아-1	봉천동 산56- 117	3,338.00	3,338.00	-	-	-	-	-	
시 설		아-2	봉천동 281	1,045.00	1,045.00	-	-	-	-	-	아-2	봉천동 281	1,045.00	1,045.00	-	-	-	-	-	
	배드민턴 장	자	봉천동 산51-1	1,940.67	1,940.67	-	-	-	-	-	자	봉천동 산51-1	1,940.67	1,940.67	-	-	-	-	_	
	대 운동장	차	봉천동 산53-3	11,670.00	11,670.00	조적	1동	100.00	100.00	-	차	봉천동 산53-3	11,670.00	11,670.00	조적	1동	100.00	100.00	-	
	다목적구 장	카	봉천동 289	365.42	365.42	_	-	-	-	-	카	봉천동 289	365.42	365.42	-	-	-	-	-	
	x-게임장	타	봉천동 274-2	529.99	529.99	-	-	-	-	-	타	봉천동 274-2	529.99	529.99	-	-	-	-	-	
	골프 연습장	1	봉천동 281	4,210.00	4,210.00	RC	1	460.00	848.00	-	1	봉천동 281	4,210.00	4,210.00	RC	1	460.00	848.00	-	
	스포츠센 타	2	봉천동 225	8,639.74	8,639.74	RC	1	2,018.00	6,997.00	-	2	봉천동 225	8,639.74	8,639.74	RC	1	2,018.00	6,997.00	-	

				변		경		전					변		경		Ē			
구	분	н.	01-1	부지면적	UUNT (.)	7.	7.5	건축	물(m²)	공작물	н.	01-1	부지면적	UNDER ()	- H	7.0	건축	量(m²)	공작물	비 <u>.</u>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체력단련 시설	6	체력 단련장	-	-	-	-	-	-	5	6	체력 단련장	-	-	-	1	-	-	5	
	막구조물	Û	스포츠센 터	-	-	PVC	-	-	-	1	(7)	스포츠센 터	-	_	PVC	-	-	_	1	
	소 계			110,964.00	110,964.00	-	18동	14,338.90	41,561.90	-			110,964.00	110,964.00	-	18동	15,196.5	41,104.94	-	
	낙성대	파	봉천동 228	18,270.00	18,270.00	RC	4동	590.00	590.00	-	파	봉천동 228	18,270.00	18,270.00	RC	4동	590.00	590.00	-	
	전통 야외 소극장	하	봉천동 산25	1,225.00	1,225.00	기와	1동	105.00	105.00	_	하	봉천동 산25	1,225.00	1,225.00	기와	1동	105.00	105.00	-	
	초화원	거	봉천동 292-1	138.00	138.00	-	ı	-	-	-	거	봉천동 292-1	138.00	138.00	-	-	-	-	-	
		너		20,000.00	20,000.00	-	-	_	_	-	너		20,000.00	20,000.00	-	-	_	_	_	
교양	유아숲체 험원	너-1	봉천동 산25	10,000.00	10,000.00	_	1	-	-	-	너-1	봉천동 산25	10,000.00	10,000.00	-	1	-	-	1	
시 설	u c	너-2	봉천동 산29-4	10,000.00	10,000.00	_	-	_	_	_	너-2	봉천동 산29-4	10,000.00	10,000.00	_	-	_	_	_	
	도서관	3	봉천동 산56-3	2,606.00	2,606.00	콘크리트	2	964.00	3,284.20	-	3	봉천동 산56-3	2,606.00	2,606.00	콘크리트	2	964.00	3,284.20	-	
	과학 전시관	4	봉천동 산35-5	57,532.00	57,532.00	RC	4	10,192.00	28,166.00	-	4	봉천동 산35-5	57,532.00	57,532.00	RC	4	10,192.00	28,166.00	-	
	유물 전시관	5	봉천동 281	1,124.00	1,124.00	콘크리트	1	198.00	519.00	-	5	봉천동 281	1,124.00	1,124.00	콘크리트	1	198.00	519.00	-	
	청소년회 관	6	봉천동 산53-1	503.00	503.00	콘크리트	1	165.00	364.00	-	6	봉천동 산53-1	503.00	503.00	콘크리트	1	165.00	364.00	_	

				변		경		전					변		경		₹			
구	분	I -	01-1	부지면적	(,) HHU	7+	1	건축	물(m²)	공작물	н÷	5-1	부지면적	(, LINE	7+	7.0	건축	물(m²)	공작물	비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영어문화 체험관	7	봉천동 272	7,606.00	7,606.00	RC	2	1,459.00	7,497.00	_										耳
	평생학습 센터										7	봉천동 272	7,606.00	7,606.00	RC	2	2,316.6	7,040.04	-	ć
	도시농업 전시관	8	봉천동 253-8	1,709.00	1,709.00	철골	1	540.00	910.80	_	8	봉천동 253-8	1,709.00	1,709.00	철골	1	540.00	910.80	-	
	강감찬전 시관	8	봉천동 228	181.00	181.00	콘크리트	1	99.40	99.40	-	8	봉천동 228	181.00	181.00	콘크리트	1	99.40	99.40	-	
	강감찬전 시관	9	봉천동 산48-4	70.00	70.00	콘크리트	1	26.50	26.50	-	9	봉천동 산48-4	70.00	70.00	콘크리트	1	26.50	26.50	-	
	소 계			7,995.42	7,995.42	-	3	497.00	497.00	2			7,995.42	7,995.42	-	3	497.00	497.00	2	
		더		7,432.82	7,432.82	-	-	_	-	-	더		7,432.82	7,432.82	-	-	_	-	_	
		더-1	봉천동 262	4,000.00	4,000.00	-	-	-	_	-	더-1	봉천동 262	4,000.00	4,000.00	-	-	_	_	-	
편	주차장	더-2	봉천동 281	1,809.00	1,809.00	-	1	-	-	-	더-2	봉천동 281	1,809.00	1,809.00	-	-	-	-	-	
익 시 설		더-3	봉천동 225	1,623.82	1,623.82	_	-	_	_	_	더-3	봉천동 225	1,623.82	1,623.82	-	-	_	_	_	
		러		12.60	12.60	-	-	-	-	2	러		12.60	12.60	-	-	-	-	2	
	음수대	러-1	봉천동 289	6.30	6.30	-	-	-	-	1	러-1	봉천동 289	6.30	6.30	-	-	-	-	1	
		러-2	봉천동 759-5	6.30	6.30	-	-	-	-	1	러-2	봉천동 759-5	6.30	6.30	-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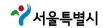
				변		경		전					변		경		₹			1
7	분	u -	01-1	부지면적		7-	7.5	건축	물(m²)	공작물	u -	01.71	부지면적		7.7	7.5	건축旨	를(m²)	공작물	비고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부호	위치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적	(7)	
	매점	9	봉천동 281	77.00	77.00	조적	1	65.00	65.00	-	9	봉천동 281	77.00	77.00	조적	1	65.00	65.00	_	
	다과점	10	봉천동 227	237.00	237.00	-	1	196.00	196.00	-	10	봉천동 227	237.00	237.00	_	1	196.00	196.00	-	
	화장실	11	봉천동 227	236.00	236.00	조적	1	236.00	236.00	_	11	봉천동 227	236.00	236.00	조적	1	236.00	236.00	_	
	소 계			904.00	904.00	-	2	244.30	388.30	1			904.00	904.00	-	2	244.30	388.30	1	
관리	관리 사무소	12	봉천동 산56- 117	760.00	760.00	RC	1	208.00	352.00	-	12	봉천동 산56- 117	760.00	760.00	RC	1	208.00	352.00	-	
시 설	사구소	10	봉천동 228	144.00	144.00	콘크 리트	1	36.30	36.30	-	10	봉천동 228	144.00	144.00	콘크 리트	1	36.30	36.30	-	
	정문	111	광장	-	-	-	-	-	-	1	(1)	광장	-	-	-	-	_	-	1	
녹 지	소 계			281,811.60	-	-	-	-	-	-			281,811.60	-	-	-	-	-	-	
시 및 기 타	녹 지			281,811.60	-	-	-	_	-	_			281,811.60	-	-	_	-	_	_	



다. 도로조서(관악산 근린공원 28지구)

구 분	드리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하비	계		4,240.84 (701.97)	22,747.72 (17,762.16)				
당초	rll =		계		(701.97)	(17,762.16)				
당초	대로 대로	3	1	(26.0)	(701.97)	(17,762.16)		도시계획도로		
당 초			л		3,095.08	20,271.33				
당초		1	1	11.0	624.32	7,739.69	진입로	공원경계	대로3-1	
당 초		1	2	11.8	40.14	478.98	진입로	대로3-1	정구장,아-1	
당 초		2	1	9.0	167.77	1,396.80	진입로	공원경계	대로3-1	
당 초	-	3	1	8.0	200.97	1,607.78	진입로	공원경계	정구장,아-2	
당 초		3	2	4.0	107.27	429.42	진입로	소로3-1	도서관,3	
당 초	소 로	3	3	4.0	478.24	1,911.13	연결로	정구장,아-2	소로3-1	
당 초		3	4	8.0	59.05	470.39	진입로	대로3-1	소로3-6	
당 초		3	5	2.4~7.0	52.60	242.27	진입로	소로3-6	청소년회관,6	
당초		3	6	4.0	33.06	132.46	연결로	소로3-4	광장,가-7	
당초		3	7	4.0	14.79	61.18	연결로	소로3-4	소로3-8	
당초		3	8	3.2	33.14	113.82	진입로	대로3-1	소로3-6	
당 초		3	9	1.5	34.78	52.17	연결로	소로3-6	유물전시관,5	

^		3723至			•		= '			2021.	10. 14.(<u>''</u>
												_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10	3.2	10.94	35.45	진입로	주차장,차-2	광장,가-7		
	당초		3	11	3.2	41.15	133.84	연결로	소로3-12	산책로1		
	당초		3	12	2.5~4.0	103.33	386.35	연결로	골프연습장,1	_		
	당초		3	13	6.0	11.78	71.30	연결로	체력단련장,사 -1	광장,가-7		
	당초		3	14	4.5~7.0	28.02	166.96	진입로	대로3-1	골프연습장,1		
	당초		3	15	2.0~2.5	61.78	174.05	진입로	대로3-1	광장,가-6		
	당초		3	16	2.0~5.5	90.67	317.38	진입로	소로3-15	광장,가-4		
	당초		3	17	4.0	7.83	31.66	연결로	광장,가-6	소로3-16		
	당초		3	18	4.0	7.74	30.94	연결로	소로3-20	소로3-16		
	당초		3	19	2.5	49.54	128.37	연결로	소로3-20	소로3-20		
	당초		3	20	2.0~5.0	148.30	509.58	연결로	광장,가-6	-		
	당초		3	21	2.0~8.0	108.43	592.05	연결로	광장,가-4	소로3-20		
	당초		3	22	3.5~5.8	44.58	219.20	연결로	광장,가-6	대로3-1		
	당초		3	23	2.5	139.46	348.56	산책로	광장,가-4	대로3-1		
	당초		3	24	4.0	8.20	32.81	연결로	스포츠센타,2	광장,가-3		
	당초		3	25	1.9	24.89	55.37	산책로	스포츠센타,2	대로3-1		
I												



 	10120				'- '						
구분	드리	売 増	번호	폭 원 (m)	연 장 (~)	면 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26	8.0	(m) 66.79	534.32	진입로	대로3-1	배드민턴장,자		
당초		3	27	7.5	28.68	211.33	연결로	소로3-28	_		_
당초		3	28	8.0	128.47	1,010.62	진입로	대로3-1	광장,가-2		-
당초		3	29	3.0	24.40	75.33	연결로	광장,가-2	광장,가-1		-
당초		3	30	5.0	113.97	569.77	연결로	대로3-1	광장,가-2		
변 경			<u> </u> Л		1,445.76	2,476.39					
당초			1	1.4	45.16	63.04	산책로	_	유물전시관,5		
당초			2	1.2	101.08	123.5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		-
당초			3	1.5	123.37	184.97	산책로	영어문화 체험관,7	영어문화 체험관,7	폐지	
신 설			3	1.5	123.37	184.97	산책로	평생학습센터, 7	평생학습센터, 7	신 설	
당초	· 산책로		4	2.0	3.09	6.29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3-16		
당초	1 선색포		5	2.0	9.82	19.65	산책로	소로3-20	소로3-16		
당초			6	2.0	6.51	13.03	산책로	소로3-20	소로3-16		
당초			7	4.0	30.74	122.95	산책로	소로3-27	광장,가-2		1
당초			8	4.0	21.52	86.10	산책로	소로3-27	광장,가-2		
당초			9	2.0	633.24	1,135.23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1-1		
]

구분	디비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²)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0	1.5	101.75	147.52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9	
당초			11	1.5	156.23	254.2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1-1	
당초			12	1.5	213.25	319.87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1-1	



◈ 서울특별시장고 제2021-2575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2021. 10. 14. ~ 2021. 10. 29.

2. 송달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효찬건설 (윤점례, 방주일)	건축공사업 01-1799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2길 5 ,301호	실태조사자료 미보고로 영업정지 처분 후 처분종료일까지 미보고 (등록기준 적합여부)	법 제49조 제1항	등록말소 (2021.10.31.)	법 제83조 제8호 의2
2	신원이엔지 종합건설(주) (신원식)	건축공사업 03-060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20 4층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법 제83조 제3호 의2

-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전화 02-2133-8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576호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공시송달공고(안)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과오납으로 발생한 환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사항에 해당되는 환급금자(납부자)는 공고기간 종료시까지 환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종료시까지 환부신청 또는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에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리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서울특별시 북부수 도사업소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 3.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
- 4.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 목적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북부수도사업소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급금자(납부자)의 명의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반환처리 될 수 있습니다.

- 6.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15일간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번호: 02-3146-3300팩스번호: 03030-914-0239
 - 라. 기타문의 :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과오납 담당(☎02-3146-3300)

붙임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u>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u>

연번	성명	주 소	발생일	통지일	환부금(원)
1	김정호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33길 8-6, 603호 (쌍문동, 사르망)	2016-09-30	2016-10-06	40,340
2	박현주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127, 39동 104호 (월계동, 삼호)	2015-12-31	2016-01-06	28,7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582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2. 근 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대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내역서 참조
- 4. 공고기간 : 2021. 10. 14. ~ 2021. 10. 28.(15일간)
- 5. 공고내용
 -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녹색교통과징팀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 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6. 납부안내
 - 납부기한 : 2021. 10. 31
 -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납부: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7. 공고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02-2133-1335~1336)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처분원인이 도	l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1	55*****	박영*	8675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	49*****	박준*	37모8547	경기도 안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	49*****	박준*	37모8547	경기도 안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4	16*****	엔케이알 건설산업(주)	88라3000	대전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6	서울과학고(혜화로)
5	79******	지현*	51上4120	강원도 원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23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6	76****	L *	61루9611	경상북도 봉화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2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7	72*****	심명*	7397568	전라북도 정읍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6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8	62*****	손명*	457\4363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3	흥인지문 북측(율곡로, 진입)
9	57******	박준*	80735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0	74*****	김두*	34러7148	경기도 포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08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1	89*****	이범*	08버7091	경기도 안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7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2	70*****	김은*	서울37러198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4	흥인지문(종로, 진입)
13	62****	NA*	08도48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1-21	흥인지문(종로, 진입)
14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1	삼청공원(삼청로)
15	76*****	박우*	03오79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1-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6	63*****	박종*	08저3946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9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17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9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8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0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9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0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4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1	61*****	곽영*	80루293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2	79*****	최정*	287\4452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7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23	71******	이현*	15너9939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4	71******	박정*	27저9355	경기도 안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13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5	74*****	0 수*	경기87바9379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0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6	54*****	엄지*	027\7419	경기도 양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0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7	58*****	조민*	57라4123	충청북도 진천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7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8	58*****	차창*	75억1094	경기도 부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5	백범광장(소월로3길)
29	68*****	현 *	90나5537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0	11****	주식회사 진성엠	20보33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4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31	62*****	김숙*	경기84아3905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2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2	75*****	최운*	92다1609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23	흥인지문 북측(율곡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i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33	69*****	강신*	79조6611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1-0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4	61*****	김성*	01마32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8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35	62*****	권기∗	78너6339	경상북도 영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5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36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15	경향신문사(정동길)
37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2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8	64*****	김영*	62로698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6	백범광장(소월로3길)
39	64*****	김영*	62로698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21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40	58*****	정태*	39미\3756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41	20****	(⊼ *	80무27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4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42	61*****	서옥*	74±5580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43	20****	(주)두석건설	80무27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44	20****	(주)두석건설	80무27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6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45	20****	(주)두석건설	80무27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46	74****	ZH∗	45오4357	경기도 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7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47	66*****	선동*	09덕567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6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48	73*****	강순*	80루8437	경기도 군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8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49	72******	한승*	97너356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50	13****	주식회사선우이엔지	8074573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3	흥인지문(종로, 진입)	
51	88******	황러*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52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6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53	21****	(주)리딩씨앤아이	80上3259	경기도 하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0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54	81****	CA*	657\4155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7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55	73*****	유문*	09042702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2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56	84****	PI*	91다7836	경기도 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3	흥인지문 북측(율곡로, 진입)	
57	81******	0 <u>ā</u> ∗	70다9728	경기도 동두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58	41******	강금*	9623883	경기도 광명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5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59	41******	강금*	9623883	경기도 광명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9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60	70******	이병*	8278718	경기도 하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6	백범광장(소월로3길)	
61	71******	이창*	70円9261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2	73*****	0 0 *	84더1076	경기도 부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3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63	60*****	이영*	16全9343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4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64	65*****	한창*	92고5814	경기도 가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0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65	65*****	이상*	76±5611	경기도 파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6	64*****	전상*	인천85바9638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6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67	73*****	이종*	87라1707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3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68	53*****	천병*	80너765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1	백범광장(소월로3길)	
69	53*****	천병*	80너765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70	11****	원토스 주식회사	38다2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9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71	32*****	김장*	27두69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7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72	11****	(주)원스탑투어	14러6986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1	백범광장(소월로3길)	
73	74****	ZH*	45오4357	경기도 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74	11****	(주)민투개발	84너9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4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75	21****	(주)리딩씨앤아이	80上3259	경기도 하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76	25****	(사)한국고령친화산업진흥회	31라17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4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77	63****	ZH*	8948743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4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78	63****	ZH*	89나8743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6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79	79****	KH*	32더6280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0	72****	JO*	04라6899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81	67*****	김금∗	80무4565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1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82	73******	윤채∗	80라7116	대구광역시 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83	63****	ZH*	89나8743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5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84	11****	(주)민투개발	84년9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0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85	63****	ZH*	8948743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7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86	72****	GU*	757\9955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1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87	11****	(주)빌케어코리아	80오764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88	73****	PI*	90수4108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89	73****	PI*	90수4108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3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90	73****	PI*	90수4108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91	64*****	민병*	02⊒2288	충청북도 진천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2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92	59******	권재*	43서4954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93	11****	한국사무자동화-주	01나3723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94	11****	한국사무자동화-주	01나3723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95	11****	한국사무자동화-주	01나3723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96	11****	한국사무자동화-주	01나3723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97	17****	파라오건설(주)	06도3702	경상북도 경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1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98	11****	웹앤투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59부76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4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99	87*****	전인*	75至6209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5	백범광장(소월로3길)	
100	71*****	0 ≘*	83루9614	광주광역시 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01	76*****	홍경*	77조1619	인천광역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10	백범광장(소월로3길)	
102	71****	J∣∗	54다6466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1-0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3	86*****	이강*	16마3193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9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104	86****	DA*	91라2336	경기도 이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5	70*****	박성*	90루11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06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6	70*****	박성*	90루11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07	72*****	유진*	36러76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13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8	87*****	장두∗	인천83바3555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19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9	71*****	차승*	07나5097	대구광역시 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06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10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3	삼청공원(삼청로)	
111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5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12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6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113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2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14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23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15	56*****	노연*	33고20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5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16	61******	류원*	93거4964	강원도 홍천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29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17	72*****	<u> 안</u> 희*	34미159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24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18	73*****	엄익*	05오2714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1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19	65*****	이석*	67\(\frac{1}{1956}\)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0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20	73*****	정향*	117\7264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1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121	71******	이종*	14두6271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1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122	64****	우택*	09덕3596	충청남도 서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14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23	77******	류형*	90루463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15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24	76*****	0 은*	757\9731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1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25	74*****	박동*	48時4880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26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2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27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2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28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27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129	90******	전세*	84거6027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30	55******	이환*	80버8900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2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31	73******	이종*	87라1707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1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32	73******	이종*	87라1707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2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33	73******	이종*	87라1707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5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34	73******	이종*	87라1707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8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35	73******	이종*	87라1707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7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36	75******	홍진*	22도99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37	11****	주식회사 동림아이엔비	930494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9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38	41******	강금*	9623883	경기도 광명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10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39	41******	강금*	9623883	경기도 광명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12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40	41******	강금*	9623883	경기도 광명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11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41	41******	강금*	9623883	경기도 광명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16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42	41******	강금*	9623883	경기도 광명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19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43	60******	이영*	16全9343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5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44	13****	(주)씨엔씨	76억1680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1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l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145	64*****	권경*	17머5740	부산광역시 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6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46	61****	(주) 태명이엔씨	17라8262	부산광역시 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47	74****	CU∗	43저42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148	73*****	이종*	87라1707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6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49	73*****	이종*	87라1707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9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50	62*****	김영*	8792930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51	76*****	배병*	34보4585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52	61*****	장호*	08저8896	강원도 정선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153	79******	나미*	66버3017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9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54	58*****	박환*	경기49고4539	경기도 구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55	11****	(주)원스탑투어	14러6986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3	백범광장(소월로3길)
156	11****	(주)수송사	서울31더1215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26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57	11****	(주)민투개발	84너9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1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158	11****	(주)민투개발	84너9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5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159	11****	미래탑건설(주)	90부1285	경기도 부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60	11****	미래탑건설(주)	90부1285	경기도 부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161	28****	주식회사 주씨네	56소2329	경기도 포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0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62	11****	(주)하니스	89다7051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63	11****	(주)하니스	89다7051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64	70*****	최준*	68보4677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17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65	69****	AN∗	19수3902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66	87*****	전인*	75至6209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67	64*****	최만*	757\4840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68	67*****	강헌*	97다45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3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69	13****	주식회사 부광크레인	16円8989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6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70	81******	장우*	04로8997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0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71	64*****	이순*	48도7889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0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172	78****	KH*	02소1333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173	75*****	이광*	03두9693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4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74	83*****	박소*	90루0794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75	11****	(주)에이엔아이솔루션	03 도 25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5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176	66*****	길창*	37조7429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1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177	66****	오세*	7374864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78	88******	김민*	8774086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3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79	53*****	유시*	40고78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9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180	66*****	김정*	03조7890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8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81	56*****	노연*	33고20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1	대금빌딩(장충단로8길)
182	54*****	박천*	13무5613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8	흥인지문(종로, 진입)
183	50*****	이명*	45 소 8971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3	백범광장(소월로3길)
184	90*****	유환*	02부4779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85	90*****	유환*	02부4779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2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86	56*****	신향*	907\9084	인천광역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25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87	67*****	김병*	10±5512	광주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88	11****	주식회사 원플러스라이프	02라18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6	백범광장(소월로3길)
189	88******	황려*	46至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6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90	25****	(사)한국고령친화산업진흥회	31라17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5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91	62*****	오인*	79043706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4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92	61*****	박담*	88부0833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5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i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193	63*****	조광*	20고86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5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94	72****	GU∗	75가9955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95	70****	<u>L</u> *	01주7008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9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96	28****	주식회사 해나루	95모3149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2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97	28****	주식회사 해나루	95모3149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3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98	28****	주식회사 해나루	95모3149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4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99	75******	박수*	90오1579	경기도 안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9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200	82*****	이동*	46루2513	경기도 포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4	흥인지문(종로, 진입)
201	97******	박이*	61서9522	경상북도 경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6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02	60*****	조혜*	86부4260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03	84****	RA*	39저5305	충청남도 논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7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204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25	삼청공원(삼청로)
205	59******	정병*	11로0935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5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06	90******	0 진*	서울44두3261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30	흥인지문(종로, 진입)
207	62*****	임부*	55로1206	충청남도 당진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3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08	60******	이정*	37저6259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5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209	60*****	이도*	7375678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4	백범광장(소월로3길)
210	54*****	유대*	01더4677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20	윤동주문학관(창의문로)
211	84*****	장원∗	52도7215	경기도 광명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22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12	84*****	장원∗	52도7215	경기도 광명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2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13	67*****	방승*	02더4061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4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14	51******	박승*	76上4936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1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15	72******	최윤*	51라4529	경기도 부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21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216	13****	(주)비젼에이	837\4427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5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17	13****	(주)비젼에이	84부6901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5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218	13****	(주)비젼에이	84부6901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19	13****	(주)비젼에이	837\4427	경기도 평택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6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20	11****	(주)종합채널씨비엠	05\23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0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21	11****	(주)종합채널씨비엠	05\23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7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22	11****	주식회사 화련인터내셔날	75부739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23	28****	월드종합상사 주식회사	29다5785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31	흥인지문 북측(율곡로, 진입)
224	60*****	최재⋆	60부21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2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l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225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0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26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7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27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8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28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9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29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0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30	76*****	김운*	89서35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1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31	75******	박광*	70上954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6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232	75******	박광*	70上954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7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233	13****	주식회사 유달익스프레스	83±8322	경기도 하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6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34	67******	강헌*	97다45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5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35	67******	강헌*	97다45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6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36	11****	대정건설(주)	89무6566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37	68******	이성*	84년2536	부산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8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38	56******	황정*	59러2570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10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39	60*****	박봉*	49모9607	전라남도 순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2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40	60******	박봉*	49모9607	전라남도 순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2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l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241	58******	김철*	8296552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7	삼청공원(삼청로)
242	58******	김철*	8296552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6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43	58******	소흥*	72더1133	경기도 오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1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44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0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45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0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46	76******	장성*	70저7869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03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47	76******	장성*	70저7869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04	흥인지문(종로, 진입)
248	76******	장성*	70저7869	경기도 의정부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1-24	흥인지문(종로, 진입)
249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22	한양도성탐방로 입구(통일로18나길)
250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30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51	57*******	홍정*	60억7495	경기도 파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0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52	66*****	김규*	96라1125	경상북도 안동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27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53	74******	오병*	19부90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1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54	74******	오병*	19부90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3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55	91*******	박민*	62무5408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2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256	67******	김재⋆	04968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8	와룡공원(와룡공원길)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l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257	28******	(주)엔케이로지스	92소4891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0	흥인지문(종로, 진입)
258	11****	(주)로만자	08버1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1	윤동주문학관(창의문로)
259	75*****	김재*	72고2810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21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60	13****	주식회사선우이엔지	8074573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61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62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1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63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64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3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65	88******	황려*	46조33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66	67*****	이옥*	70라1491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1-2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67	67*****	이옥*	70라1491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68	71******	박정*	90부715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69	71******	박정*	90부715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4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70	68*****	전기⋆	89나9129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3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271	28****	주식회사 해나루	95모3149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7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272	11****	미카쿨 주식회사	0278284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리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273	67*****	김몽*	7376585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8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74	11****	(주)빌케어코리아	80오764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2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275	75******	오윤*	24거5534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2-0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76	75******	오윤*	24거5534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2-02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277	66*****	0 7 *	577\5121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1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78	55******	박영*	8675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79	55******	박영*	8675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2-2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280	55******	박영*	8675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1-06	흥인지문(종로, 진입)
281	75******	김기∗	19머0590	강원도 춘천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16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82	86******	이강*	16마3193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283	86******	이강*	16마3193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8	대금빌딩(장충단로8길)
284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5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285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1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86	61******	손창*	경기85구29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20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287	49******	최도*	79누6049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21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288	63*****	박종*	08저3946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1-30	흥인지문(종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l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289	63*****	박종*	08저3946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5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290	63*****	박종*	08저3946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6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291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1-31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92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6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93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5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294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95	65*****	김원*	서울47러3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1-03-0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96	69*****	이현*	40라4737	강원도 화천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0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97	68******	김용*	서울38머6107	경기도 안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09	삼청공원(삼청로)
298	76******	허민*	89다5335	경기도 양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11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299	76******	허민*	89다5335	경기도 양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18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300	60******	송기*	08나5552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5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301	11****	주식회사 엠제이라이프	900\56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02	67******	문봉*	97다8024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1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303	61******	전철*	경기33구4502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2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304	52******	이복*	28보1501	전라북도 전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06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대상자				처분원인이 되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305	71******	박정*	27저9355	경기도 안성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1-03-03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306	69******	정현*	02부6778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50,000	2019-12-29	혜화문(창경궁로,진입)
307	73*****	김효*	90러7006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4-2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08	62*****	한호*	93두40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5-01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309	62*****	한호*	93두40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5-1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10	62*****	한호*	93두40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5-31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311	68*****	손중*	46저7798	경기도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05-27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12	83*****	김재⋆	55무85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06-24	백범광장(소월로3길)
313	79******	강양*	82수7484	경기도시흥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6-25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314	64*****	김문*	80\(\frac{1}{4925}\)	서울특별시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6-27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315	73*****	<u> </u> *	07너8796	서울특별시구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6-27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316	83*****	김재⋆	55무853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06-24	백범광장(소월로3길)
317	79******	강양*	82수7484	경기도시흥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6-25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318	64*****	김문∗	80누4925	서울특별시강동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6-27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319	73*****	<u> </u> *	07너8796	서울특별시구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6-27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도	l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320	11*****	(주)빌케어코리아	80오7643	서울특별시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6-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321	61*****	0 재*	70저268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09-2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22	74*****	김대*	02버8348	서울특별시노원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7-21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323	72*****	한경*	51조1278	경기도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07-21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324	79*****	ZHANG *	89다7327	경기도성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7-2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325	60*****	박길*	73\pmu8256	경기도 의왕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07-23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326	13****	에이스건설안전(주)	90042219	경기도오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06-13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327	65*****	김현*	52러6530	서울특별시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08-24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328	52******	최윤*	94사10295	서울특별시광진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7-3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329	52******	최윤*	94사10295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8-18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330	13****	(주)참조은컴퍼니	8995734	경기도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08-20	흥인지문(종로, 진입)
331	60*****	서순*	9243679	경기도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09-2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332	63*****	홍건*	07루4010	경기도 남양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1-0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333	53******	천병*	80년7653	서울특별시강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0-05	백범광장(소월로3길)
334	64****	JIN *	737\4808	경기도시흥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16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335	74*****	김창*	77도2135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06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대상자				처분원인이 5	되는 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주민번호	소유주	위반차량	발송지 주소	위반내역	과태료	단속일	단속장소
336	70*****	최준*	68보4677	서울특별시강북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200,000	2020-12-06	서울과학고(혜화로)
337	77******	나 정*	80거8307	경기도양평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과태료	100,000	2020-11-2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 서울특별시장고 제2021-2584호

2021년도 제13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가. 심의일시 : 2021. 10. 6. (수) ~ 10. 7. (목)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대상 : 일반안건 9건 17작품, 보고안건 1건 1작품 라. 심의결과 : 승인 7작품, 조건부승인 2작품, 부결 8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연번 비고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부결 승인 동대문구 용두동 39-1 영원한 빛 -기타 1 \bigcirc 외 25필지 솔라시도 Vertical Garden (수직의 정원) 조각 2-1 \bigcirc 광진구 자양동 2-6외 36필지 Cuboid Stroke_Elm-like 2-2 조각 \bigcirc ---(입방획 느티나무처럼)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원 The breeze 3 조각 \bigcirc (미풍) 강북구 수유동 조각 4 物外物(물외물) \bigcirc 179-1,2,3,4,5,21 The story of one's 조각 5-1 \bigcirc heart 영등포구 신길동 145-40번지 일대 조각 5-2 bliss blossom \bigcirc

2021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비고 부결 승인 \bigcirc 안전성 관련 대응방안 조각 6-1 Tree (조건부) 마련 6-2 조각 Slice-image-만남 \bigcirc space 2021-에코힐링 6-3 조각 \bigcirc 동대문구 답십리로 1길 48(620-47)일대 Resilience -서정적풍경 (미루나무) 6-4 조각 \bigcirc 6-5 조각 바람이 불어도 간다 \bigcirc SPACE-Trace 조각 6-6 \bigcirc -Position 시간의 복제 강서구 마곡 C2-3BL _ 보쉬2 7 회화 \bigcirc 업무용지 (Boshc.2)

			늘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선 심의	결과
□ 부결	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하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번	│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	^별 과	비고
	Cenn	하ㅠ 역급형		승인	부결	7, ±
8	강남구 논현동 74-7외 5필지	조각	기억의 흐름 _Hole	0		
9-1	.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조각	주가 상승, 하락의 상징 소와 곰 (Bull&Bear)	○ (조건부)		원활한 보행자 및 관람자 통행을 위해 세로로 설치할 것을 권장
9-2	0071 -1978 00	조각	증권거래소 세계화의 상징 〈다이아몬드〉 상	0		

	2021년 제13	3차 미술	울작품심의위원회	보고안건 심의	결과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이행여부 확인결과	비고
1	마포구 마포동 309-1 외 5필지	조각	세기의 선물 (2021년 제 12차 13-1번 작품)	조건부 최종승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591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실 · 본부 · 국
조례안 (17건)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자치행정과)
	2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세제과)
	4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세무과)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8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9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동 · 공정 · 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1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실·본부·국
	1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17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동의안 (20건)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3	서울특별시「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5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6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8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9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10	「(가칭)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1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1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3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실 · 본부 · 국
	14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15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6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7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18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19	제5호 성북 거점형 우 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의견	1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청취안 (7건)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4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5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6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7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구고시

◈ 종로구고시 제2021-10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144호(2019.11.22.)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46-1번지 외 1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종 로 구 청 장

1. 사 업 명 : 구기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46-1번지, 구기동 147번지

나. 대지면적 : 5,912.3m²

다.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3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52세대) 4개동,

연면적 8,421.8699m²

4. 사업시행기간 : 2020. 2. 15 ~ 2021. 10. 15.

5. 변경승인 내용 : 확정측량에 의한 대지면적 변경, 이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변경

6.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 타 : 관련도서(사업계획승인 조건 포함)는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종로구고시 제2021-1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와룡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1940. 3. 1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9호(2006. 10. 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와룡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 로구 고시 제2020-81호(2020. 6. 29.)」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하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1-931호(2021.08.2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 3. 본 내용을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 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종 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184번지 등 6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도시계획시설(와룡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다. 사업면적 : 219.2m²(당초 321.5m², 감102.3m²)
- 라. 변경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면적 변경, 보상내역(물건조 서) 추가, 준공예정일 변경 등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 사.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5.06.28.까지
- 아. 고시방법 : 종로구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 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02-2148-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와룡근린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전)

연번	ا ۱۱۱ ا	지목	지적 면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선민	소재지	시숙	면식 (m²)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미끄
계		대	691.5	321.5						
1	혜화동 15-184	대	1.2	1.2	두산 개발 주식 회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750-7				
2	혜화동 15-145	대	185.8	138.0	최영수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6길 72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3	혜화동 15-149	도로	107.8	22.8	조옥남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129				
							차서연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 101호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4	혜화동	대	135.5	81.0	윤용숙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송명순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 201호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7	15-147	41	100.0	01.0	201	67–15	장복순	서울시 종로구 명륜8길 8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윤명례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2길 31-15 201호	소유권 대지권 29.921/ 135.5	
_	혜화동	FII	140.0	74.0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5-148				
5	15-148	대	146.8	71.6	강유경 (1/2)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5-148				
6	혜화동 15-144	도로	114.4	6.9	조옥남	서울시 원서동 129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와룡근린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전)

연번	소재지	물건의	구조	면적	(m²)		소유자		이해관계인		. 비고
100	그 세시	종류	규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nl r
1	혜화동 15-145	일반건축물 (목조)	1층	89.26	107.2	최영수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72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1층	63.32	63.32	차서연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 101호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근저당권자	
	혜화동	다세대주택	2층	63.32	63.32	송명순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 201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자	
2	15-147	(철근콘크리트 조)	3층	63.32	63.32	장복순	서울시 종로구 명륜8길 8				
			4층	55.40	55.40	윤명례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2길 31-15 201호	새마을금고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4길 18-4	근저당권자	
3	혜화동	일반건축물	1층	72.73	26.3	박종락 (1/2)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7길17				
J	15-148	(목조와즙)	10	12.13	20.3	강유경 (1/2)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7길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와룡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후)

							A О ТI		이레리케이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22	그에서	~17	(m²)	(m²)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계		대	219.2	219.2							
1	혜화동 15-184	대	1.0	1.0	두산 개발 주식 회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750-7	근로복지공 단(대구지역 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5(경일종합금융빌 딩, 삼덕동2가)	압류	
2	혜화동 15-211	대	104.3	104.3	㈜무궁화신 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지적 분할 (혜화동 15-145)
3	혜화동 15-214	도로	6	6	조옥남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129				지적 분할 (혜화동 15-149)
					차서연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 101호(혜화동, 경희빌라)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근저당권자	지적 분할 (혜화동 15-147)
	혜화동				송명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 201호(혜화동, 경희빌라)	삼성생명보 험(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근저당권자	지적 분할 (혜화동 15-147)
4	15-212	대	29.7	29.7	장복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 301호(혜화동, 경희빌라)				지적 분할 (혜화동 15-147)
					윤명례	소유권 대지권 29.921/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 401호(혜화동, 경희빌라)	혜화동 새마을 금고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4길 18-4	근저당권자	지적 분할 (혜화동 15-147)
	혜화동	rll	70.0	70.0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2-5				지적 분할
5	15-213	대	70.9	70.9	강유경	1/2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2-5				(혜화동 15-148)
6	혜화동 15-210	도로	7.3	7.3	조옥남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29				지적 분할 (혜화동 15-14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와룡근린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m^{ϵ})			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언민	<u> </u>	종류	규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끄									
		일반건축물 (목조)	1층	122.2	72																
1	혜화동	담장	시멘트조 3m(h)* 13m (길이)	1		∰무궁화신 탁		서울시 강남구	○ 리오해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근저당권자	지적 분할 (혜화동)									
	15-211	대문	철제 (2m* 2.5m)	1-	식	탁	아이트 이렇게 아마! 우리은행 회현동:			203		(혜화동 15-145)									
		.	향나무	H8.0* B20	1주																
		수목	감나무	H6.0* B12	1주		소유권														
						차서연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101호													
		-i-	·1	조경석	441	송명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201호													
		화단	<u>†</u>	3.0* 5.0*2.0	1식	장복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301호													
	혜화동					윤명례	소유권 대지권 29.921/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401호													
2	15-212														차서연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101호				
			H6.0*	4.7	송명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201호														
		수목	소나무	B15	1주	장복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301호													
						윤명례	소유권 대지권 29.921/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401호													

		무거이	٦⊼	면적	(m²)		소유	구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차서연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101호			* 10							
			철쭉	H1.0*	 1군	송명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201호										
				B10		장복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301호										
						윤명례	소유권 대지권 29.921/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401호										
						차서연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101호										
			주목	H1.0*	 1주	송명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201호										
						장복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301호										
2	혜화동 15-212	수목				윤명례	소유권 대지권 29.921/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401호										
	10-212					차서연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101호										
			장미	H1.5* B10	2주	송명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201호										
				DIO	-	-1	-'				<u> </u>	장복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301호				
						윤명례	소유권 대지권 29.921/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401호										
						차서연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101호										
			모란	H1.0* B10	2주	송명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201호 서울시 조로구										
				510		장복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301호										
						윤명례	소유권 대지권 29.921/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401호										

Au.	A 711 71	물건의	구조	면적	(m^2)		소유	유자		이해관계인	1	
연번	소재지	종류	규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차서연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101호				
0	혜화동	٨٥	앵두	H1.0	3주	송명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201호				
2	15-212	수목	나무	*B10		장복순	소유권 대지권 35.193/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301호				
						윤명례	소유권 대지권 29.921/ 135.5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8-4(혜화동, 경희빌라) 401호				
			н-п	04.7	45.0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일반건축물	본채	64.7	15.8	강유경	1/2	혜화로6길 62-5				지적 분할
		(목조와즙)	DH -11	40.0	110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혜화등 15-14
			별채	18.6	14.3	강유경	1/2	혜화로6길 62-5				
		ELT.	3m(h)*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담장	28m (길이)	1.	식	강유경	1/2	혜화로6길 62-5				
			목조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11.57	(2m* 2.5m)	1.	식	강유경	1/2	혜화로6길 62-5				
3	혜화동 15-213	대문	목조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2m* 2.0m)	1.	식	강유경	1/2	혜화로6길 62-5				
			백송	H3.0*	1주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70	B10	IT	강유경	1/2	혜화로6길 62-5				
			감나무	H1.0*	 1주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수목		B10	. '	강유경	1/2	혜화로6길 62-5				
		[7	주목	H1.5*	1주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6길 62-5				
				B10		강유경	1/2	에와노0길 02 ⁻⁵				
			능소화	H1.0*	 1군	박종락	1/2	서울시 종로구				
				B10		강유경	1/2	혜화로6길 62-5				



◈ 구로구고시 제2021-219호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8-14호(2018.01.18.)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구로구 오류동 147번지 일원「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구역변경사유: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과 일부 중첩되는 구역이 있어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중첩되는 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주 민의 숙원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고자 함

> 2021년 10월 14일 구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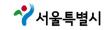
-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
 -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78	저비그여며치	OI T I	면적(㎡)			ΗП
구분	정비구역명칭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오류2동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구로구 오류2동 147번지 일대	170,126.2	감)817.0	169,309.2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m²)		비율(%)	비고
TE		99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골(%)	н\т
	합7	계	170,126.2	감)817.0	169,309.2	100.0	-
Tulalul	모	도시계획도로	18,780.2	_	18,780.2	11.1	_
정비기반 시설 등	II	현황도로	10,997.1	-	10,997.1	6.5	-
12 0		학교용지	15,229.0	-	15,229.0	9.0	-
	공동이용	용시설	304.0	-	304.0	0.2	-
	주택성	용지	124,815.9	감)817.0	123,998.9	73.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제척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TE	기정	변경	변경후	미끌(%)	미끄	
 소계	170,126.2	감)817.0	169,309.2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6,226.7	_	26,226.7	15.5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31.1	_	11,431.1	6.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2,493.4	감)817.0	101,676.4	60.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제척	
제3종일반주거지역	29,975.0	_	29,975.0	17.7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7.8		7	5	1	716	MTI ()	기고	7. TJ	비오됩테	주요	취후 개파이	ul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175	15	국지 도로	610	오류동174-2 (중로1-112)	오류동135-6 (광로1-32)	일반도로	-	서고410호 (1978.8.14.)	-
기정	소로	2		8	국지 도로	336	중로2-175	중로 1-112	일반도로	_	서고506호 (1980.10.30)	_
기정	소로	2	189	8	국지 도로	546	오류동136앞	오류동 138 서측	일반도로	_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2	190	8	국지 도로	164	오류동58-5	오류동 136-2 서측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2	191	8	국지 도로	136	오류동135	오류동 135-1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2		8	국지 도로	110	오류동 166-10	오류동 156-15	일반도로	-	서고341호 (1978.07.08)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10	오류동 146-1	오류동 147-1	일반도로	-	서고160호 (1989.3.30)	-
기정	소로	3	216	6	국지 도로	438	오류동 155-1 남측	오류동 147-16	일반도로	_	서고35호 (1969.01.18)	_
기정	소로	3	217	6	국지 도로	144	오류동 156-4 서측	오류동 156-15 앞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기정	소로	4	135	4	국지 도로	220	오류동 145-29 앞	오류동 145-16 앞	일반도로	-	서고35호 (1969.01.18)	-



나)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78	드러프기 배송	IIMI	시설의	OI ÷I	면 적 (㎡)			최초	шп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	학교	초등학교	구로구 오류동 190-2일대	15,229.0	-	15,229.0	서고제358호 (1980.10.28.)	현명칭 오류남초등학교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m²)		비고
TT	시설의 중ㅠ	귀시	기정	변경	변경후	1 111
기정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오류동 136-18,19	304	-	304	

- ※ 설치계획(규모,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	비고
기정	490	존치 (신축, 개보수 등)	주택개량 : 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

※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주용도	· 관계법령에 따름	
건폐율	· 근거조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관계법령에 따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용적률	· 근거조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관계법령에 따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높이/층수	· 관계법령에 따름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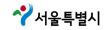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버들마을 나들길 개선(장미담장, 노후·담장개선, 담장벽화)을 통해 버들마을 가로경관 개선 · 버들마을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으로 마을의 도시경관을 지속적, 장기적으로 개선 유도	_
환경보전	· 버들마을 생활가로 개선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마을의 가로환경 보전 · 계단, 경사로 등에 친환경 염화칼슘을 보관 및 사용하여 환경보전 기여 · 건축 인허가시 제안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옥상녹화, 성절토금지 등 환경보전 유도	-
재난방지	·도로 정비시 하수관거 준설(배수시설 통합정비) ·도로안전을 위해 도로재포장 및 미끄럼 방지 포장(그루빙 설치, 스템프 공법)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공중선 정비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 분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비고
주거환경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구로구청장	해당사항 없음	-
관리사업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 소유자	୍ ଆଟମ୍ପ ୟସ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내 초등학교 1개소 및 유치원 2개소 입지 - 사업대상지의 일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9)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1.생태면적률	일반주택 20%이상 공동주택 30%이상	0	•운영시 생태면적률 기준에 따름	•건축물 신축시 관련규정에 의거 조경녹지 최대확보	-
	2.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0	•시가화지역에 해당 •특별한 동,식물상은 없음	•옥상녹화 및 텃밭 등 조성으로 녹지율 증가 유도	-
	3.지형변동	지형변동의 최소화	0	•지형변동 영향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권장	-
	4.비오톱 및 동·식물상	3등급	0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특별한 식생 분포 없음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해 대지내 조경 공간 등을 분산 배치 유도	-
	5.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0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주거지역	•건축물 신축시 관련규정 준수	-
	6.바람 및 미기후	바람 및 미기후 변화 최소화	0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주거지역으로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 미비	•개별 대지 내 장치물 최소화 유도	-
	7.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수립	0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관심 높음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연계 및 계획 유도	-
자연 환경		주요 경관자원의 보전	0	·저층주거지로 낮은 스카이라인 형성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주변과 조화로 운 건축물계획 유도	-
	8.경관	조망권 확보	0	•고층건물 미입지	•주변지역과의 연속적 경관에 위배되지 않 는 경관계획 권장	-
		개방적 가로경관 형성	0	•현재 내부도로가 협소하여 가로 녹화 는 부족한 실정	• 조경공간의 가로변조성 유도 등을 통해 가 로 녹시율 향상	-
	9.휴식 및 여가 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0	• 사업대상지내 주민을 위한 휴식 및 여 가공간 부족	•쌈지공원 등을 통한 휴식공간 조성	-
	10.보행친화 공간			• 급경사 및 협소한 폭으로 현황도로 내 불법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가중	•교통정온화, 포장·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CCTV설치, 가로등 정비 등 범죄예 방환 경설계 적용	-
	11.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0	•공사시 폐기물 발생 예상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12.소음,진동	소음환경기준이하	0	• 향후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 동에 따른 소음발생 예상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적 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후 보안등 교체계획 수립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 설치를 권장함	
영역성 강화	- 우범지역 및 저활용 공지 등에 지역주민을 위한 쌈지공간을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 - 통일성 있는 가로 시설물 디자인 계획을 통하여 마을의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 우범지대 및 통행이 적은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하여 활성화 유도 -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유지관리	- 정비되는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는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방범용 CCTV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 마을 내 주요 교차로 및 우범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 (가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CCTV 확충	
커뮤니티시설 조성	-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방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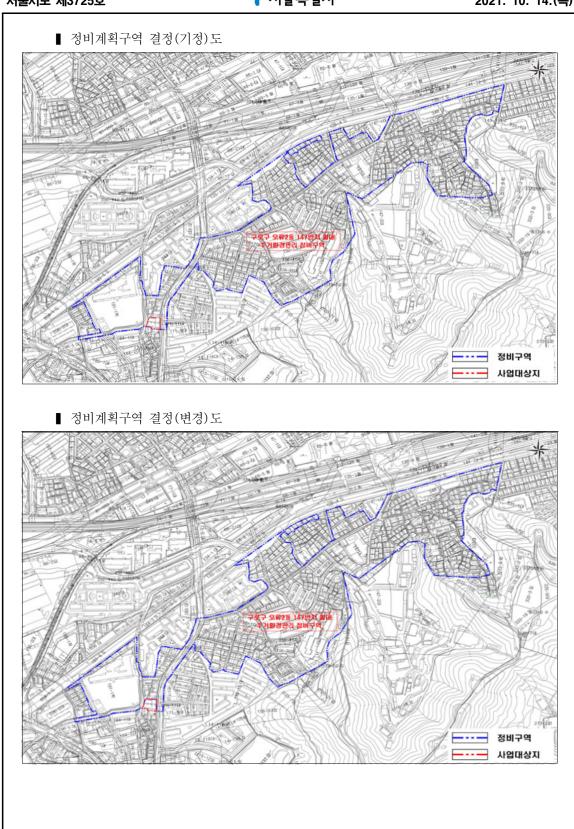
11)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부문	정비계획	개요	사업시행	비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주민역량 강화	•사례지 답사 및 교육 실시	지원조직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_
	공동체 활성화	•지속적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하여 마을 공동 체 형성	주민협의체 및 지원조직	_
	공동체 프로그램	•버들마을 비전/목표 실행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발굴	주민협의체 및 지원조직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조직구성 및 운영규약 작성	주민공동체 운영회	-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4. 문의처 : 구로구 도시재생과 (담당자 장윤승 / 02-860-3497)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 금천구고시 제2021-140호

독산동 990-12외3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슝인 처리 및 고시

금천구 독산동 990-12 외 3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 아 래 -

가. 대지위치 : 금천구 독산동 990-12 외 3필지

나. 사업주체 : ㈜융창에프엠

다.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라.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9층, 연면적 7,396.6339㎡

마. 건물용도 : 공공임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135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건 폐 율 : 36.02%, 용 적 률 : 230.62%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 신고, 급수공사신청



◈ 등작구고시 제2021-242호

서울시보 제3725호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로 결정 고시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 역 내 사당동 148-21 외 3필지에 대하여 2021년 제4차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09.15.)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동작구청장

- 1. 변경취지: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내 사당동 148-21호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주민제 안된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 2. 사당 · 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치	계획내용	비고
A44	A44	4,568	사당동 148-12, 사당동 148-18 사당동 148-20, 사당동 148-21	공동개발 지정	
			(생략)	-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치	계획내용	비고
A44 A		4.500	사당동 148-12, 사당동 148-18 사당동 148-20	공동개발 지정	
	A44	4,568	사당동 148-21	-	단독개발
			(생략)	-	

- 3. 동작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원안의결-의견제시)
 -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 공동개발 변경(4필지 지정→3필지 지정, 1필지 단독)에 대하여는 동의함 단, 건축허가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할 것.
 - 사당동 148-20번지는 별도 부지이므로, 대상지 건축계획 시 보차의 출입 등으로 이용 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
 - 직통계단 관련, 『건축법』 등 관련규정 적합여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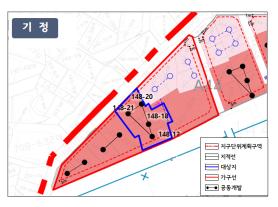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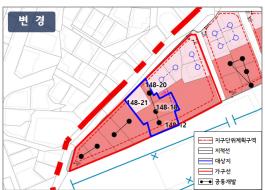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747)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 임: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구 공 고

서울시보 제3725호

◈ 종로구공고 제2021-1131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변경)되고, 종로구고시 제2017-158 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2020.6.25.)로 결정(변경)된 율곡로 지구 단위계획 내 효제동 9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신설 및 획지계획 변경 등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 니다.
-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 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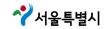
2021년 10월 14일 종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 적 (m²)		- 최초결정일	비고
	Täö	T 4	기 정	변 경	변경후		미꼬
기정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	446,340 (7,451.4)	-	446,340 (7,451.4)	1988.08.26. (서울특별시고시 제1988-596호)	

- ※ ()는 금회 사업대상지(종로구 효제동 98번지 일원) 면적임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여자	연장 기저		사용	주 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되 고 결정일	비고
기정	광로	3	66	22~ 40	주간선 도로	1,500 (43)	종로5가	혜화동 로터리	일반 도로	_	1978.5.15 (건고제145호)	-



		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초	
구분	디비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변경	광	3	66	22~ 40	주간선 도로	1,500 (43)	종로5가	혜화동 로터리	일반 도로	_	1978.5.15 (건고제145호)	일부구간 폭원확대
기정	중로	1	175	20~ 23	집산 도로	2,800 (117)	세종로동 82-14	충신동 27-64	일반 도로	_	1978.2.10 (서고제39호)	새터길
기정	소로	3	124	4~6	국지 도로	160 (5)	효제동 27-1	효제동 107	일반 도로	_	1963.7.1 (건고제432호)	-
변경 	소로	3	124	4~8	국지 도로	160 (5)	효제동 27-1	효제동 107	일반 도로	_	1963.7.1 (건고제432호)	-
기정	소로	3	-	6~8	국지 도로	60 (60)	효제동 122	효제동 117-1	일반 도로	-	2008.11.20 (서고 제2008-419호)	느릿골길
변경	소로	3	-	8~9	국지 도로	60 (60)	효제동 122	효제동 117-1	일반 도로	-	2008.11.20 (서고 제2008-419호)	-

^{※ ()}는 금회 사업대상지(종로구 효제동 98번지 일원)와 접하는 구간 연장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광로3-66	광로3-66	•일부구간 폭원 확대(B=3m) 및 도로모퉁이 조정	•일부구간 폭원 확대 및 도로모퉁이 조정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 유도
소로3-124	소로3-124 소로3-124 •일부구간 폭원 확대 (B=1~3m)		•일부구간 폭원 확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소로3-	소로3-	•폭원 확대 및 도로모퉁이 조정 - B=6~8m → 8~9m	•일부구간 폭원 확대 및 도로모퉁이 조정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 유도

나) 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원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드대 교 시	비서대	위치		최초	비고		
	시설명	게 시	기 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4	공공공지	효제동 107 일대	-	증) 351	351	-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_	4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351m²	•지역 주민의 휴게·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공공지 신설

- 공공·문화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 나) 최소개발규모(변경없음)
 - 다) 공동개발(지정/권장)(변경없음)
 - 라)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치		위치		위치		위 치 면 적 (m²)			비고
		1	88.2	효제동	90-5	2.5	공동개발 지정						
		I	00.2	효제동	89-1	85.7							
				효제동	98	5,888.8	98(대지분할가능) 공동개발 권장, 113, 115-1 공동개발 지정 98(대지분할가능), 91, 255-17 공동개발 권장, 94-2, 95-1, 95-2 공동개발 지정 98(대지분할가능) 공동개발 권장, 291-7, 85-1, 86-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13	59.9	113, 115-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15-1	34.3	98(대지분할가능) 공동개발 권장						
			2 7,112.6	효제동	94-2	16.5							
기정	C-4			효제동	95-1	69.4							
/10	0 1	2		효제동	95-2	6.6	† 94-2, 95-1, 95-2 공동개발 지정, 98(대지분할가능), 91, 255-17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55-17	19.2	30(11 12 10), 01, 200 11 00 12 20						
				효제동	91	10.5							
				효제동	291-7	3.9	201 7 05 1 06 4 고두개바 되저						
				효제동	85-1	28.6	- 291-7, 85-1, 86-4 공동개발 지정, 98(대지분할가능)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86-4	116.7	77(1 122 18) 88 112 28						
				효제동	67-2	544.4							
				효제동	84-1	252.2							
				효제동	108-1	7.2	 - 장기미집행 도로 변경에 따른 추가편입						
				연지동	136-49	26.4	3/17/E0 77 E0/1 // F1						
				효제동	291-9	10.4							
				효제동	291-11	17.6							
		3	133.3	효제동	86-3	133.3	-						
변경	C-4	1	7,300.6	효제동	90-5	2.5	90-5 외 17필지 공동개발 지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위	위치		비고
				효제동	89-1	85.7	
				효제동	98	5,888.8	
				효제동	113	59.9	
				효제동 94-2 16.5 효제동 95-1 69.4 효제동 95-2 6.6 효제동 255-17 19.2 효제동 91 10.5	16.5		
					69.4		
					6.6		
					10.5		
				효제동	291-7	3.9	98(대지분할가능), 115-1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85-1	28.6	
				효제동	86-4	116.7	
				효제동	67-2	544.4	
				효제동	84-1	252.2	
				효제동	291-9	10.4	
				효제동	291-11	17.6	
				효제동 86-3 효제동 291-8	133.3		
					0.1		
				효제동	115-1	34.3	98(대지분할가능), 90-5 외 17필지, 115-1 공동개발 권장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 사 유
C-4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	•동일소유자 필지를 공동개발(지정) 계획하여 일체회된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 변경 수립함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 다) 용적률 결정조서(변경없음)
 - 라)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 용 지 역	높 이 계 획	비고
기정		H-2 (충효길 및 새터길 북측 블록)	최고높이 50m 이하	
비견	최고높이	H-2 (충효길 및 새터길 북측 블록)	최고높이 50m 이하	•앙각규제 적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변경		종로구 효제동 98번지 일원	최고높이 50m 이하 (옥탑 등 부속시설 제외 50m 이하)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종로구 효제동 98번지 일원	•최고높이 변경 : 50m 이하 (옥탑 등 부속시설 제외 50m 이하)	•계획 실현성 및 역사도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높이계획 변경 (건축법 상 높이 50m 이하)

마)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변경)

	구 분	적 용 지 역	제 어 내 용	비고
		대학로, 율곡로, 창경궁로변	도로경계선에서 3m	-
기정	건축한계선	새터길, 충효로변	도로경계선에서 2m	-
		지구내 이면도로	도로중심선에서 2~3m 후퇴	-
		대학로, 율곡로, 창경궁로변	도로경계선에서 3m	금회 가구 C-4 내 효제동 98번지 일원 대학로변 건축한계선 위치 변경
		새터길, 충효로변	도로경계선에서 2m	-
변경	건축한계선	지구내 이면도로	도로중심선에서 2~3m 후퇴	-
		효제동 98번지 일원 동측 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2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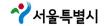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학로, 율곡로, 창경궁로변	•건축한계선 위치 조정	•대학로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에 따라 건축한계선 위치 조정
효제동 98번지 일원 동측 도로변	•건축한계선 신설 - 도로경계선에서 2m	•건축한계선 신설 통한 보행공간 확보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변경)

구분	제어요소	적 용 구 간	제 어 내 용	비고
기정	공개공지	간선도로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 시 위치를 지정	-
변경	0/110/11	간선도로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 시 위치를 지정	금회 가구 C-4 내 효제동 98번지 일원 공개공지 위치 변경
기정		보행연결필요구간	폭 4m 이상으로 조성	-
변경	공공보행통로	보행연결필요구간	폭 4m 이상으로 조성	금회 가구 C-4 내 효제동 98번지 일원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경



구 분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종로구 효제동	•공개공지 위치 및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	•대학로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 및 획지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계획 취지를 고려하
98번지 일원	경	여 공개공지 위치 및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경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변경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3)

※ 의견제출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

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보 제3725호 2021. 10. 14.(목)

◈ 광진구공고 제2021-106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사완료 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7호(2005. 4. 7.)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 광진구고시 제2005-60호(2005. 9. 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진구고시 제2006-5호 (2006. 2. 2.) 및 광진구고시 제2006-70호(2006. 12. 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아차산 진입 걷고 싶은 거리 보행녹도 조성" 사업 공사완료에 따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진구 광장동 378번지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공공공지) 사업

2) 사업의 명칭 : 아차산 진입 걷고싶은 거리 보행녹도 조성

(공사명: 아차산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

다. 사업규모: 3,158 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08. 12. 31.

바. 공사완료일 : 2006. 6. 30.

사. 관계도서 : 생략

서울시보 제3725호 2021. 10. 14.(목)

◈ 동대문구공고 제2021-1158호

용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84호(1997.1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3호(2007.3.8.)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용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0월 14일 동대문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용두근린공원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신동 34-1일대

3. 면 적: 17,182.0m²

4. 주요변경(안) 내용 : 공원내 도서관 건립 등

○시설면적: 6.393m²→6.821m²

ㅇ주요시설: 휴게광장, 그늘시렁, 도서관 등 5.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02-2127-4776)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용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4-1번지 일대)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등	<u> </u>	공작물	비 고
		(m²)	(m²)	동수(동)	바닥면적(m²)	연면적(m²)	(7)	(m²)	(m²)	동수(동)	바닥면적(m²)	연면적(m²)	(7)	
계		17,182	6,393	1동	650	931	30	17,182.0	6,821.0	2동	855.9	1,342.8	108	
	소 계	3,805	3,805					3,786.3	3,786.3					감 18.7 m²
기반시설	도로	2,572	2,572					2,299.0	2,299.0					감 273㎡
	광 장	1,233	1,233					1,487.3	1,487.3					증 254.3 m²
조 경	시 설	1,207	1,207				11	1,067.5	1,067.5				12	감 139.5 m²
효양	시 설	187	187				18	512.8	512.8				25	증 325.8 m²
운동	시 설							155.0	155.0				5	증 155.0 m²
교양	시 설	288	288					236.1	236.1	1동	205.9	411.8	6	감 51.9 m²
유희	시 설	144	144					269.0	269.0				7	증 125.0 m²
편 익	시 설							32.3	32.3					증 32.3 m²
관 리	시 설	762	762	1동	650	931	1	762.0	762.0	1동	650	931	53	
녹지및	 기타	10,789						10,361.0						감 428 m²
공 원 시 (40%)	l 설 율 이하)	(6,393m² ÷ 17,18	2m²) × 100%	= 37.20%(법정	40%이하)		(6	,821 m² ÷ 17,18	2m²) × 100)% = 39.69%(발	d정 40%이하)		
공 원 건 (20%)	<u>년</u> 폐 율 이하)		(650m² ÷ 17,18	2 m²) × 100%	= 3.8%(법정	20%이하)		(8	55.9m² ÷ 17,18	2m²) × 100)% = 4.98%(법정 20%이하)		

나.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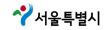
				변	경		전						변	경		ō				
	구 분			버지머지	니시머저			건 축	물	공작물			버지머지	시시머지			건 축	물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7)	부호	위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기)	
	계			17,182	6,393		1동	650	931	30			17,182	6,821.0			855.9	1342.8	108	증 477.2 m²
	소 계			3,805									3,786.3	3,786.3						감 18.7 m²
	도로		전지역	2,572	2,572							전지역	2,299.0	2,299.0						감 273㎡
		가	2개소	404	404						가	2개소	404.0	404.0						
기반 시설	진입광장	가-1	용두동 34-7대 용두동 34-10대 용두동 34-11대 용두동 34-18대 용두동 34-19대	(348)							가-1	용두통 34-7대 용두통 34-10대 용두통 34-11대 용두통 34-18대 용두통 34-19대	(348.0)	(348.0)						
		가-2	유트두	(56)							가-2	용두동 47-13도	(56)	(56)						
		나	2개소	829	829						나	2개소	1,083.3	1,083.3						증 254.3 m²
	휴게광장	나-1	용두동 34-8대 용두동 34-9대 용두동 34-10대 용두동 34-12대	(518)							나-1	용두동 34-8대 용두동 34-9대 용두동 34-10대 용두동 34-12대 용두동 34-13대	(369.4)	(369.4)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버지머리	пина			건 축	물	공작물			버지머디	UUNT			건 축	물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7)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m²)	(7)	
			용두동 34-13대 용두동 34-18대 용두동 47-4도									용두동 34-18대 용두동 47-4도								
		나-2	용두동 34-3대	(311)							나-2	용두동 34-3대 2용두동 47-4대 용두동 177도	(318.5)	(318.5)						
			010								나-(용두동 47-4	(395.4)	(395.4)						현황반영
	소 계			1,207	1,207					11			1,067.5	1,067.5					12	감 139.5 ㎡
조경 시설	연못	다	용두동 34-6대 용두동 34-8대 용두동 34-12대 용두동 34-13대 용두동 47-4대	558	558						다	용두동 34-6대 용두동 34-8대 용두동 34-12대 용두동 34-13대 용두동 47-4대	206.3	206.3						현황반영 감 351.7 m [*]
	계류	라	전지역	347	347						라	전지역	384.3	384.3						현황반영 증37.3 ㎡
	분수	마	용두동 47-4도 용두동 47-13도	254	254						마	용두동 47-4도 용두동 47-13도	254.0	254.0						

				변	경		전						변	경		Ŧ				
	구 분			HIMA	티시터전			건 축	물	공작물			버지머지	니시머지			건 축	물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7)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7)	
	그늘시렁	1	11개소	48	48					11	1)	용두동 47-4	110.0	110.0					5	현황반영 증 62.0㎡
	플랜터										2	전지역	81.6	81.6					6	현황반영
	장식벽										3	전지역	31.3	31.3					1	현황반영
	소 계			187	187					18			512.8	512.8					25	증 325.8
		바		127	127						바		480.5	480.5						증 353.5
āOŀ	휴게소	바-1	용두동 34-8대 용두동 47-4도 용두동	(97)							바-1	용두동 34-8대 용두동 47-4도	(99.8)	(99.8)						
휴양 시설		바-2	용두동 34-5대	(30)							바-2	용두동 34-5대	(199.7)	(199.7)						
											바-3		(181.0)	(181.0)						현황반영
	앉음벽	2	용두동 34-4	60	60					18	6	전지역	32.3	32.3						감27.7m
	벤치										(1)	전지역	-	-					25	현황반영
운동	소 계												155.0	155.0					5	증 155 r
시설	체력단련장										사	용두동 47-4	155.0	155.0					5	현황반영
교양 시설	소 계			288	288								236.1	236.1					6	감 51.9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비기대자	티시터전			건 축	물	공작물			버지머지	니시머지			건 축	물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7)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7)	
		사		288	288															
	야외전시장	사-1	용두동 34-3대	(144)																폐지
		사-2	용두동 34-3대	(144)																
	도서관										1	용두동 34-3대	205.9	205.9	철근 콘크 리트	1동	205.9	411.8		신설
	야외전시벽	3	6개소	(6)							8		-	-					6	부호변경
	야외무대										9		30.2	30.2						현황반영
	소 계			144	144								269.0	269.0					7	증 125 m²
유희 시설 -	놀이터	아	용두동34-1 대 용두동 47-4도	144	144						아	용두동34-1대 용두동 47-4도	269.0	269.0						
12	숲속놀이터										아-1		(134.5)	(134.5)					4	현황반영
	곤충의마당										아-2		(134.5)	(134.5)					3	현황반영
	숲속놀이대										아-3		-	-						폐지 : 도서 건립

				변	경		전						변	경		ō				
	구 분			버지어지	니니어디			건 축	물	공작물			브리메디	UUNTI			건 축	물	공작물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7)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바닥면적 (m²)	연면적 (m²)	(7)	
	소 계												32.3	32.3						증 32.3 m²
편익 시설	음수대	자	용두동 34-5대	(2)	(2)						자	용두동 34-5대	(2)	(2)						
	주차장												32.3	32.3						신설
	소계			762	762		1동	650	931	1			762.0	762.0					53	
71.21	관리동	1	용두동 34-6대 용두동 34-8대 용두동 47-4도 용두동 47-13도	762	762	철근 콘크 리트	1동	650	931		2	용두동 34-6대 용두동 34-8대 용두동 47-4	762.0	762.0	철근 콘크 리트	1동	650	931		부호변경
관리 <mark>-</mark> 시설	공원등										10	전지역	-	_					31	신설
	공원안내판	4	1개소							1	11)	전지역	-	-					19	부호변경
	안전휀스										(12)	전지역	-	-					1	현황반영
	산석치장벽										(13)	전지역	-	-					1	현황반영
	옹벽										(4)	전지역	-						1	현황반영
녹지	소 계			10,789.0									10,361.0							
녹지 _ 기타	녹지		전지역	10,789.0								전지역	10,361.0							감 428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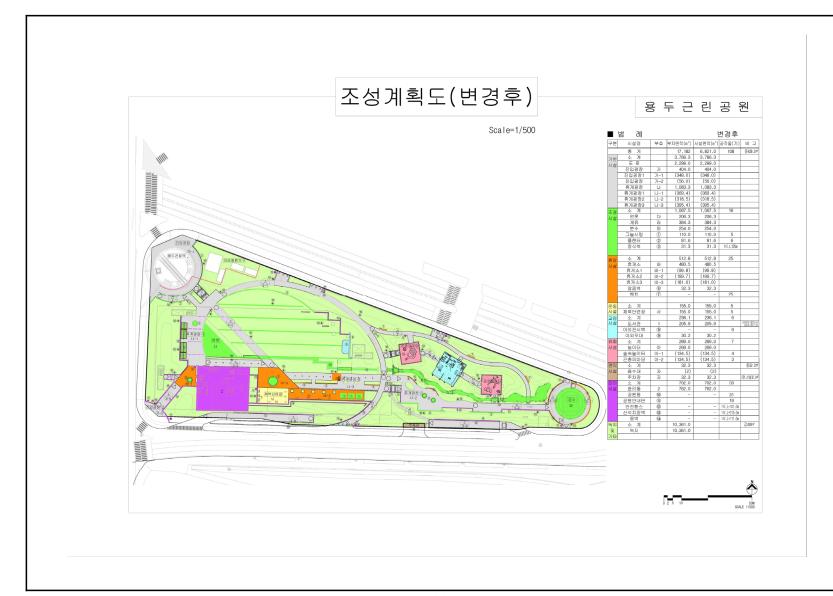


다	도로조서

구분	디디	르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775.6	2572.3				감273 m²
변경		발계 -			708.1	2299.0				
당초	소로	,	<u>·</u> 계		475.2	1746.8				
변경	工工	1 2	2/1		445.3	1648.15				
당초		3	1	3.5	132.8	464.71	관리도로	휴게광장1	소로3-4	
당초		3	2	4.0	59.4	237.64	관리도로	휴게광장1	화단	
변경		3	2	4.0	48.8	195.2	관리도로	휴게광장1	바-3	
당초		3	3	3.0	34.3	102.96	관리도로	휴게광장1	소로3-2	
변경		3	3	4.0	33.8	135.2	관리도로	휴게광장1	소로3-2	
폐지		3	4	4.0	57.7	230.64	관리도로	소로3-2	소로3-1	
신설		3	4	2.1	35.7	74.97	부진입로	소로3-10	동측입구	
당초		3	5	3.0	16.8	50.5	부진입로	진입광장2	휴게광장1	
변경		3	5	5.0	16.8	84.0	부진입로	진입광장2	휴게광장1	
당초		3	6	3.0	40.0	120.09	부진입로	야외전시벽2	분수	
변경		3	6	3.0	55.2	165.6	부진입로	야외전시벽2	분수	
폐지		3	7	2.3	12.3	28.36	관리도로	램프출구	진입광장2	
신설		3	7	7.0	4.4	30.8	부진입로	북측입구	산7	
당초		3	8	4.5	40.1	180.27	관리도로	하부램프	램프출구	
당초		3	9	4.5	45.5	204.70	관리도로	램프입구	하부램프	
당초		3	10	3.5	15.9	55.7	부진입로	소로3-6	동측입구	
변경		3	10	3.5	32.2	112.7	부진입로	서측입구	동측입구	
폐지		3	11	3.5	20.4	71.23	부진입로	소로3-6	동측입구	
당초	1150 -		711		300.4	825.54				
변경	산책로		<u>·</u> 계		292.0	650.85				
당초			1	2.5	17.5	43.85	부진입로	진입광장1	휴게광장1	
당초		_	2	5.5	9.4	51.54	부진입로	진입광장1	휴게광장1	
변경			2	4.0	9.4	37.6	부진입로	진입광장1	휴게광장1	
당초		-	3	2.3	5.3	12.25	부진입로	계단,환기구-2	휴게광장1	
폐지		-	4	4.0	35.5	142.19	부진입로	북측화단	남측데크	

구분	드리	급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폐지	· 산책로		5	1.5	16.5	24.75	부진입로	휴게소2	휴게소9	
당초	1 선색도		6	3.5	41.7	145.87	부진입로	소로3-1	남측데크	
당초			7	2.0	132.0	264.02	부진입로	소로3-1	동측수로	
당초			8	4.5	9.1	40.95	부진입로	소로3-1	야외전시장1	
변경			8	3.0	9.1	27.3	부진입로	소로3-1	곤충의마당	
당초		-	9	3.0	14.5	43.35	부진입로	야외전시장1	야외전시장2	
변경			9	3.0	14.0	41.0	부진입로	곤충의마당	물고기의마당	
당초		-	10	3.0	14.9	44.64	부진입로	야외전시장2	놀이터	
변경			10	3.0	14.0	43.96	부진입로	물고기의마당	숲속놀이터	
당초		-	11	3.0	4.0	12.13	부진입로	놀이터	소로3-6	
변경		-	11	3.0	1.3	4.0	부진입로	놀이터	소로3-6	
신설			12	1.2	29.2	31.0	부진입로	주차장	휴게광장3	현황반영





서울시보 제3725호 2021. 10. 14.(목)

◈ 중랑구공고 제2021-125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0-2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 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관련도서를 열람 합니다.
- 2.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 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중 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094-2183) 및 마을협치과(☎2094-0428)

다. 입안취지: 묵1동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협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복

합 건립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라.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조서

7 8	도면표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명 시설의 종류		OI ÷I	면적(m²)			최초	шп
구 분	번호	시설병	시설의 중류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 설	_	공공청사	-	중랑구 묵동	_	증) 1,290	1 200	_	즈보겨저	
선 열	_	문화시설	-	120-2, 120-9번지	_	<u>5</u>) 1,290	1,290	_	중복결정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공청사, 문화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신설 (중복결정) - 면적 : 1,290㎡	• 묵1동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협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밀착형 생활SOC시설(보건지소,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과 복합 건립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공공청사, 문화시설 건축범위 결정조서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고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마.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바.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2094-2183) 및 마을협치과(☎2094-0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도

(위치 : 중랑구 묵동 120-2 외 1필지, 축척 : 1/1,000)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성북구공고 제2021-1358호

성북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2013.11.28.)로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 성북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 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성북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내역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성북역사문화공원	문화공원	성북동 118-2 일대	4,88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 (2013.11.28.)

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안)

시 설 내 용	조성계획면적(m²)	녹지면적(m²)	시설면적(m²)	시설 중 건축면적(㎡)
도로 등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 등	4,880.4	3,576.1	1,304.3	154.6

- 3. 관련 조서·도면: 열람장소 비치
-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5. 열람장소: 성북구청 7층 문화체육과(☎ 02-2241-2605)

◈ 강북구공고 제2021-1250호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1999-47호(1999.3.16.)호 도시설계 확정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243호(2009.6.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2020.6.25.)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유동 47-56외 4필지의 건축한계선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강 북 구 청 장

가. 공 고 일: 2021. 10. 14.

나. 열람기간: 2021. 10. 14. ~ 2021. 10. 28.

다. 도시관리계획(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한계선(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니	H8	비 고
丁 正	역장시작	기정	변경	n 17
건축 한계선	수유동 47-5,47-54, 47-56,47-57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0.5m	건축한계선 2m	·해당부분 도면표기 ·공동건축으로 대상지 내부의 건축한계선 폐지
_ 1-	수유동47-55	-	건축한계선 2m	·신설 ·해당부분 도면표기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건축한계선 적용 대상	수유동47-5, 수유동47-54, 수유동47-56, 수유동47-57의 공동건축으로 인한 건축한계선 변경 (대상지로 한정)

2) 그 외 변경사항 없음

라. 관계도면: 붙임참조(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7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1-1741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50호(2002.2.28)로 결정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안)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 열람공고합니다.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동작구청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별관 3층 ☎02-820-9595)

3.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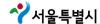
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기반시설 결정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다. 특별계획4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서초구공고 제2021-1874호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보상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이 시행하는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저촉·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사항 포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을 공고하오니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을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열람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번지 일대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보상대행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기간: 2019. 5. 16.(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1. 12. 31.

2. 열람 및 의견제출

- 대 상 자: 열람도서 참조
-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서초구 양재동 남부순환로 2584)
- 열람내용: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장소 비치)
- 열람기간: 2021. 10. 7. ~ 10. 22(※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의견제출 방법: 열람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제출하거나 우편송부(※열람기간 내 도착분 에 한함)

3. 참고 사항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재결신청서

접수번호		(앞쪽) 접수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보상대행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공익사업의	기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90호(2019.5.16.)	
-10k# -17 -15	토지현황	2필지 1,800㎡	
협의에 따른 취득 및 사용 현황	물건현황	-	
夫 시o 단당	보상액 명세	금846,816,870원(붙임 매수대장 참조)	
수용하거나	· 사용할 토지 등	서울 서초구 원지동 148-1 등 7필지 7,736㎡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		-	
보상액	및 그 명세	급1,498,349,700원(명세 붙임 조서 참조)	
사용하려는 경	사용의 방법	-	
우	사용의 기간	-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김연희 등 14명	
エハエㅠハ	주 소	붙임 조서 참조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문건식 등 9명	
전계인	주 소	붙임 조서 참조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와의 협의결과	적정	
수용 또는 시	사용의 개시예정일	-	
	청구일	-	
재결신청의 청 구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_	
	청구인의 주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보상대행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각 1부 2. 혐의경위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2. 함규칙」 별표 1에 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2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성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m²)	점용목적	점용기간	연월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8-15)	영등포구 당산동 91-1 91-4	24㎡ (개소당 12㎡)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관련 지반조사	2021.10.04. ~2021.10.15.	2021. 9.3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2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연월일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	강동구 천호동 480-33	220 m²	즈믄길 외 2개소 리모델링 공사용 창고 및 현장사무실 이용	2021.10.01. ~2022.8.31.	2021. 9.3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2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			
성 명	주 소	점용목적	점용기간	연월일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마포구 상암동 487-370	72 m²	월드컵대교 접속교 육교보수 공사를 위한 자재,장비 적치	2021.10.04. ~2021.10.15.	2021. 9.30.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1-24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과태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2. 근 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 3. 공시송달 대상: "세부내역 별첨 참조"
- 4. 공고기간 : 2021. 10.7. ~ 2021. 10.20.(14일)
- 5. 자진납부기간 : 2021. 10.21. ~ 2021. 11.3.(14일)
-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1982	이*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번길 **	*블럭 **호 *혜성전장* (원시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1987	임*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문정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1988	BUTLERERI CA*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길 **	*층 (용산동*가)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1990	김*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길	(구로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1994	박*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나길 **	(북가좌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1996	ACHTENBE RGBENNE*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B**호 (연희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1997	권∗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길	*층 ***호 (서교동, 대광아크로빌)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1998	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길 **-*	***호 (장위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01	현*토건(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	진일빌딩*** (방배동)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03	PHAMN*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지하*호 (군자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04	강*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길 **-**	(군자동)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06	노*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	***동 ***호 (행당동, 행당대림아파트)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07	김*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길 **-*	(용답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08	김∗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	***동 ****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17	오*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가길 *	(미아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19	서*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가길	A동 ***호 (창동, 현대그린빌)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20	신*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	***동 ***호 (면목동, 면목현대아파트)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23	임*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길 *	B**호 (신림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24	송*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가길 **-*	(성수동*가)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26	박∗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길 **	(고덕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29	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길 *	(신길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31	김*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	****호 (문정동, 송파푸르지오시티)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36	임*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기타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번길 **	***동 ***호 (이충동, 정암마을 뜨란채)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38	박*혁,박*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길 **	(자양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40	문*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길 **-*	*동 ***호 (상계동, 삼미빌라)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43	문*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길 **-*	*동 ***호 (상계동, 삼미빌라)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45	최*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호 (화양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47	윤*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다길 *	비동 ***호 (상계동, 리언하우스)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50	최*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	(금호동*가)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51	김*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길 **-*	(회기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62	임*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길	(화양동)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64	류*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	****호 (화양동)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67	박*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길 **	***호 (장안동, 형인허브빌)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76	박*신	(1차)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1,00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번길 **	(금광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77	홍*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길 **-**	(중림동)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84	주식회사이* 산업개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	에이동 ***호 (덕풍동, 트윈렉스*)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86	윤*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나길 **-*	(신대방동)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87	박*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길 **	(신길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90	김∗윤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번길 *-*	(시흥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91	이*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길 **-*	(성수동*가)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92	0 *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	***동 ***호 (창전동, 창전동삼성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93	홍*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	****동 ****호 (동패동, 책향기마을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098	C*ILINHAO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호 (시흥동)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00	정*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층 (구의동)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03	김*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길 *-*	(중곡동)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07	이*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	지하층 B**호 (풍납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08	최*광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가길 **	***호 (자양동)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11	ZHAO*CAI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길 ***-*	지층 (답십리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13	남*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	(성수동*가)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16	이*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D동 ***호 (주안동, 삼영아파트)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18	이*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길 **	***동 ****호 (제기동, 한신아파트)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20	진*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	***호 (암사동, 삼성파크빌)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25	김*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가길 *	***호 (공릉동)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27	전*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	나동 ***호 (장위동, 대봉맨션)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28	김∗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서길	***동 ***호 (아라일동 아라한성베르뜨)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32	강*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길 **	***호 (군자동)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33	윤*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길 **-**	***동 ***호 (신정동, 세양청마루아파트)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34	김*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길 *	***호 (오금동)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38	임*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바길 **	(송정동)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43	₩∗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동 ***호 (하대원동, 성남자이)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44	유*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	A동 ***호 (양평동*가, 힘멜하임)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48	임*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가길 *-*	(공항동)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49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길 ***	***동****호 (방화동, 마곡서광아파트)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1-09	002150	조*현, 김*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길 ***	***호 (외발산동, 수명산파크빌)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1-248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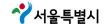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1. 건 명: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자(사전통지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2.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3. 공시송달 대상: "세부내역 별첨 참조"
- 4. 공고기간 : 2021. 10.7. ~ 2021. 10.20.(14일)
- 5. 자진납부기간 : 2021. 10.21. ~ 2021. 11.3.(14일)
-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8	000198	오*환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길 **	****호 (신도림동, 신도림 크라운빌)
2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9	000206	이*복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C동****호 (정자동, 정자동*차푸르지오시티)
3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9	000207	김*원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	***동***호 (금호동*가,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4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9	000208	<u>~</u> %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송파동)
5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9	000257	한∗수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	***동***호 (도원동,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6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9	000259	0 *현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번길 **	***호 (관양동, 덕원맨숀*차)
7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9	000260	강*오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길 **	***호 (화곡동, 씨티파크*)
8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9	000262	0 *서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길 **-**	(방배동)
9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9	000263	박*수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10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길 **	***동***호 (수서동, 주공아파트)
10	10-288166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21-09	000264	김*랑	22시이후음주금지위반	5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길 *-*	***호 (등촌동, 리움하우스)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9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0호(2021.06.24.)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내용 중 착오에 의한 오기 사항을 「도시개발법」제9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정정사유 및 정정내용
 -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 및 관계도서 내용 중 잘못 기재된 사항 정정
 - 정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 바. 지구분할
- 1) 지구내 공구 분할 [정정 전]

(단위 : m²)

			1지구			2지구			3지구	
	Й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신설)
기정	3,666,644.2	778,603.8	214,368.5	73,586.1	1,382,130.4	216,315.6	305,031.9	384,291.9	312,316.0	-
변경 	3,666,582.0	778,603.8	92,763.9	194,930.6	1,382,130.4	247,525.2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 상기 공구 분할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분할이 아닌 사업(부분)준공 추진을 위한 공구 분할임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서울시보 제3725호

❤️서울특별시

1) 지구내 공구 분할 [정정 후]

(단위 : m²)

계 기정 3,666,644.2 변경 3,666,582.0		1지구			2지구		3지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신설)		
0,000,011.2	778,603.8	214,368.5	73,586.1	1,382,130.4	216,315.6	305,031.9	384,291.9	312,316.0	-		
3,666,582.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 상기 공구 분할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분할이 아닌 사업(부분)준공 추진을 위한 공구 분할임**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정정사항>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1지구 2공구 내 도로(대로 2-2)	증)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 [정정 전]

【토지이용계획】

						면 적(m²)							
:	구분	Й		1지구			2지구			3지구		구성비 (%)	비고
		<i>1</i> 1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70)	
Ğ	합계	3,666,582.0	778,603.8	92,763.9	194,930.6	1,382,621. 4	247,525.2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100.0	
	노 계	1,794,874.7	513,428.3	-	92,179.0	837,164.5	186,889.9	165,213.0	-	-		-	
	계	595,267.9	503,088.9	-	92,179.0	-	-	-	-	-		16.2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4,247.7	4,247.7	-	-	-	-	-	-	-		0.1	
T/15시	공동주택용지	591,020.2	498,841.2	-	92,179.0	-	-	-	-	-		16.1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06.3	10,339.4	-	-	72,466.9	-	-	-	-		2.3	
업무용지	업 무 용 지	305,302.1	-	-	-	183,528.7	121,773.4	-	-	-		8.3	
산업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729,006.1	-	-	-	539,202.3	54,946.8	134,857.0	-	-		19.9	
지원시설 용지	지원시설용지	82,492.3	_	-	-	41,966.6	10,169.7	30,356.0	-	-		2.2	
	 소 계	1,815,248.7	260,666.0	82,900.7	90,765.6	539,857.1	60,635.3	85,086.6	384,291.9	14,984.9	297,347.0	49.5	
	도로	650,282.2 (8,851.0)	75,183.5	23,219.3	59,953.6	367,582.0	17,934.5	77,282.3	-	-	29,618.0 (8,851.0)	17.7	
도시 기반시설	보행자도로	1,627.3 (647.0)	652.7	_	_	554.6	_	420	-	_	- (647.0)	0.0	
용지	철 도 용 지	16,733.0	-	-	-	-	7,333.0	-	-	-	9,400.0		
	의 료 시 설	33,363.8	-	-	-	33,363.8	-	-	-	-		0.9	

						면 적(m²)						그사고	
	구분	계		1지구			2지구			3지구		구성비 (%)	Н
		/1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70)	
	공 공 청 사	47,092.8	21,669.0	23,948.8	1,475.0	-	-	-	-	-	-	1.3	
	학교	110,009.4	47,749.8	16,752.0	24,311.0	21,196.6	-	-	-	-	-	3.0	
	보 육 시 설	991.6	-	-	-	991.6	-	-	-	-		0.0	
	사회복지시설	1,700.0	-	1,700.0	-	-	-	-	-	-		0.0	
	문 화 시 설	11,823.5	-	_	-	-	-	-	-	11,823.5	-	0.4	
	광 장	12,985.4	-	-	-	12,985.4	-	-	-	-	-		
	근린공원	547,226.1 (35,884.0)	24,594.6	17,280.6	-	-	-	-	384,291.9	-	121,059.0 (35,884.0)	14.9	
	어린이공원 /소공원	16,615.1	13,957.1	-	2,658.0	-		-	-	-	-	0.5	
	문 화 공 원	20,379.3	-	_	-	12,082.5	8,296.8	-	-	-	-	0.6	T
	가 로 공 원	2,618.5	-	-	-	2,618.5	-	-	-	-	-	0.1	Ī
	경 관 녹 지	2,825.3	1,579.5	-	-	559.1	-	369.0	-	317.7	-	0.1	Ī
	연 결 녹 지	171,633.8 (898.0)	69,768.4	-	-	67,773.4 (898.0)	27,071.0	7,021.0	-	-	-	4.7	
	주 차 장	25,661.0 (8,114.0)	5,511.4	-	-	20,149.6	-	-	-	- (8,114.0)		0.7	
	열공급설비	24,140.0	-	-	-	-	-	-	-	-	24,140.0		Ī
	전기공급설비	2,042.6	-	-	-	-	-	-	-	2,042.6	-	0.1	Ī
	방 수 설 비	8,615.0 (7,885.0)	-	-	2,368.0	-	-	-	-	-	6,247.0 (7,885.0)	0.2	
	유수지	106,883.0								-	106,883.0	2.9	Ī
	저 류 지	(50,000.0)	-	-			-	-	-	-	(50,000.0)	0.0	Γ
•	소 계	56,458.6	4,509.5	9,863.2	11,986	5,599.8	-	23,699.0		801.1	-	1.9	Γ
	주 유 소	3,202.2	-	799.8	-	1,601.3	-	-	-	801.1	-	0.1	T
	가스충전소	3,998.5	-	-	-	3,998.5	-	-	-	-		0.1	
기타시설 용지	종 교 시 설	2,994.4	2,994.4	-	-	-	-	-	-	-		0.1	
	편 익 시 설	36,258.5	1,515.1	9,063.4	11,986	-	-	13,694.0	-	-	-	1.3	
	택시차고지	10,005.0	-	-	-	-	-	10,005.0	-	-		0.3	

 [※] 근린공원1 중복결정: 저류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공동구), 중로2-37[() 면적: 중복 결정된 면적임]
 ※ 유수지 중복결정: 중로2-38, 소로3-4, 근린공원4, 방수설비2(면적:7,885㎡)[() 면적: 중복 결정된 면적을 포함]
 ※ 입체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결정: 산업시설용지(산DP3)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598㎡), 산업시설용지(산D22·25)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300㎡를) [() 면적: 지상부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포함 면적]
 ※ 근린공원 점용: 가스정압기(근린공원2), 변전소(근린공원3)
 ※ 변경사유: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1) 토지이용계획 [정정 후]

【토지이용계획】

						면 적(m²)						الرائد ال	
:	구분	'''		1지구			2지구			3지구		구성비 (%)	비
		<u>И</u>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0)	
ō	計 계	3,666,582.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 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100.0	
4	<u>·</u> 계	1,794,874.6	513,428.3	-	92,179.0	837,164.5	186,889.8	165,213.0	-	-		48.9	
	계	595,267.9	503,088.9	-	92,179.0	-	-	-	-	-		16.2	Г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4,247.7	4,247.7	-	-	-	-	-	-	-		0.1	
	공동주택용지	591,020.2	498,841.2	-	92,179.0	-	-	-	-	-		16.1	Г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06.3	10,339.4	-	-	72,466.9	-	-	-	-		2.3	
업무용지	업 무 용 지	305,302.1	-	-	-	183,528.7	121,773.4	-	-	-		8.3	
·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29,006.0	-	_	-	539,202.3	54,946.7	134,857.0	-	-		19.9	
[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2,492.3	_	_	_	41,966.6	10,169.7	30,356.0	_	-		2.2	r
	 소 계	1,815,248.8	260,666.0	82,900.8	90,765.6	539,366.1	60,635.3	-	384,291.9	14,183.8	297,347.0	49.5	r
	도로	650,282.3 (8,851.0)		23,219.4	,			77,282.3	_	-	29,618.0 (8,851.0)	17.7	
	보행자도로	1,627.3 (647.0)	652.7	_	-	554.6	_	420	-	-	- (647.0)	0.0	
	철 도 용 지	16,733.0	-	-	-	-	7,333.0	-	-	-	9,400.0	0.4	
	의 료 시 설	33,363.8	-	-	-	33,363.8	-	-	-	-		0.9	
	공 공 청 사	47,092.8	21,669.0	23,948.8	1,475.0	-	-	-	-	-	-	1.3	
	학교	110,009.4	47,749.8	16,752.0	24,311.0	21,196.6	-	-	-	-	-	3.0	
	보 육 시 설	991.6	-	-	-	991.6	-	-	-	-		0.0	Г
	사회복지시설	1,700.0	-	1,700.0	-	-	-	-	-	-		0.0	
	문 화 시 설	11,823.5	-	-	-	-	-	-	-	11,823.5	-	0.3	
	광 장	12,985.4	-	-	-	12,985.4	-	-	-	-	-	0.4	
두시	근 린 공 원	547,226.1 (35,884.0)	24,594.6	17,280.6	-	-	-	-	384,291.9	-	121,059.0 (35,884.0)	14.9	
기반시설 용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16,615.1	13,957.1	-	2,658.0	-	-	-	-	-	-	0.5	
	문 화 공 원	20,379.3	-	-	-	12,082.5	8,296.8	-	-	-	-	0.6	
	가 로 공 원	2,618.5	-	-	-	2,618.5	-	-	-	-	-	0.1	
	경 관 녹 지	2,825.3	1,579.5	_	_	559.1	-	369.0	-	317.7	-	0.1	
{ { Z	연결 녹 지	171,633.8 (898.0)	69,768.4	-	-	67,773.4 (898.0)	27,071.0	7,021.0	-	-	-	4.7	
	주 차 장	25,661.0 (8,114.0)	5,511.4	-	-	20,149.6	-	-	-	- (8,114.0)		0.7	
	열공급설비	24,140.0	-	-	-	-	-	-	-	-	24,140.0	0.7	
	전기공급설비	2,042.6	-	_	-	-	-	-	-	2,042.6	-	0.1	
	방 수 설 비	8,615.0 (7,885.0)	-	-	2,368.0	_	_	_	_	_	6,247.0 (7,885.0)	0.2	
	유 수 지	106,883.0								-	106,883.0	2.9	
	저 류 지	(50,000.0)	-	-	-	-	-	-	-	-	(50,000.0)	0.0	



						면 적(m²)							
:	구분	711		1지구		L 1(III)	2지구			3지구		구성비 (%)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	
	소 계	56,458.6	4,509.5	9,863.2	11,986	5,599.8	-	23,699.0		801.1	-	1.6	
	주 유 소	3,202.2		799.8	-	1,601.3	-		-	801.1	-	0.1	
-1-1-11	가스충전소	3,998.5		-	-	3,998.5	-		-	-		0.1	
기타시설 용지	종 교 시 설	2,994.4	2,994.4	-	-	-	-	-	-	-		0.1	
0/1	편 익 시 설	36,258.5	1,515.1	9,063.4	11,986	-	-	13,694.0	-	-	-	1.0	
	택시차고지	10,005.0	-	-	-	-	-	10,005.0	-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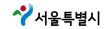
- ※ 근린공원1 중복결정 : 저류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공동구), 중로2-37[()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임]
- ※ 유수지 중복결정 : 중로2-38, 소로3-4, 근린공원4, 방수설비2(면적:7,885m')[()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을 포함]
- ※ 입체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결정 : 산업시설용지(산DP3)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598㎡), 산업시설용지(산D22·25)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300㎡) [() 면적 : 지상부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포함 면적]
- ※ 근린공원 점용 : 가스정압기(근린공원2), 변전소(근린공원3)
-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1지구 2공구 내 도로(대로 2-2)	증)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2,3 지구 도로 및 소계	도로, 소계 면적	면적 착오 기입

- 카. 관계 도서의 공람방법
- 나) 공람장소 [정정 전]
-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 (☎ 02) 2133-1539)
-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 02) 2600-5284)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 02) 3410-7683)
- 나) 공람장소 [정정 후]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1549)
-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 02) 2600-5284)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 02) 3410-7683)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서울특별시 공람장소	서남권사업과(2133-1539) → 서부권사업과(2133-1549)	-

- 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 ※ 본 항은 「도시개발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됨



용도지역 결정 조서 가) 결정 조서 [정정 전]

							면 적	(m^2)					
7		분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비.
			8/1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ᆌ	기정	3,666,644.2	778,603.8	214,368.5	73,586.1	1,382,130.4	216,315.6	305,031.9	384,291.9	312,316.0		
땁	계	변경	3,666,582.0	778,603.8	92,763.9	194,930.6	1,382,130.4	247,525.2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٨٦١	기정	1,289,452.6	759,211.6	210,608.5	73,586.1	177,192.9	9,848.7	34,864.8	-	24,140.0	-	
	제1종일반 기정 주거지역 변경	변경	1,289,382.9	759,211.6	89,194.3	194,930.6	177,192.9	-	44,713.5	-	-	24,140.0	
		기정	10,603.0	8,139.0	2,464.0	-	-	-	-	-	-	-	
		변경	10,578.5	8,139.0	2,439.5	-	-	-	-	-	-	-	ļ
조게 제2	제2종일반	기정	24,140.0	-	-	_	_	-	-	-	24,140.0	_	T
주거 지역	주거지역	변경	24,140.0	-	-	-	-	-	-	-	-	24,140.0	ļ
	제3종일반	기정	779,130.7	577,428.6	113,675.9	15,242.7	32,911.0	9,749.6	30,122.9	-	-	-	
	주거지역	변경	779,525.8	577,428.6	64,506.5	64,807.2	32,911.0	-	39,872.5	-	-	-	
	ㅈㅈ기키여	기정	475,578.9	173,644.0	94,468.6	58,343.4	144,281.9	99.1	4,741.9	-	-	-	
	준주거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변경 준공업지역 기정	변경	475,138.6	173,644.0	22,248.3	130,123.4	144,281.9	_	4,841.0			-	
018		기정	559,936.4	19,392.2	3,760.0	-	303,892.2	173,958.6	58,933.4	-	-	-	
2		변경	559,928.0	19,392.2	3,569.6	_	303,892.2	174,111.9	58,962.1			_	
줏		기정	1,110,805.0	_	_	_	867,063.0	32,508.3	211,233.7	_	_	-	
		변경	1,110,805.0				867,063.0	73,413.3	170,328.7	-		-	Ĺ
녹지	자연녹지	기정	706,450.2		-	-	33,982.3	-	-	384,291.9	288,176.0		
지역	지역	변경	706,466.1	_			33,982.3			384,291.9	14,984.9	273,207.0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가) 결정 조서 [정정 후]

							면 적	(m²)					
T	l	분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비고
			함계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하	계	기정	3,666,644.2	778,603.8	214,368.5	73,586.1	1,382,130.4	216,315.6	305,031.9	384,291.9	312,316.0		
합	А	변경	3,666,582.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소계	기정	1,289,452.6	759,211.6	210,608.5	73,586.1	177,192.9	9,848.7	34,864.8	-	24,140.0	-	
	 	변경	1,289,383.0	759,211.6	89,194.4	194,930.6	177,192.9	-	44,713.5	-	-	24,140.0	
주거	제1종일반	기정	10,603.0	8,139.0	2,464.0	-	-	-	-	-	-	-	
지역	주거지역	변경	10,578.5	8,139.0	2,439.5	-	-	-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24,140.0	-	-	-	-	-	-	-	24,140.0	-	

							면 적	(m²)					
_ T	1	분	<u>합계</u>		1지구			2지구			3지구		비고
			H/1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변경	24,140.0	-	-	-	-	-	-	-	-	24,140.0	
	제3종일반	기정	779,130.7	577,428.6	113,675.9	15,242.7	32,911.0	9,749.6	30,122.9	-	-	-	
	주거지역	변경	779,525.9	577,428.6	64,506.6	64,807.2	32,911.0	-	39,872.5	-	-	-	
	조조키키연	기정	475,578.9	173,644.0	94,468.6	58,343.4	144,281.9	99.1	4,741.9	-	-	-	
	준주거지역	변경	475,138.6	173,644.0	22,248.3	130,123.4	144,281.9	-	4,841.0	-	-	-	
011	네시아 피에	기정	559,936.4	19,392.2	3,760.0	-	303,892.2	173,958.6	58,933.4	-	-	-	
21	반상업지역	변경	559,928.0	19,392.2	3,569.6	-	303,892.2	174,111.9	58,962.1	-	-	-	
	공업지역	기정	1,110,805.0	-	-	-	867,063.0	32,508.3	211,233.7	-	-	-	
ᆫ	: 중입시역	변경	1,110,804.9	-	-	-	867,063.0	73,413.2	170,328.7	-	-	-	
녹지	자연녹지	기정	706,450.2	-	-	-	33,982.3	-	-	384,291.9	288,176.0	-	
지역		변경	706,466.1	-	-	-	33,982.3	-	-	384,291.9	14,984.9	273,207.0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구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1지구 2공구 내 도로(대로 2-2)	증)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정정 전]

구 분	도면	지구명	지구의 세분	OI ÷I	면적	(m²)	최초	нга
干正	표시번호	<u>4</u> 77	시구의 세군	위치	기정	변경	결정일	비고
1지구	_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57,931,000 (1,066,558.4)	57,931,000 (1,066,298.3)		
2지구	_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57,931,000 (1,903,477.9)	57,931,000 (1,903,659.9)	서고제120호 (1977.4.22)	
3지구	_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57,931,000 (696,607.9)	57,931,000 (696,623.8)		

^{※ ()}는 미곡 도시개발구역내 사항임※ 변경사유: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정정 후]

구 분	도면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²)	최초	비고
те	표시번호	4178	시구의 세군	ΠΛ	기정	변경	결정일	비꼬
1지구	_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57,931,000 (1,066,558.4)	57,931,000 (1,066,298.4)		
2지구	_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57,931,000 (1,903,477.9)	57,931,000 (1,903,659.8)	서고제120호 (1977.4.22)	
3지구	_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57,931,000 (696,607.9)	57,931,000 (696,623.8)		

※ ()는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사항임※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정정사항>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1지구 2공구 내 도로(대로 2-2)	증)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나) 도로 총괄표 [정정 전]

					합 7	4		1공-	1		1지구 2공-	1		3공-	7		1공	구		2지구 2공구	L		3공:	7		1공구			3지 2공구	7		3공구	1
	구분 류별		폭원 (m)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²)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²)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총 계		-	116 (6)	32,202	661,407.5 0	(3)	4,225	75,836.2	2 (1)	726	23,219.3	5	2,096	59,953.6	69 (3)	20,354	367,645.6	3	698	17,934.5	11 (1)	2,435	77,702.3	-	-	-	-	-	-	4 (1)	1,668	39,116. 0
	광로	계	-	3 (1)	1,850	99,042.7	1	-	398.3	-	-	-	1	618	32,029.7	-	_	-	-	-	-	1 (1)	1,232	66,614.7	-	-	-	-	-	-	-	-	-
	경크	3류	45~ 50	(1)	1,850	99,037.0	1	_	398.3	-	-	-	1	618	32,029.7	-	_	-	-	-	-	1 (1)	1,232	66,614.7	-	-	-	-	-	-	-	-	-
		계	-	6 (2)	5,052	140,220.4	-	-	-	1 (1)	703	23,063.2	-	-	-	5 (2)	3,175	107,120.5	1	260	10,036.7	-	-	-	-	-	-	-	-	-	1 (1)	914	29,618. 0
		1류	36	1	1,427	54,979.7	-	-	-	-	-	-	-	-	-	1	1,427	54,979.7	-	-	-	-	-	-	-	-	-	-	-	-	-		-
	대로		30~ 53	3 (2)		64,928.9	-	_	_	(1)	703	23,063.2	-	_	_	(2)	-	2,211.0	1	260	10,036.7	-	_	_	-	-	_	-	-	-	(1)	914	29,618. 0
		3류	25~ 31	2	1,748	49,929.8	-	_	_	-	-	-	-	_	_	2	1,748	49,929.8	-	_	-	-	_	-	-	-	_	-		-	-	-	_
일반		계	-	84 (3)	23,032	373,923.9	16 (3)	3,466	68,460.1	-	-	-	4	1,478	27,923.9	61 (3)	16,625	257,331.8	2	438	7,897.8	2	385	3,459.3	-	-	-	-	-	-	2	640	8,851.0
일반 도로		1류	20~ 23	13	6,092	130,418.9	6	1,881	42,264.3	-	-	-	1	661	15,444.7	8 (3)	3,307	67,782.7	1	243	4,927.2	-	-	-	-	-	-	-	-	-	-	-	-
	중로	2류	15~ 18	29	7,408	125,188.0		1,504	25,162.6	-	-	-	1	314	6,513.4		4,679	83,217.4	-	-	-	1	271	1,443.6	-	-	-	-	-	-	2	640	8,851.0
		3류	12~	42	9,532	118,317.0	2	81	1,033.2	-	-	-	2	503	5,965.8	36	8,639	106,331.7	1	195	2,970.6	1	114	2,015.7	-	-	-	-	-	-	-	-	-
		계	_	17	1,918	16,328.2	7	604	6,325.1	1	23	156.1	-	-	-	2	508	2,638.7	-	-	-	7	783	7,208.3	-	_	-	-	-	-	-	_	-
		1류	10	6		8,469.10	4	428	4,809.1	-	-	-	-	-	-	-	_	-	-	-	-	2	349	3,660.0-	-	-	-	-	-	-	-	-	-
	소로	2류	8~ 10	7	966	6,749.0	3	176	1,516.0	-	-	-	-	-	-	1	414	1,978.3	-	-	-	3	376	3,254.7	-	-	-	-	-	-	-	-	-
		3류	4~ 6.5	4	175	1,110.1	-	-	-	1	23	156.1	-	-	-	1	94	660.4	-	-	-	2	58	293.6	-	-	-	-	-	-	-	-	-
	. 중로	. A	-	2	81	974.6	-	-	-	-	-	-	-	-	-	1	46	554.6	-	-	-	1	35	420	-	-	-	-	-	-	-	-	-
보행지	사고그	UΠ	12	2	81	974.6	-	-	_	-	-	_	-	_	_	1	46	554.6	_	-	_	1	35	420	-	-	-	-	-	-	-	_	
보행지 전용 도로		계	-	4	269	1,299.7	3	155	652.7	-	-	-	-	-	-	-	-	-	-	-	-	_	-	-	_	_	-	-	-	-	1	114	647.0
도로	소로	3류	1.5~ 5	4	269	1,299.7	3	155	652.7	-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0

^{※ ():} 지구간 중복 노선수 ※ 중복결정된 도로 포함: 일반도로 중로2-37, 중로2-38, 보행자도로 소로3-4 (3지구 3공구) ※ 변경사유: 마곡 도시개발사업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나) 도로 총괄표 [정정 후]

					합 7	1					1지구 2공국						_			2지구 2공구									3지 2공구	7			
	쁊		폭원 (m)					1공-						3공	7		1공						3공			1공구			2공구			3공구	
	류별		(m)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총 계		-	116 (6)	32,202	661,407.6	27 (3)	4,225	75,836.2	(1)	726	23,219.4	5	2,096	59,953.6	69 (3)	20,354	367,645.6	3	698	17,934.5	(1)	2,435	77,702.3	-	-	-	-	-	-	(1)	1,668	39,116.0
	라이버	계	-	(1)	1,850	99,042.7	1	-	398.3	-	-	-	1	618	32,029.7	-	-	-	-	-	-	(1)	1,232	66,614.7	-	-	-	-	-	-	-	-	-
	로	3류	45~ 50	(1)	1,850	99,042.7	1	-	398.3	-	-	-	1	618	32,029.7	-	-	-	-	-	-	(1)	1,232	66,614.7	-	-	-	-	-	-	-	-	-
		계	-	6 (2)	5,052	169,838.5	-	-	-	(1)	703	23,063.3	-	-	-	(2)	3,175	107,120.5	1	260	10,036.7	-	-	-	-	-	-	-	-	-	(1)	914	29,618.0
	ГH	1류	36	1	1,427	54,979.7	-	-	-	-	-	-	_	-	-	1	1,427	54,979.7	_	-	-	_	-	_	_	-	_	-	-	_	-	-	-
	달 로	2류	30~ 53	(2)	1,877	64,929.0	-	-	-	(1)	703	23,063.3	-	-	-	(2)	-	2,211.0	1	260	10,036.7	-	-	-	-	-	-	-	-	-	(1)	914	29,618.0
		3류	25~ 31	2	1,748	49,929.8	-	_	_	-	-	-	-	_	-	2	1,748	49,929.8	-	-	_	-	_	-	-	-	-	-		-	-	-	-
일반 도로		계	-	(3)	23,032	373,923.9	16	3,466	68,460.1	-	-	-	4	1,478	27,923.9	61 (3)	16,625	257,331.8	2	438	7,897.8	2	385	3,459.3	-	-	-	-	-	-	2	640	8,851.0
	쥬도	1류	20~ 23	13	6,092	130,418.9	(3)	1,881	42,264.3	-	-	-	1	661	15,444.7	(3)	3,307	67,782.7	1	243	4,927.2	-	-	-	-	-	-	-	-	-	-	-	-
	로	2류	15~ 18	29	7,408	125,188.0	8	1,504	25,162.6	-	-	-	1	314	6,513.4	17	4,679	83,217.4	-	-	-	1	271	1,443.6	-	-	-	-	-	-	2	640	8,851.0
		3류	12~ 14	42	9,532	118,317.0	2	81	1,033.2	-	-	-	2	503	5,965.8	36	8,639	106,331.7	1	195	2,970.6	1	114	2,015.7	-	-	-	-	-	-	-	-	-
		곘	-	17	1,918	16,328.2	7	604	6,325.1	1	23	156.1	-	-		2	508	2,638.7	-	-		7	783	7,208.3	-	-	-	-	-	-	-	-	-
	٨,	1류	10	6	777	8,469.10	4	428	4,809.1	-		-	_	_	-	-	-	-	_	-	-	2	349	3,660.0	_	-	-	-	-	_	-	_	
	울		8~ 10	7	966	6,749.0	3	176	1,516.0	-	-	-	-	-	-	1	414	1,978.3	-	-	-	3	376	3,254.7	-	-	-	-	-	-	-	-	
		3류	4~ 6.5	4	175	1,110.1	-	-	-	1	23	156.1	-	-	-	1	94	660.4				2	58	293.6	-	-	-	-	-	-	-	-	-
니쉐ㅜ	. 중로	<u>계</u> 3류	- 10	2	81	974.6 974.6	-	-	-	-	-	-	_	-	-	1	46 46	554.6	-	-	-	1	35 35	420	_	-	-	-	-	-	-	-	-
보해지 저요 도로		Эπ Й	12	4	81 269	1,299.7	3	155	652.7								40	554.6	-				- 30	420	_	-		-		-	1	114	647.0
<u>-</u>	소로	3류	1.5~ 5	4	269	1,299.7	3	155	652.7	-	-	-	-	-	-	-	-	-	-	-	-	-	-	-	-	-	-	-	-	-	1	114	647.0

※ (): 지구간 중복 노선수 ※ 중복결정된 도로 포함: 일반도로 중로2-37, 중로2-38, 보행자도로 소로3-4 (3지구 3공구) ※ 변경사유: 마곡 도시개발사업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 !! 0	
구 문	정정내용	정정사유
I E	00-10	00.411
1지구 2곡구 내 도로(대로 2-2)	즈\ ∩ 1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I시구 20구 네 포포(네포 2 ⁻ 2)	ō/ U.IⅢ	꼬구님 사사보다 한국 목표 기다



-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 내용
- 5)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획지계획은 필지계획으로 대체
- (5) 산업시설용지 [정정 전]

_	분	가구번호	면적(m²)	필		비고
		기기근도	Ľ¬(III)	위치	면적(m²)	HIT.
17	17	-	-			
		D3	15,641.1	D3-1	15,641.1	D3-1, D3-2, D3-3 합필
				D4-1	4,298.2	D4-1, D4-4 합필
				D4-2	2,164.2	
		D4	13,075.3	D4-3	2,225.0	
				D4-5	2,162.6	
				D4-6	2,225.3	
		D5	17,104.9	D5-1	17,104.9	D5-1, D5-2, D5-3, D5-4 합필
				D7-1	3,910.0	
		D7	16,212.1	D7-2	3,483.3	
				D7-3	8,818.8	
				D9-1	7,853.9	
				D9-2	7,486.3	
		D9	30,508.2	D9-3	7,484.6	
				D9-4	4,078.6	
				D9-5	3,604.8	
				D10-1	1,196.7	
				D10-2	1,071.9	
				D10-3	1,072.8	
2지구	1공구			D10-4	1,073.7	
E-11	'0'			D10-5	1,074.5	
				D10-6	1,075.4	
				D10-7	1,076.0	
		D10	16,089.0	D10-8	1,129.9	
			,	D10-9	1,040.4	
				D10-10	1,039.6	
				D10-11	1,038.8	
				D10-12	1,038.0	
				D10-13	1,037.3	
				D10-14	1,036.7	
				D10-15	1,087.3	
		D11	14,515.8	D11-1	14,515.8	D11-1, D11-2, D11-3, D11-4 합필
		D12	10,530.0	D12-1	10,530.0	D12-1, D12-2 합필
		D14	7,666.3	D14-1	7,666.3	D14-1, D14-2, D14-3, D14-4, D14- 합필
				D16-1	8,795.3	
		Die	40.706.4	D16-2	8,491.5	
		D16	49,726.1	D16-3	17,622.1	D16-3, D16-7, D16-8 합필

			시골국일시		2021. 10. 14
78	al T W ≐	[H표/ .\	필	지	ula
구분	가구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D16-4	4,916.2	
			D16-5	4,948.3	
			D16-6	4,952.7	_
			D17-1	1,235.4	
			D17-2	1,251.3	_
			D17-3	1,249.9	-
			D17-4	1,195.4	_
			D17-5	1,070.0	_
			D17-6	1,184.2	
			D17-7	950.2	
	D17	15,034.7	D17-8	1,044.8	_
			D17-9	1,060.7	-
			D17-10	1,060.9	
			D17-11	929.3	
			D17-12	798.9	
			D17-13	1,053.0	
			D17-14	950.7	-
			D19-1	18,474.8	D19-1, DP1 합필
	D19	29,953.0	D19-2	11,478.2	D19-2, D19-3, D19-4 합필
			D20-1	1,044.7	DIS 2, DIS 3, DIS 7 H2
			D20-2	1,045.3	
			D20 -3	1,046.9	_
			D20-4	1,225.6	_
	D20	8,723.9	D20 4	1,045.3	_
			D20-6	1,045.1	_
			D20 0	1,045.6	_
			D20 7	1,225.4	_
			D21-1	2,965.9	
			D21-1	2,982.1	-
			D21-3	5,949.1	D21-3, D21-4 합필
	D21	22,310.1	D21 -5	2,978.5	DZ1 3, DZ1 4 H2
	021	22,310.1	D21 -6	2,745.9	-
			D21-7	2,486.8	-
			D21 7	2,400.0	-
	D22	21,762.2	D21 0	21,762.2	D22-1, D22-2, D22-3, D22-4 합필
	DZZ	41,104.4	D22-1 D23-1	1,388.0	עבע ז, טבע ב, טבע־ט, טבע־4 צופּ
			D23-1 D23-2	1,388.0	+
			D23-2 D23-3		_
	D23	7,850.0	D23-3 D23-4	1,270.4	
			D23-4 D23-5	1,386.8	
				1,267.1	
			D23-6	1,268.0	
			D24-1	2,028.5	DOV O DOV E 확대
	D04	10 000 5	D24-2	4,429.2	D24-2, D24-5 합필
	D24	13,289.5	D24-3	2,064.9	_
			D24-4	2,597.8	4
			D24-6	2,169.1	
	D25	21,043.6	D25-1	21,043.6	D25-1, D25-2, D25-3, D25-4 합필

					π	X	
구분		가구	번호	면적(m²)	위치	시 면적(m²)	비고
					D26-1	1,147.0	
					D26-2	1,122.1	_
		D	26	4,543.4	D26-3	1,145.4	_
					D26-4	1,128.9	-
					D27-1	1,661.6	
					D27-2	1,661.6	1
					D27-3	1,719.8	1
			07	10.000.0	D27-4	1,936.2	-
		۵ ا	27	10,239.0	D27-5	1,732.6	
					D27-6	1,527.2	
					D28-1	9,897.6	
		D	28	17,006.0	D28-2	3,529.5	1
					D28-3	3,578.9	1
		D	29	3,023.8	D29-1	3,023.8	
		D	30	4,912.2	D30-1	4,912.2	D30-1, D30-2 합필
			01	E E00 0	D31-1	2,990.3	
		J D	31	5,592.9	D31-2	2,602.6	
					D32-1	2,508.2	
					D32-2	1,241.4	
					D32-3	1,378.1	
					D32-4	1,371.7	
					D32-5	1,365.1	
		D	32	16,210.4	D32-6	1,454.7	
					D32-7	1,478.9	
					D32-8	1,387.3	
					D32-9	1,387.2	
					D32-10	1,387.2	
					D32-11	1,250.6	
					D33-1	1,334.8	
					D33-2	1,372.8	
					D33-3	1,366.5	
					D33-4	1,359.8	
		D	33	12,477.5	D33-5	1,397.3	
					D33-6	1,423.5	
					D33-7	1,423.1	
					D33-8	1,422.9	
					D33-9	1,376.8	
			P2	68,208.1	DP2	68,208.1	
			P3	65,953.2	DP3	65,953.2	
		<u> </u>	4	539,202.3	-	539,202.3	
		D13	신설	15,006.4	D13-1	6,507.1	3공구→2공구,
0.11.7	077	-10			D13-2	8,499.3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2지구	2공구	D18 신설	신설	21,761.8	D18-1	2,257.1 2,761.9	- 3공구→2공구,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양

_		-17		=1=1/	Ę	지				
Ī	P분	기구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 비고			
					D18-3	2,931.5				
					D18-4	2,930.6				
					D18-5	2,270.3				
					D18-6	2,796.7				
					D18-7	2,898.9				
					D18-8	2,914.8				
			기저	4 40E 0	D29-2	2,233.0				
		Dan	기정	4,495.0	D29-3	2,262.0				
		D29	비건	4 402 0	D29-2	2,231.6	기저하저츠라서기에 띠르 며저 저저 HJO			
			변경	4,493.0	D29-3	2,261.4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D38	신설	5,897.3	D38	5,897.3	3공구→2공구,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양			
					D39-1	1,879				
			기정	4,688	D39-2	1,868				
		D00		,	D39-3	941				
		D39			D39-1	1,878.8				
			변경	4,687.5	D39-2	1,868.5	─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양			
				,	D39-3	940.2				
			7171	0.404	D40-1	767				
		540	기정	3,101	D40-2	2,334				
		D40		0.400.0	D40-1	768.3	기자인지수가나기에 따르 먼지 되지 U.O			
			변경	3,100.8	D40-2	2,332.5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	기정	12,284	-	12,284				
		계	변경	54,946.8	-	54,946.8				
					D1-1	1,663				
				45.005	D1-2	4,401				
)	15,385	D1-3	4,503				
					D1-4	4,818				
					D2-1	3,010				
				44 000	D2-2	2,924				
)2	11,868	D2-3	3,010				
					D2-4	2,924				
					D6-1	5,321				
			06	13,005	D6-2	5,638				
					D6-3	2,046				
2지구	3공구		기저	45.040	D13-1	6,514				
4711	001	D10	기정	15,018	D13-2	8,504				
		D13	레기		D13-1	-	ר הסי ר הסי			
			폐지	-	D13-2	-	- 3공구→2공구			
			'		D15-1	2,206				
			4.5	0.000	D15-2	2,349				
		J D	15	9,080	D15-3	2,083				
					D15-4	2,442				
					D18-1	2,257				
					D18-2	2,761				
		D18	기정	21,765	D18-3	2,933				
								D18-4	2,931	7

78	7171	4 5	머전/ */	필	X	uln
구분	가구현	<u> </u> 오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D18-5	2,271	
				D18-6	2,797	
				D18-7	2,900	
				D18-8	2,915	
				D18-1	-	
				D18-2	-	
				D18-3	-	
		폐지		D18-4	-	רקף, רקף
		베시	_	D18-5	_	3공구→2공구
				D18-6	-	
				D18-7	_	
				D18-8	-	
				D34-1	3,508	
				D34-2	3,510	
				D34-3	3,510	
	D3	4	00 000	D34-4	3,378	
	Do	4	28,933	D34-5	3,260	
				D34-6	3,459	
				D34-7	3,948	
				D34-8	4,360	
				D35-1	2,684	
				D35-2	2,706	
				D35-3	2,703	
	D0	r	01 147	D35-4	2,643	
	D3	0	21,147	D35-5	2,569	
				D35-6	2,615	
				D35-7	2,618	
				D35-8	2,609	
				D36-1	3,600	
	D3	c	00 500	D36-2	3,879	
	D3	U	20,539	D36-3	6,665	
				D36-4	6,395	
				D37-1	5,105	
	D3	7	14,900	D37-2	4,840	
				D37-3	4,955	
	D00	기정	5,884	D38	5,884	
	D38	폐지	-	D38	-	3공구→2공구
	711	기정	177,524	_	177,524	
	계	<u>변</u> 경	134,857.0	-	134,857.0	

[※] 산업시설용지(연DP3)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6-1, 6-2)로 결정(각각 299㎡ 합계 면적 : 598㎡) ※ 산업시설용지(산D22)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17-1)로 결정(150㎡) ※ 산업시설용지(산D25)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17-2)로 결정(150㎡)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5) 산업시설용지 [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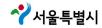
=	¹ 분	가구번호	면적(m²)	필	지	비고
		기구민오	면석(㎡)	위치	면적(m²)	미끄
17	「구	-	-			
		D3	15,641.1	D3-1	15,641.1	D3-1, D3-2, D3-3 합필
				D4-1	4,298.2	D4-1, D4-4 합필
				D4-2	2,164.2	_
		D4	13,075.3	D4-3	2,225.0	_
				D4-5	2,162.6	_
		DE	17 104 0	D4-6	2,225.3	D5-1, D5-2, D5-3, D5-4 합필
		D5	17,104.9	D5-1	17,104.9 3,910.0	D5-1, D5-2, D5-3, D5-4 입달
		D7	16 010 1	D7-1 D7-2		_
		D7	16,212.1	D7-2 D7-3	3,483.3 8,818.8	_
				D7-3 D9-1	7,853.9	+
				D9-2	7,486.3	_
		D9	30,508.2	D9-3	7,484.6	_
		50	00,000.2	D9-4	4,078.6	
				D9-5	3,604.8	
				D10-1	1,196.7	
				D10-2	1,071.9	
				D10-3	1,072.8	
				D10-4	1,073.7	
			16,089.0	D10-5	1,074.5	
				D10-6	1,075.4	
ا ا ت	1공구	D10		D10-7	1,076.0	
2지구				D10-8	1,129.9	_
				D10-9	1,040.4	_
				D10-10	1,039.6	_
				D10-11	1,038.8	_
				D10-12 D10-13	1,038.0 1,037.3	+
				D10-13	1,036.7	+
				D10-14	1,087.3	
		D11	14,515.8	D11-1	14,515.8	D11-1, D11-2, D11-3, D11-4 합필
		D12	10,530.0	D12-1	10,530.0	D12-1, D12-2 합필
		D14	7,666.3	D14-1	7,666.3	D14-1, D14-2, D14-3, D14-4, D14-5 합필
				D16-1	8,795.3	
				D16-2	8,491.5	
				D16-3	17,622.1	D16-3, D16-7, D16-8 합필
		D16	49,726.1	D16-4	4,916.2	
				D16-5	4,948.3	
				D16-6	4,952.7	
				D17-1	1,235.4	
		D17	15,034.7	D17-2	1,251.3	_

			耳	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m²)	위치	시 면적(m²)	비고
			D17-3	1,249.9	
			D17-4	1,195.4	
			D17-5	1,070.0	_
			D17-6	1,184.2	
			D17-7	950.2	
			D17-8	1,044.8	
			D17-9	1,060.7	
			D17-10	1,060.9	
			D17-11 D17-12	929.3 798.9	
			D17-12	1,053.0	
			D17-13	950.7	
			D19-1	18,474.8	D19-1, DP1 합필
	D19	29,953.0	D19-2	11,478.2	D19-2, D19-3, D19-4 합필
			D20-1	1,044.7	, , , ==
			D20-2	1,045.3	
			D20-3	1,046.9	
	D20	8,723.9	D20-4	1,225.6	
	D20	0,720.0	D20-5	1,045.3	
			D20-6	1,045.1	
			D20-7	1,045.6	
			D20-8 D21-1	1,225.4	
			D21-1 D21-2	2,965.9 2,982.1	
			D21 -3	5,949.1	D21-3, D21-4 합필
	D21	22,310.1	D21-5	2,978.5	DZ1 0, DZ1 7 H2
	BE1	22,010.1	D21-6	2,745.9	
			D21-7	2,486.8	
			D21-8	2,201.8	
	D22	21,762.2	D22-1	21,762.2	D22-1, D22-2, D22-3, D22-4 합된
			D23-1	1,388.0	
			D23-2	1,269.7	
			D23-3	1,270.4	
	D23	7,850.0			
			D23-4	1,386.8	
			D23-5	1,267.1	
			D23-6	1,268.0	
			D24-1	2,028.5	
			D24-2	4,429.2	D24-2, D24-5 합필
	D24	13,289.5	D24-3	2,064.9	· ·
	D24	13,209.3			
			D24-4	2,597.8	
			D24-6	2,169.1	
	D25	21,043.6	D25-1	21,043.6	D25-1, D25-2, D25-3, D25-4 합필

		101-	HT/	핔	지	
구분	가 _기	¹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 비고
				D26-1	1,147.0	
)26	4,543.4	D26-2	1,122.1	
		120	4,040.4	D26-3	1,145.4	
				D26-4	1,128.9	
				D27-1	1,661.6	
				D27-2	1,661.6	
)27	10,239.0	D27-3	1,719.8	
		121	10,203.0	D27-4	1,936.2	
				D27-5	1,732.6	
				D27-6	1,527.2	
				D28-1	9,897.6	
)28	17,006.0	D28-2	3,529.5	
				D28-3	3,578.9	
)29	3,023.8	D29-1	3,023.8	
)30	4,912.2	D30-1	4,912.2	D30-1, D30-2 합필
)31	5,592.9	D31-1	2,990.3	
		131	0,092.9	D31-2	2,602.6	
				D32-1	2,508.2	
				D32-2	1,241.4	
				D32-3	1,378.1	
				D32-4	1,371.7	
		.00	10.010.1	D32-5	1,365.1	
)32	16,210.4	D32-6	1,454.7	
				D32-7 D32-8	1,478.9	
			•	D32-0	1,387.3 1,387.2	
				D32-9 D32-10	1,387.2	
				D32-10	1,250.6	
				D33-1	1,334.8	
				D33-2	1,372.8	
				D33-3	1,366.5	
				D33-4	1,359.8	
)33	12,477.5	D33-5	1,397.3	
			,	D33-6	1,423.5	
				D33-7	1,423.1	
				D33-8	1,422.9	
				D33-9	1,376.8	
		P2	68,208.1	DP2	68,208.1	
		P3	65,953.2	DP3	65,953.2	
		계	539,202.3	-	539,202.3	
				D13-1	6,507.1	3공구→2공구,
	D13	신설	15,006.4	D13-2	8,499.3	
2지구 2경	5구 D18	신설	21,761.8	D18-1	2,257.1	3공구→2공구,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

_	18	717	ш÷	머지(.)	Ī	틸 지	ula
Т	¹ 분	가구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D18-2	2,761.9	
					D18-3	2,931.5	
					D18-4	2,930.6	
					D18-5	2,270.3	
					D18-6	2,796.7	
					D18-7	2,898.9	
					D18-8	2,914.8	
			기정	4,495.0	D29-2	2,233.0	
		D20	713	4,490.0	D29-3	2,262.0	
		D29	변경	4 400 O	D29-2	2,231.6	
			23	4,493.0	D29-3	2,261.4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
		D38	신설	5,897.3	D38	5,897.3	3공구→2공구,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
					D39-1	1,879	
			기정	4,688	D39-2	1,868	
		500			D39-3	941	
		D39			D39-1	1,878.8	
			변경	4,687.5	D39-2	1,868.5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
					D39-3	940.2	
					D40-1	767	
		D40	기정	3,101	D40-2	2,334	
		D40	1471	0.400.7	D40-1	768.3	
			변경	3,100.7	D40-2	2,332.4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
		ᅰ	기정	12,284	-	12,284	
		계	변경	54,946.7	-	54,946.7	
					D1-1	1,663	
)1	15,385	D1-2	4,401	
		-	''	10,000	D1-3	4,503	
					D1-4	4,818	
					D2-1	3,010	
)2	11,868	D2-2	2,924	
		-	-	11,000	D2-3	3,010	
					D2-4	2,924	
					D6-1	5,321	
0 T I T	027	[)6	13,005	D6-2	5,638	
2지구	3공구				D6-3	2,046	
			기정	15,018	D13-1	6,514	
		D13			D13-2	8,504	
			폐지	-	D13-1	-	3공구→2공구
					D13-2		
					D15-1	2,206	
					D15-2	2,349	
		D	15	9,080	D15-3	2,083	_
					D15-4	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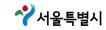
¹ 분	가구팀	На	면적(m²)		지	비고
T.	7/17	<u>1</u> 2	원역(m)	위치	면적(m²)	<u>п</u> іт
				D18-1	2,257	
				D18-2	2,761	
				D18-3	2,933	
		기정	21,765	D18-4	2,931	
		/10	21,700	D18-5	2,271	
				D18-6	2,797	
				D18-7	2,900	
	D18			D18-8	2,915	
	D10			D18-1	-	
				D18-2	-	
				D18-3	-	
		폐지	_	D18-4	-	222_025
		삐시	_	D18-5	-	3공구→2공구
				D18-6	-	
				D18-7	-	
				D18-8	-	
				D34-1	3,508	
				D34-2	3,510	
			28,933	D34-3	3,510	
	D3	034		D34-4	3,378	
	50			D34-5	3,260	
				D34-6	3,459	
				D34-7	3,948	
				D34-8	4,360	
				D35-1	2,684	
				D35-2	2,706	
				D35-3	2,703	
	D3	5	21,147	D35-4	2,643	
			21,177	D35-5	2,569	
				D35-6	2,615	
				D35-7	2,618	
				D35-8	2,609	
				D36-1	3,600	
				D36-2	3,879	
	D3	6	20,539	D36-3	6,665	
				D36-4	6,395	



-	¹ 분	フレコト	Нā	면적(m²)	필	지	비고
	T	가구번호		린국(81)	위치	면적(m²)	미┸
					D37-1	5,105	
		D37		D37 14,900		4,840	
					D37-3	4,955	
		D38	기정	5,884	D38	5,884	
		D30	폐지	-	D38	-	3공구→2공구
		-11	기정	177,524	-	177,524	
		계	변경	134,857.0	-	134,857.0	
37	3지구			-	-	-	

- ※ 산업시설용지(연DP3)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6-1, 6-2)로 결정(각각 299㎡ 합계 면적 : 598㎡) ※ 산업시설용지(산D22)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17-1)로 결정(150㎡) ※ 산업시설용지(산D25)내 일부는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지상부 연결녹지(17-2)로 결정(150㎡)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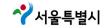
(17) 편익시설 [정정 전]

	·분	717	번호	면적(m²)		필 지		비고
Т	正	\ \T	인오	한국(m)	9	치	면적(m²)	- 비포
	1공구	S	54	1515.1	기정	S4	1515.1	
	157	7	4	1515.1	기정	-	1515.1	
		\$3		6,473	기정	\$3	6,473	
			기정	744	기정	S9	744	
		S9	변경	743.6	기정	S9	743.6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기정	304	기정	S10	304	
	2공구	S10	변경	302.9	기정	S10	302.9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1지구	25T	S11		800	기정	S11	800	
			기정	744	기정	S12	744	
		S12	변경	743.9	기정	S12	743.9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기정	9,065	기정	-	9,065	
		계	변경	9,063.4	기정	-	9,063.4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S2		6,709	기정	\$2	6,709	
	3공구	S	66	5,277	기정	\$6	5,277	
		7	4	11,986	기정	-	11,986	
	2공구		13	949	기정	\$13	949	
	401	7	4	949	기정	-	949	
					기정	S7-1	2,689	
2지구		S	57	7,873	기정	S7-2	2,592	
441	3공구				기정	S7-3	2,592	
	701	, c	8	4,872	기정	S8-1	2,427	
					기정	S8-2	2,445	
		7	4	12,745		-	12,745	
37	17		-	-		_	-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17) 편익시설 [정정 후]

-	구분	71.7	번호	면적(m²)		필 지		비고
	ΓŒ	717	인오	전((m))	위	치	면적(m²)	1 111
	1공구	, S4		1515.1	기정	\$4	1515.1	
	ToT	7	4	1515.1	-		1515.1	
		S	13	6,473	기정	\$3	6,473	
			기정	744	기정	\$9	744	
		S9	변경	743.6	기정	S9	743.6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1지구		공구 \$10	기정	304	기정	S10	304	
	2공구		변경	302.9	기정	S10	302.9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S	11	800	기정	S11	800	
			기정	744	기정	S12	744	
		S12	변경	743.9	기정	S12	743.9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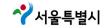
7	분	717	번호	면적(m²)		필 지		비고
Т	ᆫ	717	인오	전역(m)	Ç	리치	면적(m²)] 비포
			기정	9,065 –		-	9,065	
		계	변경	9,063.4		_	9,063.4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S	32	6,709	기정	S2	6,709	
	3공구	S6 5,277 기정		\$6	5,277			
		7	4	11,986		_		
		S13	기정	949	기정	\$13	949	
	2공구		폐지	-	폐지	_	_	2공구→3공구 (2공구 잔여 : 3공구)
		계	기정	949	-		949	
		세	폐지	-	-		-	
		S7			기정	S7-1	2,689	
2지구				7,873	기정	\$7-2	2,592	
4시ㅜ					기정	S7-3	2,592	
			88	4,872	기정	S8-1	2,427	
	3공구		10	4,072	기정	\$8-2	2,445	
		S13	신설	949	신설	S13	949	2공구→3공구 (2공구 잔여 : 3공구)
		계	기정	12,745		_	12,745	
		세	변경	13,694			13,694	
37	「구		-	-		_	-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편익시설용지(S13)	2지구 2공구 →2지구 3공구	공구 표기 착오 기입

-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8) 기타시설 용지
 - (나) 편익시설 [정정 전)

도면 번호	위치	7	분	계 획 내 용	비고			
			1공구	S4				
		1지구	2공구	S3, S9, S10~S11, S12				
			3공구	S2, S6				
			1공구	-				
	S2~S4	6~\$8, \$9,	2공구	S13				
	S6~S8,		3공구	S7, S8				
S			1공구	-				
	\$10~\$11, \$12~\$13	기시구	2공구	-				
	012 010	ib 요0	요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판매시설(상점 업의 시설 및 • 의료시설 중 병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 • 업무시설(오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S2~S4, S6~S11, S12~S13	50%이하				
		용적률	\$2~\$4, \$6~\$11 \$12~\$13	250%이하				
			S3, S6 7층이하					
			\$4	6층이하				
		높이	S10~S11	4층이하				
			\$2, \$7, \$8, \$9 \$12~\$13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배치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 -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건축선	- 도로변(대2-2, 중1-1, 중1-11, 중3-46, 중3-47, 소2-22, 소2- - 녹지변(연결녹지40, 연결녹지41,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대2-41, 대3-2, 중2-17): 5m - 도로변(대2-2, 중1-1, 중1-11, 중1-17, 중2-2, 중2-36, 중3-5, 중2-34, 중3-45, 중3-46, 중3-47, 소2-22, 소2-27, 소1-6): 3m - 녹지변(연결녹지40, 연결녹지41, 경관녹지8): 3m - 인접대지경계(T2, R2, R4, G1, F1, F3, K1): 3m - 공원변(근린공원1, 3): 3m - 구역경계 변: 3m(S3)				
		형태 및 외관	•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 른다.					

-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물러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나) 편익시설 [정정 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비고
			1공구	S4			
	\$2~\$4 \$6~\$8,	1지구	2공구	S3, S9, S10~S11, S12			
S	\$6~58, \$9,		3공구	S2, S6			
Ŭ	\$10~\$11, \$12~\$13		1공구	-			
	S12~S13	2지구	2공구	-			

 도면	01 ÷1		н			및 취 III O	ulп			
번호	위치	Ť	분			계 획 내 용	비고			
			3공구			S7, S8, S13				
		3지구	1공구			-				
		3/11	2공구			-				
	허요 용도		\$2~\$4, \$6~\$11, \$12~\$13	제2종 근린생활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사 경정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원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비율	S2~S4, S6~S	11, S12~S13	50%이하				
		용건	덕률	S2~S4, S6~S	11, S12~S13	250%이하				
				\$3,	S6	7층이하				
		 노	0	S		6층이하				
			*1	\$10~		4층이하				
				S2, S7, S8, S		공항시설보호지구(해발57.86m) 미만				
		배	치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건히	축선	- 도로변(대2-2 중3-46, 중3- - 녹지변(연결녹 - 인접대지경계(- 공원변(근린공 - 구역경계 변:						
		형타 외	네 및 관	• 경관에 관한 사항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편익시설용지(S13)	2지구 2공구 →2지구 3공구	공구 표기 착오 기입

- (9) 건축심의(자문) 시 자문의견 제시 [정정 전]
- (가) 해당 심의기관이 건축심의(자문) 단계에서 서울시 서남권사업과로 업무 협의시 서남권 사업과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 (9) 건축심의(자문) 시 자문의견 제시 [정정 후]
- 1. (가) 해당 심의기관이 건축심의(자문) 단계에서 서울시 서부권사업과로 업무 협의시 서부 권사업과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정정사항>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건축심의(자문) 시 자문의견 제시	서남권사업과 → 서부권사업과	-

- 자.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
- 5) 무상귀속 조서 [정정 전]
 - 강서구(건설관리과)

			기정		변경					실제이용현황				
연번	ш		지번			지	번	-10	공부상	편입 면적 (㎡)	크세약	1026	소유자	비고
	소재지	본번	부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m²)	공공 시설		공공 시설외			
기정	1	마곡동	727	1278	마곡동	727	1278	하천	939.0	939.0	939.0	-	강서구	용도폐지
변경	1	마곡동	727	1278	마곡동	727	1278	하천	939.0	939.0	939.0	-	강서구	용도폐지
7.9	2	마곡동	407	34	마곡동	407	34	하천	33.0	33.0	33.0	ı	강서구	용도폐지

- ※ 변경사유 : 기 협의완료된 유무상 귀속 반영
- 5) 무상귀속 조서 [정정 후]
- 강서구(건설관리과)

			기정		변경					실제이용현황				
연번	ш		지번			지	번	-10	공부상	편입 면적 (㎡)	글세약	1528	소유자	비고
	소재지	본번	부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m²)	공공 시설		공공 시설외			
기정	1	마곡동	727	1278	마곡동	727	1278	하천	939.0	939.0	939.0	-	강서구	용도폐지
변경	1	마곡동	727	1278	마곡동	727	1278	하천	939.0	939.0	939.0	-	강서구	용도폐지
건경	2	마곡동	407	34	마곡동	407	34	하천	33.0	33.0	-	33.0	강서구	용도폐지

※ 변경사유 : 기 협의완료된 유무상 귀속 반영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마곡동 407-34 실제이용현황	공공시설 → 공공시설 외	조서 구분 착오기재(실제이용현황 : 공공시설)

-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관계 기 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 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 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가) 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정정 전]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마곡 일반산업단지	서울특별시 마곡동 727-551일원	1,123,790.4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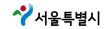
명 칭	위치	면 적(㎡)	비고
마곡 일반산업단지	서울특별시 마곡동 727-551일원	1,123,790.3	

<정정사항>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정정 전]

				면 적(m²)			7 4 11	
구	분		Л		2지구		구성비 (%)	비고
			/1	1공구	2공구	3공구	(70)	
하	계	기정	1,123,790.4	880,048.4	32,508.0	211,234.0	100.0	
H	/1	변경	1,123,790.4	880,048.4	73,413.3	170,328.7	100.0	
산업시설용지	기정	729,010.3	539,202.3	12,284.0	177,524.0	64.9		
신입시	[설생시	변경	729,006.1	539,202.3	54,946.8	134,857.0	64.9	
T 0 1	설용지	기정	82,492.6	41,966.6	10,170.0	30,356.0	7.2	
시전시	[설생시	변경	82,492.3	41,966.6	10,169.7	30,356.0	7.2	
	소계	기정	75,610.6	67,312.6	8,298.0	_	6.8	
녹지시설 용지 -	표계	변경	75,609.4	67,312.6	8,296.8	-	6.8	
	문화공원	기정	20,380.5	12,082.5	8,298.0	_	1.8	



				면 적(m²)			74	
구	분		 계		2지구		- 구성비 - (%)	비고
			/1	1공구	2공구	3공구	(/0)	
		변경	20,379.3	12,082.5	8,296.8	-	1.8	
	녹지	기정	55,230.1 (898.0)	55,230.1 (898.0)	-	-	5.0	
	소계	기정	224,911.3	220,292.3	1,756.0	3,354.0	20.0	
סאוובב		변경	224,917.0	220,292.3	-	5,115.7		
공공시설용 지	도로	기정	211,925.9	207,306.9	1,756.0	3,354.0	18.8	
٨		변경	211,931.6	207,306.9	-	5,115.7		
	광장		12,985.4	12,985.4	-	-	1.2	
	소계		11,765.6	11,765.6	-	-	1.1	
-1FLU H O	주차장		6,775.5	6,775.5	-	-	0.6	
기타시설용 · 지	가스 충전소		3,998.5	3,998.5	-	_	0.4	
	보육시설		991.6	991.6	-	-	0.1	

[※] 변경사유: 마곡도시개발사업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정정 후]

				면 적(m²)			7.4	
구	분		·		2지구		- 구성비 - (%)	비고
		/1		1공구	2공구	3공구		
	· 게	기정	1,123,790.4	880,048.4	32,508.0	211,234.0	100.0	
Ħ	합 계		1,123,790.3	880,539.4	73,413.2	169,837.7	100.0	
Y KNY	설용지	기정	729,010.3	539,202.3	12,284.0	177,524.0	64.9	
선답시	I글등시	변경	729,006.0	539,202.3	54,946.7	134,857.0	64.9	
191	설용지	기정	82,492.6	41,966.6	10,170.0	30,356.0	7.2	
시전시	I글등시	변경	82,492.3	41,966.6	10,169.7	30,356.0	7.2	
	소계	기정	75,610.6	67,312.6	8,298.0	-	6.8	
	그게	변경	75,609.4	67,312.6	8,296.8	_	6.8	
녹지시설	문화공원	기정	20,380.5	12,082.5	8,298.0	-	1.8	
용지		변경	20,379.3	12,082.5	8,296.8	_	1.8	
	녹지	기정	55,230.1 (898.0)	55,230.1 (898.0)	-	-	5.0	
	الد	기정	224,911.3	220,292.3	1,756.0	3,354.0	20.0	
77	소계	변경	224,917.0	220,292.3	-	4,624.7	20.0	
공공시설 용지	도로	기정	211,925.9	207,306.9	1,756.0	3,354.0	18.8	
0/1	III	변경	211,931.6	207,306.9	-	4,624.7	18.8	
	광장		12,985.4	12,985.4	-	-	1.2	
	소계		11,765.6	11,765.6	-	-	1.1	
기타시설	주차장		6,775.5	6,775.5	-	-	0.6	
용지	가스 충전소		3,998.5	3,998.5	-	-	0.4	
	보육시설		991.6	991.6		-	0.1	

※ 변경사유 : 마곡도시개발사업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2지구 도로 및 합계	도로 및 합계 면적	면적 착오 기입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 나)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정정 전]

구 분		면적(㎡)							
			2지구					비고	
ТЕ	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	비끄
		16T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합 계	1,123,790.4	880,048.4	32,508	73,413.3	211,234	170,328.7	100.0		
준 공 업 지역	1,110,805.0	867,063.0	32,508	73,413.3	211,234	170,328.7	98.8		
일 반 상 업 지 역	12,985.4	12,985.4	-	-	-		1.2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정정 후]

구 분		면적(㎡)						
			2지구					
ТЕ	계	1공구	2공구		3공구		(%)	비고
		IoT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23,790.3	880,539.4	32,508	73,413.2	211,234	169,837.7	100.0	
준 공 업 지역	1,110,804.9	867,554.0	32,508	73,413.2	211,234	169,837.7	98.8	
일 반 상 업 지 역	12,985.4	12,985.4	_	-	-	_	1.2	

※ 변경사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2지구 도로 및 합계	도로 및 합계 면적	면적 착오 기입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나) 용도지구의 결정 조서 [정정 전]

7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²)	최초 결정일	비고
2지구	기정	_	김포국제공항주변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123,790.4)	서고제120호 (1977.4.22)	

(나) 용도지구의 결정 조서 [정정 후]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²)	최초 결정일	비고
2지구 7	정 -	김포국제공항주변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123,790.3)	서고제120호 (1977.4.22)	

<정정사항>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정정 전]

명 칭	위치	면 적(㎡)	비고
마곡 일반산업단지	서울특별시 마곡동 727-551일원	1,123,790.4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정정 후]

명 칭	위치	면 적(㎡)	비고
마곡 일반산업단지	서울특별시 마곡동 727-551일원	1,123,790.3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감) 0.1 m²	소수점 '사사오입' 면적 착오 기입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① 도로 총괄표 [정정 전]

						노선수				Ç	견장(m)				면	년적(m²)		
	구분		∓0 (m)			2지구					2지구					2지구		
			폭원(m)	1공구	27	} 구	37	: 구	1공구	2등	3구	3=	당구	1공구	2공	;구	37	3구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총 계		-	49	1	1	2	3	11,774	271	-	94	365	207,306.9	1,265	-	3,354	4,619
	7	#	-	-	-	-	1	1	-	-	-	59	59	-	-	-	2,934	2,934
	광로	3 류	40	-	-	-	1	1	-	_	-	59	59	-	-	ı	2,934	2,934
	계		-	3	-	1	ı	-	2,038	-	-	-	-	70,019	-	-	-	-
		1류	36	1	-	-	-	-	1,319	-	-	-	-	48,627	-	-	-	_
일 반	대로	2 류	30	-	-	-	Ī	-	-	-	-	-	-	491.0	-	-	-	_
도로		3 류	25~28	2	-	-	-	-	719	-	-	-	-	20,901	-	-	-	-
	7	4	-	46	1	_	-	1	9,736	271	-	_	271	137,287.9	1,265	-	-	1,756
		1류	20	5	-	-	ı	-	1,539	-	-	-	-	25,955	-	-	-	-
	중로	2 류	16~18	12	1	-	ı	1	2,688	271	-	-	271	34,075	1,265	-	-	1,756
		3 류	12	29	-	-	ı	-	5,509	-	-	-	ı	77,257.9	-	ı	-	-
특수 도로	7	1	12		-	-	1	1		-		35	35	-	-	-	420	420
도로	중로	3류	12	-	-	-	1	1	-	-		35	35	-	-	-	420	420

※ 변경사유 : 마곡도시개발사업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① 도로 총괄표 [정정 후]

						노선수				Ç	견장(m)				P	년적(m²)		
	구 분		폭원(m)			2지구					2지구					2지구		
			국전(III)	1공구	2=	: 구	3군	: 구	1공구	2공	37	3=	;구	1공구	2공	;구	37	3구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ı	49	1	-	2	3	11,774	271	-	94	365	207,306.9	1,265	-	3,354	4,624.7
	7	#	-	-	-	-	1	1	-	-	-	59	59	-	-	-	2,934	2,939.7
	광로	3 류	40	-	-	-	1	1	-	-	-	59	59	-	1	-	2,934	2,939.7
	7	4	-	3	-	-	-	-	2,038	-	-	-	-	70,019	-	-	-	-
일 반		1류	36	1	-	-	-	-	1,319	-	-	-	-	48,627	1	-	-	-
도 로	대로	2 류	30	-	-	-	1	-	-	-	-	-	-	491.0	1	-	-	-
II		3 류	25~28	2	-	-	-	-	719	-	-	-	-	20,901	-	-	-	-
	7	4	-	46	1	-	-	1	9,736	271	-	-	271	137,287.9	1,265	-	-	1,265
	중로	1류	20	5	-	-	-	-	1,539	-	-	-	-	25,955	-	-	-	-

						노선수				(견장(m)				Ď.	년적(m²)				
		₩ OI / \			2지구					2지구					2지구		77			
	구 분		폭원(m)	1공구	2공	당구	37	당구	1공구	27	3구	37	3구	1공구	2공	} 구	37	37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 류	16~18	12	1	-	-	1	2,688	271	-	-	271	34,075	1,265	-	-	1,265		
		3 류	12	29	-	-	-	-	5,509	-	-	-	-	77,257.9	ı	ı	ı			
특수	7	#	12	1	-	-	1	1	-	-		35	35	-	1	-	420	420		
도로	중로	3류	12	ı	-	-	1	1	-	-		35	35	-	ı	-	420	420		

※ 변경사유 : 마곡도시개발사업 공구분할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면적 반영

구 분	정정내용	정정사유
2지구 도로 및 합계	도로 및 합계 면적	면적 착오 기입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고					
선	0					
람	람					